

제429회 국회
(정기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록 (조세소위원회)

제 5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5년11월24일(월)

장 소 기획재정위원회소회의실

의사일정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7)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5)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1)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4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4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4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4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3)
4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7)
4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3)
4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6)
4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7)
4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7)
4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9)
4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0)
4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4)
4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5)
5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4)
5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6)
5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1)
5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5)
5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0)
5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9)
5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2)
5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9)
5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9)
5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9)
5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0)
5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4)
5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5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5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5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5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5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5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5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5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5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5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5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5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5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5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5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5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5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5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5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5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5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5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5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5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5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5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5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5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5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5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5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5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5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5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5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5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5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5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5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5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5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5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5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5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5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5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5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5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5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4)
5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6)
5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1)
5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8)
5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7)
5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3)
5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5)
5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0)
5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5)
5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6)
5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6)
5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9)
5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9)
5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0)
5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0)
5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8)
5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2)
5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9)
5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8)
5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2)
5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9)
5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7)
5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7)
5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4)
5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7)
5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0)
5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2)
5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8)
5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5)
5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3)
5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3)
5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2)
5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4)
5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1)
5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4)
5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4)

5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1)
6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8)
6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0)
6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7)
6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3)
6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3)
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2)
6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3)
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4)
6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7)
6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5)
6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4)
6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9)
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7)
6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2)
6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5)
6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3)
6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4)
6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5)
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2)
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6)
6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0)
6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3)
6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5)
6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6)
6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3)
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5)
6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9)
6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2)
6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8)
6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6)
6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0)
6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6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0)
6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6)
6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9)
6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8)
6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3)

6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8)
6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5)
6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7)
6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9)
6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9)
6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4)
6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7)
6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2)
6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9)
6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2)
6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2)
6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0)
6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6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6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6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6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6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6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6)
6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9)
6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9)
6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0)
6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2)
6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1)
6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6)
6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8)
6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1)
6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9)
6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8)
6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6)
6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9)
6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1)
6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8)
6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5)
6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3)
6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7)
6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7)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36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36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37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37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37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37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37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37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37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37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37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37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37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37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37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37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37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37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37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37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37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37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37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37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37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37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37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37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37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37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37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37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37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37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37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37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37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37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37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37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38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38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38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38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38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38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38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38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38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38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38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38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38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38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38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38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38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38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38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38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38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38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38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38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38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38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	38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	38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	38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7)	38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5)	38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1)	38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38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	38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	38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38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38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38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38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39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39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39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39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39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39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39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39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39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39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39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39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39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39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39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39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39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39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39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39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39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39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39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39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39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39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39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39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3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39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	39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39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	39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	39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39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	39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39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39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39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40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40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40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40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40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40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40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40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40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40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40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40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40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40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40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40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40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40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40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40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40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40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40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40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4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40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40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40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4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40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40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40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40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40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40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40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40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40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40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41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41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41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41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41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41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41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41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41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41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41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4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41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41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41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41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41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41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41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41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41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41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41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41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41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41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41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41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41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41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41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41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41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41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41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41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41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41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41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42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42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42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42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42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42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42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42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42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42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42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42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42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42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42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42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42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42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42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42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42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42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42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42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42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42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42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42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42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42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42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42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42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42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42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42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42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42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42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43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43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4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43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43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43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43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43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43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43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43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43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43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43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43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43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43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43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43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43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43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43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43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43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43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43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43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43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43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43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43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43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43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43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43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43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43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43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44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44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44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44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44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44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44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44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44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44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44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44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44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44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44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44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44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44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44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44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44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44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44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44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44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44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44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44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44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44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44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44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44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44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44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44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44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44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44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45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45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45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45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45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45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45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45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45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45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45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45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45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45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45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45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45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45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45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45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45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45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45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45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45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45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45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45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45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45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45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45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45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45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45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45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45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45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45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46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46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46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46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46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46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46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46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46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46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46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46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46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46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46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46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46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46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46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46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46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46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46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46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46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46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46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46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46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46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46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46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46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46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46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46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46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46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46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47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47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47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47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47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47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47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47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47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47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47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47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47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47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47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47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47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47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47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47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47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47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47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47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47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47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47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47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47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47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47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47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47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47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47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47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47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47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47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48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48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48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48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48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48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48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48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48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48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48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48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48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48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48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48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48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48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48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48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48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48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48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48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48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48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48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48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48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48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48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48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48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48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48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48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48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48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49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49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49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49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49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49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49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49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49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49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49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49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49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49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49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49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49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49
4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49
4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49
4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49
4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3)	49
4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7)	49
4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3)	49

4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6)	49
4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7)	49
4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7)	49
4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9)	49
4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0)	49
4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4)	49
4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5)	49
5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4)	49
5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6)	49
5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1)	49
5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5)	49
5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0)	49
5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9)	49
5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2)	49
5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9)	49
5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9)	50
5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9)	50
5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0)	50
5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4)	50
5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50
5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50
5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50
5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0
5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50
5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50
5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50
5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50
5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50
5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50
5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50
5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50
5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50
5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50
5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50
5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50
5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50
5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50

5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50
5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50
5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50
5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50
5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50
5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50
5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50
5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50
5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50
5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50
5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50
5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50
5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50
5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50
5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50
5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50
5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50
5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51
5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51
5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51
5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51
5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51
5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51
5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51
5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51
5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51
5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51
5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51
5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51
5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51
5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1
5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51
5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51
5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4)	51
5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6)	51
5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1)	51
5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8)	51
5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7)	51

5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3)	51
5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5)	51
5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0)	51
5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5)	51
5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6)	51
5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6)	51
5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9)	51
5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9)	51
5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0)	51
5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0)	51
5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8)	51
5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2)	51
5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9)	51
5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8)	51
5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2)	51
5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9)	51
5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7)	51
5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7)	51
5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4)	52
5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7)	52
5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0)	52
5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2)	52
5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8)	52
5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5)	52
5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3)	52
5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3)	52
5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2)	52
5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4)	52
5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1)	52
5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4)	52
5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4)	52
5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1)	52
6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8)	52
6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0)	52
6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7)	52
6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3)	52
6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3)	52
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2)	52

6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3)	52
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4)	52
6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7)	52
6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5)	52
6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4)	52
6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9)	52
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7)	52
6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2)	52
6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5)	52
6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3)	52
6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4)	52
6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5)	52
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2)	52
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6)	52
6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0)	52
6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3)	52
6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5)	52
6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6)	52
6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3)	52
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5)	53
6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9)	53
6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2)	53
6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8)	53
6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6)	53
6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0)	53
6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53
6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0)	53
6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6)	53
6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9)	53
6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8)	53
6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3)	53
6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8)	53
6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5)	53
6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7)	53
6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9)	53
6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9)	53
6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4)	53
6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7)	53

6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2)	53
6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9)	53
6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2)	53
6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2)	53
6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0)	53
6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53
6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53
6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53
6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53
6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53
6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53
6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6)	53
6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9)	53
6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9)	53
6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0)	53
6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2)	53
6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1)	53
6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6)	53
6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8)	53
6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1)	53
6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9)	54
6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8)	54
6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6)	54
6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9)	54
6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1)	54
6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8)	54
6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5)	54
6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3)	54
6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7)	54
6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7)	54

(09시03분 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조세소위를 개최하겠습니다.

속기를 해야 되니까 마이크 이용해 주시고 정부 측 관계자 답변하실 때는 소속과 성명 말씀하신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15)
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35)

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5)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26)
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3)
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5)
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0)
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38)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5)
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3)
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90)
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6)
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02)
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52)
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3)
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9)
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8)
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6)
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4)
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48)
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3)
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5)
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7)
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5)
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3)
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0)
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49)
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32)
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70)
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6)
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0)
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46)
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5)
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39)
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5)
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2)
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92)
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05)
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6)
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9)

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7)
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8)
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6)
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44)
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64)
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9)
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09)
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1)
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5)
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2)
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9)
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94)
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3)
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90)
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68)
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81)
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6)
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34)
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4)
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6)
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84)
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7)
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01)
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26)
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69)
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73)
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6)
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19)
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5)
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7)
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5)
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1)
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5)
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9)
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3)
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4)
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2)
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5)
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86)

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2)
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01)
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5)
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73)
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2)
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9)
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35)
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67)
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07)
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19)
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63)
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6)
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여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1)
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3)
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25)
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2)
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9)
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35)
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3)
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2)
1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3)
1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9)
1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8)
1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9)
1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1)
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68)
1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4)
1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0)
1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9)
1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2)
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57)
1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7)
1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80)
1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0)
1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3)
1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3)
1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1)
1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5)
1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1)

1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6)
1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7)
1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9)
1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2)
1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75)
1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1)
1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0)
1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7)
1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4)
1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7)
1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95)
1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7)
1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61)
1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2)
1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75)
1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5)
1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08)
1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0)
1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6)
1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8)
1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0)
1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0)
1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2)
1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9)
1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0)
1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3)
1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15)
1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9)
1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0)
1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3)
1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4)
1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2)
1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3)
1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9)
1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19)
1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4)
1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5)
1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59)
1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5)

1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5)
1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2)
1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61)
1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72)
1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0)
1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7)
1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2)
1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44)
1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7)
1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0)
1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0)
1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11)
1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3)
1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0)
1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7)
1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2)
1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6)
1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8)
1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6)
1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2)
1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4)
1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65)
1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17)
1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0)
1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9)
1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0)
1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2)
1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5)
1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5)
1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7)
1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2)
1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6)
1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35)
1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3)
1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5)
1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5)
1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6)
1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0)
1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6)

1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4)
1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29)
1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3)
2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5)
2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89)
2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0)
2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2)
2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7)
2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1)
2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6)
2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1)
2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3)
2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5)
2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1)
2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0)
2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8)
2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1)
2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4)
2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5)
2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6)
2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7)
2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8)
2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8)
2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7)
2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1)
2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5)
2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3)
2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44)
2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3)
2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0)
2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9)
2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8)
2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7)
2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6)
2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2)
2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3)
2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28)
2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7)
2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1)

2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4)
2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0)
2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3)
2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2)
2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0)
2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5)
2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8)
2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0)
2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6)
2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4)
2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9)
2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5)
2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1)
2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2)
2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43)
2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7)
2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4)
2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4)
2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7)
2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3)
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4)
2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7)
2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7)
2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6)
2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2)
2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1)
2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5)
2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3)
2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1)
2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48)
2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4)
2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4)
2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7)
2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2)
2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5)
2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8)
2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3)
2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6)
2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1)

2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3)
2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36)
2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69)
2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1)
2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7)
2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9)
2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1)
2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37)
2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41)
2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8)
2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58)
2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63)
2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3)
2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4)
2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4)
2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7)
2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3)
2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85)
2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6)
2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56)
2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2)
2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3)
2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4)
2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41)
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1)
3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3)
3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2)
3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05)
3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4)
3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48)
3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0)
3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3)
3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65)
3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75)
3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1)
3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6)
3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4)
3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03)
3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2)

3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6)
3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9)
3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90)
3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06)
3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6)
3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4)
3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9)
3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67)
3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70)
3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1)
3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8)
3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72)
3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1)
3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39)
3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2)
3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4)
3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98)
3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16)
3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2)
3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36)
3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74)
3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1)
3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6)
3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97)
3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7)
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69)
3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8)
3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9)
3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0)
3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1)
3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3)
3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6)
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6)
3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2)
3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58)
3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1)
3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63)
3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4)
3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88)

3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7)
3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15)
3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6)
3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0)
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4)
3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1)
3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95)
3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18)
3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0)
3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1)
3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2)
3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59)
3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6)
3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78)
3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83)
3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93)
3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8)
3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2)
3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7)
3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4)
3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2)
3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3)
3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67)
3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9)
3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94)
3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02)
3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0)
3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8)
3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9)
3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0)
3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4)
3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7)
3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4)
3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7)
3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1)
38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5)
38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6)
39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8)
3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11)

39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29)
39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6)
39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82)
39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04)
3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7)
39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9)
39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62)
3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71)
40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08)
40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4)
4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55)
40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9)
40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0)
4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3)
40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66)
40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6)
40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81)
4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29)
4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2)
41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33)
4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52)
41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67)
41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2)
41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89)
41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0)
41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1)
41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6)
41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19)
42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45)
42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6)
42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2)
42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3)
42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1)
42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2)
42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5)
4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4)
42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7)
42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78)
43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4)

4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3)
43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0)
43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25)
43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0)
43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2)
43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5)
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7)
43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4)
4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1)
44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2)
44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5)
44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9)
44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09)
44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1)
44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24)
4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68)
44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71)
4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0)
44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7)
45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1)
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74)
45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99)
45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0)
45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02)
4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22)
4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51)
4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0)
45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66)
45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82)
46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1)
46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93)
46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6)
46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6)
46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0)
46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30)
46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6)
46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3)
4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5)

46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4)
47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85)
47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2)
47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9)
47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3)
47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4)
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7)
47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35)
47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3)
47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9)
47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2)
48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67)
48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1)
48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8)
4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33)
4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45)
48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174)
48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48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76)
48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77)
48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48)
49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3)
49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7)
49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53)
49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66)
49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37)
49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7)
49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9)
49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0)
49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4)
49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5)
500.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24)
501.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6)
502.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61)
503.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5)
504.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50)
505.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29)
506.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42)
507.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9)

508.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9)
509.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89)
51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0)
51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4)
5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34)
5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74)
5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80)
5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1)
5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6)
5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95)
5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62)
5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42)
5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8)
5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9)
5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26)
5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85)
5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5)
5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49)
5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73)
5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78)
5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33)
5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5)
5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7)
5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4)
5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7)
5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9)
5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18)
5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58)
5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19)
5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63)
5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0)
5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9)
5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29)
5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4)
5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5)
5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0)
5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52)
5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61)
5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79)

5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10)
5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8)
5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5)
5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3)
55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4)
55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9)
55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3)
55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9)
55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03)
55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13)
55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57)
55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8)
55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78)
56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95)
56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11)
56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8)
56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84)
56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26)
56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71)
56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8)
56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47)
56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73)
56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95)
57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0)
57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65)
57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56)
57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86)
57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9)
57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9)
57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0)
57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0)
57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8)
5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2)
58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9)
58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8)
58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02)
58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29)
58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7)
58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37)

58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74)
58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07)
58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20)
58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2)
59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8)
5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5)
59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3)
59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3)
59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2)
59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4)
59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1)
59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4)
59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4)
59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1)
60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8)
60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0)
6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67)
60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3)
60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3)
60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2)
60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3)
60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94)
60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77)
60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85)
61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4)
61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9)
61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77)
6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2)
61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75)
61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3)
61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4)
61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75)
61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82)
61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26)
62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0)
62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63)
62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55)
62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36)
62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3)

62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75)
62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09)
62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52)
62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68)
62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86)
63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40)
63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5)
63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30)
63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76)
63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89)
63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28)
63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43)
63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18)
63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5)
63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7)
64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49)
64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89)
64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4)
64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47)
644.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52)
645.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69)
646.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2)
647.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2)
648.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0)
64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51)
65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50)
65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5)
65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39)
65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70)
65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79)
65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6)
65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9)
6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9)
65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0)
65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2)
66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1)
66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16)
66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98)
66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61)

664.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69)

665.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28)

666.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56)

66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99)

668.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31)

669.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48)

670.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5)

671.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53)

672.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7)

673.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07)

○소위원장 박수영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73항까지 이상 673건의 법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정지은 전문위원님, 오늘 소위 자료 몇 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오늘 소위 자료는 지난번에 배부해 드렸던 5권 또는 별권으로 조세 소위 심사자료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해서 별권으로 준비를 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새로 만들었군요.

○전문위원 정지은 별권 1권을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별권 1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11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에 대한 높은 수준의 과세가 기업들의 배당 유인을 저하시키고 이에 따른 소극적인 배당이 우리나라 주식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하에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를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116페이지에서 검토의견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도입에 관하여는 국내경제의 활성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부동산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의 자본이동 등 긍정적인 정책효과 측면과 함께 조세의 수직적·수평적 형평성 저하 측면과 이로 인한 자산 불평등 심화, 정책효과의 불확실성 우려 등의 반대의견을 함께 고려하여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늘 보고 간단하네요.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낸 취지는 기업의 배당 확대 유인을 제고하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촉진하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2015년에 배당소득 증대세제 시행 과정에서 지적됐던 여러 가지 점을 감안하여 최고세율은 35%로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융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세제상 인센티브를 좀 더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로서는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정책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율에 대해서는 논의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소위 중에 제시해 주시는 여러 가지 안을 듣고 구체적인 논의

를 함께 논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율 외에 저희는 대상 법인에 대해서는 고배당 법인 40% 이상과 노력형 법인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배당액이 5% 증가하는 투 트랙으로 지원하여 최대한 많은 법인의 배당 확대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같이 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여러 가지 기준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가 있으시면 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로서는 대주주의 배당소득 최고세율이 인하될 경우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에 강한 인센티브로 작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는 112쪽과 113쪽, 의원님들 법안이 현재 정부안까지 포함해서 9개 법안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 주시는데 발의하신 이소영 의원님 전에 오기형 위원님 먼저 하시겠어요?

○오기형 위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작년에 저희는 민주당에서 이것을 반대를 했었습니다. 부결시킨 바가 있는데 올해는 정부안으로 새롭게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전제는 종합과세인데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도입이 됐으면 분리과세가 더 유연하게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없어서 제약된 조건 속에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좀 논쟁이 복잡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분리과세 도입에 대한 시장의 요구가 있었고 인식이 있으니까 도입 자체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이것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보고요.

세율에 대해서 좀 더 유연하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것을 일반법으로 할 거냐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고 일정 정도의 시한을 놓고 유연하게 접근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잘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발의하신 의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논의에 충실하게 참여할 수 있게 일정 배려해 주신 두 분 간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양해해 주신 조세소위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존재하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기재위에서 국감 과정에서나 여러 차례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늘 설명드리는 것을 생략하려고 합니다.

세부적인 정부안의 내용과 관련해서 제가 국감 때를 비롯해서 죽 지적해 왔던 내용이 있는데 혹시 간사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간단한 메모를 가지고 왔는데 배포해 드린 후에 설명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소영 위원 네 장짜리 간단한 메모인데요. 정부안에 대한 의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에 몇 부가 더 있습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이 제도의 목적은 단순히 배당소득을 받는 분들의 세금을 인하해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제도시행 이전보다 배당이 확대되고 또 부수적으로는 그 배당 확대에 인해서 세수가 증대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견지에서 정부안에 대한 쟁점별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부안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가지 필수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직전 사업연도 대비 현금 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절대적인 금액 기준 관련 요건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분의 배당금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적어지면 배당금이 적어져도 괜찮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면 배당금이 같이 늘어나는 계산 방식인데, 절대적 금액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상장사는 반도체, 조선 등등 경기순환형 기업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현대중공업 연도별 영업이익을 보시면 7분의 1이 됐다가 그다음 해에는 5배가 되기도 하는, 굉장히 사이클에 따른 영업이익 변동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절대적 금액 기준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게 되면, 제가 여기에 적은 사례처럼 100억을 번 기업이 30억을 배당하면 배당성향이 30%가 되는데 다음 해에 당기순이익이 30억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30억을 유지하려고 하면 번 돈을 전액 다 배당해야지만 이 요건을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도한 요건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금액 기준 요건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 금액 기준 요건을 유지하게 된다고 하면 계속 전년 대비로 증가하게끔 계산식 배당액 증가를 요구하는 것보다는 기준 사업연도를 정하고 그 기준 사업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하한 정도를 정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정부안은 우수상과 노력상 두 가지를 정하고 있는데요. 우수상은 배당성향 40% 이상인 기업이고 노력상은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금액 증가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점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직전 3년 평균 대비로 5% 기준을 규정하면, 보시는 것처럼 100·100·100을 하던 기업이 있다. 그러면 분리과세 도입 1년 차일 때는 105가 돼서 전년도보다 5%가 상승하게 되지만 그다음에 2년 차를 계산할 때는 105를 기준으로 5%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100·100·105의 평균 대비 5%를 계산하게 되기 때문에 106.7이 됩니다.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하면 1.7% 상승으로 상승률이 확 떨어지고요. 이렇게 연도별로 1.7, 2.2 가다가 결국에 2.47의 등비수열로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직전 3년 평균 대비 몇 퍼센트 상승이라고 하는 규정 방식이 5%를 상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절반 정도 디스카운트하는 수식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연 5% 정도씩은 증가시키는 게 노력하는 기업

이다. 세제 혜택을 줄 만한, 노력상을 줄 만한 기업이라고 판단하신다면 직전 3년 평균 대비로 해서 이것을 절반 디스카운트되게 할 것이 아니라 전년 대비로 규정하는 것이 의도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규정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지금 정부안에서는 배당금액 5%만 증가시키면 노력상을 주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과연 세제 혜택을 줄 정도의 노력으로 우리가 평가할 만한가, 이게 확대 노력으로 볼만한가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당기순이익 증가율이 최근 10년 평균으로 하면 연평균 7.87%입니다. 그런데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분의 배당금인데 배당성향을 25%든 30%든 그대로 유지하는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매년 당기순이익이 평균 7%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배당금액도 배당성향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자연스럽게 7%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7% 증가하는 와중에 배당금액 5%를 증가시킨 기업은 배당성향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기업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런 기업에 대해서까지 세제 혜택을 주고 대주주의 세금을 깎아 줘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당기순이익보다 낮은 배당금 증가로도 대주주가 상당히 많은 세율을 인하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너도나도 이 정도의 배당금 증가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노리게 되어서 세수감소도 굉장히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노력에 대해서 노력상을 주고 또 실질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배당금액 5% 증가가 아니라 배당성향 5%p 증가로 규정하거나 또는 굳이 배당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5%가 아니라 당기순이익 평균 증가율보다 상회하는 배당금액 10% 증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정부안에서 상당히 특이하게 설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 노력상과 우수상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두 개 요건의 혜택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작년도에 검토했던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세제를 보면 그 당시에는 우수상은 규정하지 않고 노력상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노력상의 요건은 이번 정부안의 노력상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전액을 분리과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직전 3년 대비 5%를 증가시킨 법인에 대해서 노력상을 주는 거기 때문에 배당 증가된 금액 플러스 10%에 대해서만 부분적 분리과세를 했습니다.

사례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작년도 정부안에서도 제시되고 있는 내용인데 100만 원씩 배당하던 기업이 노력해서 105만 원으로 늘었다 그러면 늘린 5만 원 플러스 100만 원의 10%. 이렇게 해서 15만 원만 분리과세를 하고 나머지는 기존대로 종합소득에 합산과세를 하는 게 작년도에 우리가 검토했던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세제였고요.

그런데 올해 정부안은 우수상을 추가하면서 이 두 개의 혜택을 차등하지 않다 보니까 우수상도, 그러니까 배당성향 40% 이상인 매우 상위권의 기업도 전액 분리과세고. 사실은 고작 5% 배당금 증가시킨, 당기순이익보다도 적은 배당금을 증가시킨 기업도 전액 분리과세. 그래서 두 가지 혜택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력상 요건이 윤석열 정부안과 이번 정부안이 같은데 사실 세제 혜택은 작년

정부안에는 15만 원이고 이번 정부안에서는 105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7배의 혜택을 주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문제점은 아무도 우수상으로 올라갈 유인이 없는 거지요.

배당성향이 현재 38% 이하인 기업들은 배당금 5%를 상승시켜도 40에 이르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밑에는 사실 40으로 더 많이 올려서 40으로 점프할 유인이 없고 그냥 계속 5% 배당금 증가만 시켜도 계속 이 세제 혜택을 대주주가 받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은 무분별하고 과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상의 유인을 주면서 우수상과 노력상 각각에 해당되는 마땅한 기업들한테 배당 증가 유인을 주기 위해서는 우수상에 대해서는 전액 분리과세, 노력상에 대해서는 일부 분리과세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력상에 대해서 일부 분리과세를 작년 정부안처럼 증가분의 10%를 가산할지 아니면 여기 다른 의원님 안 중에서 안도걸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배당소득의 50%에 대한 분리과세를 해 주는 안도 있는데, 이렇게 50%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전액 분리과세하고는 조금 차등을 두는 혜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 상단의 우수상의 요건인데요.

저는 우수상만 규정하고 있는 안을 발의했는데 제가 발의한 안에서는 배당성향 35%를 우수상 요건으로 하고 있고 정부안은 40%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시총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현재의 배당성향은 29%, 그러니까 10조 원 정도를 배당하고 있고요. 배당성향 35%가 되려면, 그러니까 제가 발의한 안을 기준으로 우수상에 해당이 되려면 지금보다 6%p를 올려야 되는데 2조 원 정도고요. 정부안처럼 40%가 되려면 11%p를 증가시키고 지금보다 3.6조 원을 배당을 늘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안에 따르면 3년짜리의 단기 제도를 추진하면서 그 안에 그리고 첫 연도에 효과가 있어야 될 텐데요, 단번에 11%p를 증가시키라고 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도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평균 배당성향이 26%인 상황에서 40%는 그것보다 14%p가 높은 수준인데 노력상의 기준은 매우 약한 수준, 그러니까 당기순이익, 거의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2.47%로 수렴하는 금액만 올려도 노력상을 주는 것과 대조적으로 우수상의 요건이 너무나 높다. 그래서 오히려 우수상으로 올라갈, 35% 정도면 해 볼 법한 기업들도 40%는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게 배당 확대를 위해서는 적절한 목표를 주고 그것을 달성하게 하고 달성한 기업들한테 혜택을 줘야 배당 확대와 세수 증대의 효과가 생길 텐데 이것은 너무 과도한 목표를 설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적용 세율의 문제에 있어서 최고세율이 저는 25%가 타당하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세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세율 대비해 세율 인하의 효과가 있어야 대주주나 경영진 입장에서 기존에 배당을 적게 하던 것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게 저의 생각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분들의 생각일 텐데 기존의 세율이 얼마인지를 보면 기존의 종합소득 최고세율 45%는 명목세율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종합과세는 배당 세액공제가 적용되고 분리과세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45% 대 25%로 비교해서

는 안 됩니다. 기존 종합과세는 그로스업을 적용하고 나면 최고구간의 실질 세율이 약 39% 정도 되는 걸로 정부도 국감에서 인정했었고 박성훈 의원님도 그런 분석 결과를 제출하셨었고요. 저도 그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안의 35% 최고세율이라는 것은 기존에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할 때 최고세율의 실질 세율하고 비교했을 때 39 대 35, 그러니까 4%p 정도의 인하 효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이 아마 충분한 유인이다라고 보시는 분은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매우 부족한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기존 세율보다 얼마가 인하되느냐를 떠나서 적정 세율이 얼마인가라고 봤을 때 대주주의 입장에서 같은 이익잉여금을 배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것을 사내에 현금으로 유보한 다음에 추후에 이것을 주식양도차익으로 회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대주주가 현금을 사내에 유보한 다음에 지분을 나중에 일부라도 또는 전부 양도할 때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사내에 유보한 현금은 당연히 주식양도차익의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추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럴 때의 적용 세율은 대주주 양도세의 최고세율인 25%가 적용됩니다.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거나 국회입법조사처 같은 경우에도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소득원천이 같을 뿐만 아니라 세 부담이 동일해야 양자 간 선택에 있어서 중립성이 유지되고 의사결정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2개의 세율을 맞추는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고서에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배당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과세의 특성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최고세율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기업에 세전이익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세 납부 후에 당기순이익 중의 일부가 배당가능이익이 돼서 배당금이 지급되고 받는 사람이 배당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동일한 세전이익이라는 소득원천에 대해서 세금이 두 번 부과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정하기 위해서 그로스업이라고 하는 배당소득공제제도가 있지만 법인세 최저세율을 기준으로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코스피 상장사들이 24%, 25% 정도의 법인세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 이중과세 효과를 전체 보완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해서 최고세율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으로는 적용 시기 문제고, 제가 국정감사 때 지적했을 때 정부도 이것은 좀 보완할 의지가 있다라고 답변을 주셨던 내용인데 정부안 부칙에 보면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해서 결산배당은 2026년 3월 주총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의사결정을 통해서 일어나고요. 이 법의 정부안 부칙에는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니까 2026년 사업연도인데 이 사업연도가 2026년에 전부 배당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26년에는 일부 중간배당이 되고 최종 결산배당금은 2027년 4월 달에 입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규정을 하게 되면 2027년 4월 결산배당금부터 이 제도가 적용이 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아까 노력상을 함께 규정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직전 3년 평균 대비 또는 전년 대비 5% 증가를 해야지만 이 노력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력상을 쉽게 받으려면 2026년 결산배당에서는 오히려 배당을 줄여야 유리한 이런 모순점이 발생

하게 됩니다.

아래에서 제가 넣은 사례처럼 원래 100·100·100을 하던 기업이 26년도에 50으로 확 낮추면 이 정부안이 적용되기 시작하는 27년에는 88 이상만 배당해도 노력상을 받게 됩니다. 결국에 이 제도를 도입하는 2025년, 그러니까 2025년 결산배당보다 더 낮추더라도 노력상을 받고 세제혜택을 받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25년 사업연도에 대한 2026년 3월 결산배당도 적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사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정부안을 포함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제출한 안에 대한 세수효과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각기 다르지만 저는 지금까지 정부와 예산정책처가 제시한 세수효과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계속 이견을 밝혀 왔습니다. 그 계산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밝혀 왔는데 사실 그걸 오늘 얘기할 생각은 없고요. 그런데 그 계산을, 얼마가 감소한다, 1000억 원이 감소한다, 2000억이 감소한다 그 계산을 고스란히 다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산은 지금보다 배당이 전혀 늘어나지 않았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기존과 같은 배당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세율만 깎아 줬을 때 얼마가 감소하느냐 이걸 계산한 것이고요.

실제로 이 제도는 배당 확대를 유인하도록 설계되어야 하고 그렇게 통과가 될 것이고 일정한 배당 증대 효과를 만들어 낼 것이기 때문에 배당이 전혀 늘어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세수 감소 효과를 계산한 것은 사실 큰 의미가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탁상공론이라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소영안을 기준으로 업계에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평균 배당성향이 지금하고 그대로면 당연히 세율 인하로 인한 감소가 생기겠지만 평균 배당성향이 지금보다 0.6%p만 늘어나더라도 기존 세수보다 코스피에서만 152억 원 이상이 늘어난다는 분석도 존재하고 같은 분석에 따르면 평균 배당성향이 우수상 유인 효과에 따라서 35%까지 높아질 경우에 세수는 오히려 2조 9000억 원 이상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 분석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지만 이렇게 단순히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세수를 줄이는 제도다 이렇게 생각할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9개 법안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보니까 12개의 법안이 나와 있을 정도로 치열하게 양당에서 의원님들이 법안을 많이 내셨고요. 차규근 의원님도 내시고 해서 상당히 많은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도 법안 내신 위원님들이 또 있기 때문에 다른 법안 제안하신, 발의하신 위원님들 말씀을 한번 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손 드신 분이 최은석 위원님이십니다.

○최은석 위원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께서 이번에 여러 가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관련해서 여러 데이터들 같은 것들 잘 분석해 주신 것 같고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서 다 공감합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번에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야 간에 다들 공감하는 게 아마 이 제도를 통해서, 결국 지금 일반 가계의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가계자산을 주

식시장으로 전이하도록 하고 또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의 좀 건전한 자산 형성도 돕고 또 노후대책도 좀 더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가 아마 다들 좀 깔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정말 이번에 어떻게든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에 대해서 결론을 좀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과거에도 이렇게 배당성향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조건을 붙여서 배당을 확대하도록 하는 제도를 조금 시행해 본 적이 있지요. 시행해 본 적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자본시장, 주식시장에서 회사를 선택할 때 지금 이렇게 복잡한 배당성향과 관련된 이런 조건들을 붙였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정말 모든 1400만의 개미투자자들, 일반 소액투자자들이 배당과 관련된 것들을 투자의 의사결정에 포함해서 잘할 수 있느냐 하면 저는 그런 부분들은 되게 현실적인 제약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회사의 주식에 투자할 때 배당성향 같은 것들 이렇게 막 계산해 보고 또 이 회사가 지속적으로 배당을 늘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데 대한 어떤 확신도 없는 상태, 이런 것들을 보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라고 하는 이런 이점을 보고 이 회사의 대주주가 앞으로 배당성향을 이렇게 높여 가겠구나, 그래서 이걸 분리과세를 통해서 앞으로 이 회사의 시장에서의 가치나 이런 것들도 많이 올라가겠구나 하는 이런 의사결정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배당성향과 관련된 조건들을 이렇게 두게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말 아주 건전한 큰 틀의 거시경제적인, 국민들을 위한 이 제도의 취지가 제대로 잘 구현되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1400만의 투자자들한테는 아주 단순하고 임팩트 있는 이런 제도가 설계되는 게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법안을 발의할 때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다 분리과세하는 안을 발의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장법인들의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이게 제도 초반에는 배당에 대해서 대주주나 회사에서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은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투자자들에 대해서,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서 분리과세한다고 하는 이런 전제가 어느 정도 형성되고 나면 이게 우리나라 자본시장 전체를 발전시키는 그런 기폭제로서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배당성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붙이게 되면 이 제도의 효과가 없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단순하고, 모든 국민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배당소득에 대해서 모든 법인들이 다 분리과세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제대로 본인 가계의 자산 비중을 주식시장으로 옮길 수 있는 큰 틀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게 한시적으로 3년만 한다는 것도 정부에서 제대로 이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고민했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우리가 이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지향해야 될 것은 국민들의 장기투자입니다. 그렇지요? 배당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래에 내 자산이 안정적으로 현금 흐름을 갖고 올 수 있는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느

냐, 그리고 그게 장기적으로 내 노후생활까지도 도움이 될 거냐라고 하면 결국은 5년·10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3년간 한시적으로 법안을 정하게 되면 이게 3년 하다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내가 나나 우리 가족이나 내 자식을 위해서 앞으로 내 가계의 자산을 주식으로 많이 옮기는 의사결정을 할 때 저 같으면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3년 후에 어찌 될지 모르는데.

그리고 3년 동안에 한 해에 배당성향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면 이 효과도 못 보는데 이 제도가 절대 제대로 동작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법안을 이렇게 3년간 하는 것들은 이 제도의 취지로 보면 저는 전혀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 그래서 장기투자를 유도해야 된다고 하는 관점, 그리고 내 자산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배당성향에 대한 조건을 다 없애고 이번에 제도를 되게 단순화하는 게 필요하고, 5년·10년 이상 해서 조특법이 아니고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것들을 정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율도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로스업 제도가 지금 이중과세를 절대 다 방지하지 못하는 정도로 아주 짜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세제실 쪽에서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하나 그냥 배당으로 받으나 동일하게 될 정도로 25%로 해야 이번에 이 제도의 실효성이 있고. 그래서 배당소득을, 배당을 좀 많이 늘리자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결국은 대주주이거나 대주주가 선임한 이사들이거나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움직일 동인을 확실히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율도 25%가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른 의원님들이 발의를 안 하신 건데, 저는 상장법인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도 포함해야 된다는 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우리는 결국 1400만 개미투자자 포함해서 전체 국민들이 장기투자를 지향하도록 해야 되고 또 본인의 직접투자를 뭐 이렇게 우리가 방지하는 건 아니지만 개인들의 자본시장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동안에도 간접투자를 적극 독려를 많이 해 왔거든요. 그래서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저는 앞으로도 여전히 일반 소액 개미투자자들에게는 직접투자보다는 전문가들이 운용하는 간접투자자산의 투자를 통해서 본인도 그 수혜를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정책적인 방향이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상장법인에 한 60% 이상 정도, 60%는 저는 좀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간접투자에 대해서도 직접투자와 동일하게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게 맞다 하는 생각으로 그 부분에 대한 안도 별도로 냅니다.

이번에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전체 국민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가게 단순하고 임팩트 있는 제도 설계, 이게 저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저는 실은 회계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자본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있지만 제가 어떤 특정 주식을 고를 때 배당성향 계산하고 이게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 계산하라고 하면 저도 잘 못하겠어요. 일반국민들은 진짜 못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단순해야 된다. 배당성향에 대한 것들로 이렇게 제약을 두게 되면 이 제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회계사이자 세무사이신 최은석 위원님 말씀이었습니다. 이소영 위원님하고는 적용기간은 계속 적용하자는 데 일치하고 있고 적용기업의 요건에 대해서는 차이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세율은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25%로 동일한 의견을 갖고 계십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도 법안을 내셨기 때문에 법안 내신 위원님부터 먼저 얘기 듣고 다른 위원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도걸 위원님 법안 내셨는데 손 드셨습니다.

○안도걸 위원 먼저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어떻게 볼 거냐라는 문제거든요.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이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항구적 제도화하자, 취지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그 부분에 생각을 달리하는 게, 현재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을까요? 저는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글로벌 표준에 맞게 정리하는 세제가 금투세인데 아직은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지금 안 돼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걸 유보를 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약간 한시적이지 않느냐 저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과세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한시적인 제도로서 운영을 하고 운영실적을 보면서 또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인 금투세라는 제도 개편, 제도와 연계해 가지고 제도는 항구화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고세율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배당소득 최고세율 45%인데 거기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공제분을 감안하면 39%고 정부가 가져온 게 35%니까 4%p를 가지고 과연 이게 인센티브가 되겠냐 하는 부분에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고세율은 조금 더 낮춰 줘야 하지 않느냐라고 생각되고, 또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께서 25% 말씀하셨고 그게 대주주에 대한 주식양도소득세율이 25%니까 같은 소득에 대해서는 같이 세율을 적용하는 게 타당치 않느냐 말씀 주셨는데 이거 굉장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두 소득이 똑같냐라고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지요. 예를 들어서 거래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굉장히 위험부담을 감당하면서 매매차익을 실현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고 배당소득은 아마 대부분이 대주주일 겁니다. 이걸 매각하려는 것보다는 계속 지속적으로 보유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이 소득을 꼭 같이 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세율은 지금 25%하고 35% 그 사이에서 결정하는 게, 그리고 세율도 다변화하는 방안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를 저는 주장을 했고요.

또 배당소득이 2000만 원 미만인 소액투자자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장기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드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거는 또 과세형평상 대주주들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큰 혜택이 가는데 소액주주들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이 없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저는 이쪽도 세율을 14%에서 9% 정도로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거를 제안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배당요건이 되겠지요, 배당성향에 대해서는 저는 이 제도의 목적이 배당을 촉진하는, 장기투자를 유도하는 그런 데 정책적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제도가 다소 복잡해지더라도 그런 취지를 살려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는 것은 저는 불가피하지 않느냐, 또 이 기준도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관련되는 정보라든가 통계를 잘 공시하고 투자자들이 충분히 이런 거에 대해서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게 한다면 그리 운용상의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두 그룹으로 나눴지요. 우수상과 노력상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여하튼 노력상 분야에 대해서는 저는 배당성향 기준을 조금 더 낮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쪽 분야에서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우리의 부동산 등에 있는 자금들을 생산적 분야, 기업투자 분야로 가게 하는 거고 저는 그 부분에서 우리 주력 제조업체들의 장기투자 자금이 늘어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현재 정부 기준으로 보면 현대차나 LG화학, 삼성SDI 등 우리나라의 간판 제조업체들이 지금 현재 대부분 빠지게 되어 있거든요. 이들 업체는 물론 배당성향을 높이고는 싶지만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규모 시설투자, R&D 투자를 단행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준을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해당될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 과정에서도 주주에 환원하려는 노력이 보여질 경우 그쪽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되고 그래야만이 투자자들이 우리 미래의 산업경쟁력을 지켜내는 이러한 제조업 분야로 장기투자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20% 수준으로 이걸 좀 낮추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고 분석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한 68개의 기업 정도가, 60여 개 기업 정도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대부분 주력 제조업체는 커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최은석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감하는데, 이번에 적용대상에 간접투자 쪽이 많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그거 관련해서 특히 리츠 있잖아요, 부동산 리츠는 저는 꼭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리츠는 굉장히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에 대한 자금을 이쪽으로 돌려야 될 필요가 지금 있는 거지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투자소득을 전 국민이 공유를 하면서 자산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다고 보고 또 지금 우리가 시급한 게 양질의 임대주택을 잘 공급해야 될 겁니다. 그 기제가 리츠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매매 시장의 수요를 이쪽에서 흡수를 해야지 부동산시장도 안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리츠에 특별한 배려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게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 분리과세만을 해 줬지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고액투자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주식만 이렇게 혜택을 줘 버리고 한다면 상당히 큰 자금들이 여기서 빠져나갈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한 9조 원 정도 모여져 있는데 그 돈이 절반 정도 빠져 버릴 거다라고 하면 아마 지금 우리가 어렵게 키워 나가고 있는 리츠시장이 붕괴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오히려 역차별을 해 버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같은 수준의 배려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츠는 이번에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세수감이 별로 없더라고요. 한 20억 정도 되는 겁니다. 혜택을 보는 데는 24개 상장리츠가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는 충분히 재정 당국에서 감당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정책적 목적을 우리가 일관되게 달성 한다는 취지에서 리츠는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감사합니다.

발의하신 위원님들이 얼마나 많은 고민과 숙고를 해서 발의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을 정도로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먼저 손 드신 게 정일영 위원님 그다음에 천하람 위원님 손 드셔서 그 순서로 발언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정부 측에 질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배당성향을 보면 우리가 다른 신흥국 평균 39.6%나 선진국 평균 49.5%에 비해서도 확연히 낮고 세율도 우리가 확실히 높고 그리고 자본시장 육성해야 된다는 취지도 다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시행했을 때 소기의 성과, 다시 말하면 배당이 늘어나고 주식시장의 밸류업 효과가 있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보면 이 효과에 대해서 상당히 이견이 존재하고 효과가, 그 영향이 일부에 그쳐서 전반적으로 제한적이라는 연구가 더 많은 걸로 보이고 결론을 내릴 수 없다라고 표현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배당성향 이런 거 배당규모 결정하는 요인이 세계 하나가 아니고 소유·지배 구조, 기업의 규모, 부채비율, 수익성,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숙도, 이거 다 맞는 이야기라 생각이 돼요. 정부에서 정부안을 낼 때 그러면 이런 세계 지원을 통해서 제가 얘기한 대로 배당이 더 증가하고 밸류업 효과가 나타난다고 정부는 왜 판단을 하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법 개정안 낼 때 처음에 여러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세수감 효과를 분석할 때는 과거 데이터를 갖고 분석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번의 경우에 배당소득과 관련해서는 행태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데 저희가 의지를 담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 봤습니다. 물론 이거는 아주 근거가 튼튼한 거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이 분석이 너무 어렵습니다. 얼마나 늘지는 굉장히 가정이 어려운데 저희가 미국이 연구한 그 연구를, 선행연구를 기초로 해 가지고 그 방식으로 한번 따져 봤습니다.

미국 연구가 어떤 게 있냐 하면 2003년에 배당세율에 대해서 실효세율을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그때 있었던 상황을 보고 훗날 배당이 얼마나 늘었냐를 봤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전제를 깔지만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면.....

○정일영 위원 미국 얘데요, 미국시장?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배당에 대한 실효세율이 떨어지면 배당이 증가한다라는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를 갖고 저희도 그렇다면 이것을 저희 쪽에도 적용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동일하게 적용을 하면 최소한 정부안이든 30%든 최고세율 25%에 따라서 세율이 더 떨어질수록 배당이 는다는 것은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그게 미국 시장하고 우리 주식시장하고는 확연히 다르지 않습니까? 이 정도 중요한 제도를 시행하려고 그러면 정부에서 더 좀 깊이 있게 분석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미국의 그 간단한 자료 가지고 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기에는 정부의 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그것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전문위원한테 자료도 갖다 주고 설명하고 해서 좀 더 설득력 있는 검토보고서가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세수 효과 관련해서도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다른 연구보고서 보면 정부안에 대해서 3년간 매년 2448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해서 총 7344억 원 세수 감소로 나타나요.

아까 존경하는 이소영 위원님 설명에 따르면 배당이 지금보다 전혀 늘어나지 않았을 때를 전제로 한 계산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전문위원님, 이게 맞습니까? 배당이 전혀 안 늘어났을 때 전제로 한 계산이예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만든 자료 같은데?

○전문위원 정지은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정부안이나 예산정책처는 행태 변화를 고려하지는 않은 추계이기 때문에 기존의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추계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네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런 측면에서는 한계를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이게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건데 제도를 시행하면 배당이 늘어나서 얼마큼 늘어났을 때 얼마큼 늘어났을 때 대안을 한 3개 정도 보고 세수에 대한 검토를 하셔야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시행하는 제도에 대해서 배당이 늘어나지 않는 걸 전제로 한 분석은 전혀 안 맞는 거지요, 예산정책처도 그렇고.

그러면 정부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본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까 차관이 잠깐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일차적인 효과는 과거 것을 데이터로 해서 1차 세수 효과를 뽑았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시듯이 이것은 배당의 증가를 기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배당의 증가가 과연 얼마가 될 것인가 이게 사실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것은 아까 미국 사례를 봤다든지 또 저희가 다른 나라 자료도 봐 가지고 그 예상을 한번 해 본 겁니다.

○정일영 위원 실장님, 미안한데, 예상을 하는 건 좋은데 정부안이 최고세율 30%로 내놓지 않았습니까, 한도 최고?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35%입니다.

○정일영 위원 예, 35% 해 왔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세수 분석을, 이게 얼마나 감소할 건지 늘 건지는 분석을 전혀 안 하신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일차적인 세수 효과를 내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세수 효과로 발표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 플러스 이것으로 인해서 배당이 추가적으로 얼마가 늘어날 것인가에 대한 추정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그 세수 효과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 후에 여러 지적도 많고 사실 전문위원 지적도 있지만 행태 변화를 가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시뮬레이션을 미국 사례를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 봤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정부안대로 이렇게 시행이 된다면 세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혀 몰라요, 늘지 줄지도?

하여튼 좀 답답한 상황이고요. 그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리고 이게 부자감세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배당소득 분위별로 보면 상위 10%가 91.23%를 차지하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그것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상위 10%가 거의 다, 한 90% 이상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감세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정일영 위원 그것은 차관님이 좀 답변…… 수치가 아니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 통계는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했을 때도 많은 지적이 있어서 그래서 최고세율을 정부로서는 35% 정도로 갖고 왔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하지만 시장의 기대나 여러 가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좀 더 여지가 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일영 위원 그리고 이 질문 마지막으로, 고배당기업 요건 관련해서인데요.

보면 2024년도 결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분석한 것 보면 고배당기업에 해당되는 기업이 주로 제일 많은 게 금융·보험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아무래도 금융 쪽이 많 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수익 구조가 안정적이고 대규모 투자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업종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성장을 위해서 다시 대규모 재투자가 필요한 업종에는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적은 거고, 배당을 많이 할 수가 없으니까, 투자를 위해서. 이것도 정부 측은 다 검토를 하신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래서 저희가 노력형이라는—가칭이지만—배당성향이 높지 않더라도 25%만 넘으면, 일정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혜택을 주자라는 걸 저희가 도입한 이유가 주요 대규모 제조업체들이 맞추기에 우수형은 너무 어려우니 노력형을 통해서라도 유도를 하면 이 혜택이 전반적으로 번지고 또 배당 증가 효과도 기대하고 자본시장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만든……

○정일영 위원 어쨌든 제 의견을 정리를 하면, 정부 측에서 연구나 정책 배경에 대해서 시원한 답을 못 내놓고 있는데요. 그 취지는 저나 정부도 같이 갖고 있는 건 똑같아요.

그래서 제도가 도입된다면 최고세율은 정부 35%인데 저는 일단은 30% 정도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해당 기업 요건은 정부안대로, 저는 거기에 찬성이고. 한시적으로 3년 했으면 좋겠고요.

시행시기가 문제인데, 정부 측에 한 가지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게 전산시스템 개편을 하고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소영 의원님 안대로 가능한 빨리 시행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제가 국감 때도 얼핏 말씀을 드렸고 지금도 동일한 표현입니다마는 필요한, 저희가 노력형을 뽑을 때 내년에 하는 배당을 갖고 어떻게 보면 약간 이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다는 측면의 지적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시행시기를 1년 당기는 것은 정부로서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큰 문제 없다는 거지요?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저는 당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리츠 관계, 안도걸 위원님이 말씀을 정확하게 하셨는데 저는 부동산시장 안정, 부동산 공급 확대 그리고 부동산 개발이익을 국민에게 분배하는 그런 부동산 증권화 틀, 부동산 자금의 자본시장 유입 이런 정책도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게 맞고 또 리츠 시장의 역차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도 이번 제도에 포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도걸 위원님께서 여러 기업들의 예시를 드시면서 이것을 우수형, 35%가 됐든 40%가 됐든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런 기업들은 늘릴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라는 취지로 말씀 주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당성향이 한 10% 후반대 정도인 아니면 10% 중반인 기업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우수형만 있다라고 하면 배당을 늘리라는 압박을 받지도 않을 뿐더러 늘릴 요인도 사실 못 느낄 겁니다.

이게 우수형만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이소영 의원님 안에 의하면 한 30% 언저리에 있는 기업들 내지 20% 후반에 있는 기업들은 주주들 아니면 행동주의 펀드들로부터 늘리라는 압박도 많이 받을 것이고 실제로 늘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정작 시장 평균보다 훨씬 낮은 배당성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그런 압박도 느끼지 않고 요인도 안 느낀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안이나 안도걸 의원님 안처럼 노력형을 둔다고 했을 때 그것의 문제점은 이소영 위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노력이라는 것은 뭔가 사이클을 왜곡하거나 뭔가 이런 형태로 내지는 실제 본인들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도 노력하는 것처럼 해서 이 요건들을 약간 형해화시킬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우수형만 두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노력형을 둔다고 해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원칙과 정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위원께서 주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적정세율은 얼마인가라는 걸 봤을 때 결국 대주주가 지분을 양도할 때에 있는 세율과 비교를 해야 된다, 거기에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예컨대 제가 배당성향 10% 정도 수준의 기업이라고 하면 지금 우수형 내지는 정부안 같은 것들이 통과된다고 해도 저는 당연히 현금 가지고 있고요. 나중에 팔 때 이런 낮은 세율 적용을 기대하면서 버틸 겁니다. 당연히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형태의 왜곡된 어떤 저배당을 계속해서 가지고 갈 게 아니라면 저는 요건은 굉장히 심플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수형이니 노력형이니 이런 것 없이 아까 최은석 위원님 잘 말씀해 주신 대로 아주 심플하게 제도를 짜서 10% 배당을 하고 있는 기업도 예를 들면 한 20%로 늘린다고 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결국 거기에 대한 대안은 현금 싸매고 있다가 나중에 대주주가 팔 때 대주주만 경영권 프리미엄 받아 가지고 더 이득 보는 그것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요건을 심플하게 가져가야 되고.

또 하나, 아까 이소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저도 국감에서 지적했지만 전문위원 자료 117페이지 봐 주시면 지금 대한민국의 통합 배당세가 전 세계 1등입니다. 제가 국감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 법인세를 내고 나서 그로스업은 9%밖에 적용을 안 해 주기 때문에 배당소득세를 내고 나면 통합 배당세가 전 세계 1등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예컨대 제가 지금 배당 한 10% 정도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우수형의 적용도 못 받아, 노력형의 적용을 받기도 좀 애매해 그러면 그냥 버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국가 경제적으로 안 좋거든요. 어쨌든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들도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당하도록 하는 게 시장에도 좋고 우리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잡한 요건 둘 것 없이 지금 과도하게 높은 배당세를 정상화한다, 양도세와도 균형을 맞추고 지금 통합 배당세도 글로벌스탠더드 정도에 맞게 가져간다고 하면 복잡한 요건을 둘 필요 없이 모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게 배당을 유의미하게 늘릴 수 있는 방안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최고세율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 말씀하셨는데 이것 35, 30 이런 것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제가 경영하고 있는 대주주 입장이면 굳이 배당 안 할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 깎아 준다고 왜 배당합니까? 제가 계속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이든지 뭐 그렇게 하지.

결국에 시장의 행태 변화를 야기하려면 아주 깔끔하게 행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수준의 세금 혜택을 줘야 되고요. 애매하게 가 가지고는 행태 변화를 야기할 수 없다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한시 적용이나 계속 적용이나 이런 부분도 이것 몇 년 하다가 끝나겠다 아니면 몇 년 하는데 또 그 요건도 복잡하다 그러면 주주들의 배당 압박도 안 먹힐 거고 배당도 늘어나지 않을 겁니다. 심플한 제도로 계속 적용으로 가야 저는 유의미한 배당 확대 행태 변화를 이끌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듣기 전에 리츠에 대해서 안도걸 위원님과 정일영 위원님 제기를 하셨는데 국토부에서 나와 있지 않나요? 국토부 입장 한번, 리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국토교통부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리츠 포함 관련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츠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기반으로 배당하는 중위험·중수익 선진국형 투자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직접투자 수요를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안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2000년대 김대중 정부 때 저희가 리츠를 도입한 이후에 싱가포르, 일본이 비슷한 시기에 리츠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일본과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강력한 세제 혜택과 중앙은행의 직접적인 투자를 통해서 우리나라보다 10배, 30배 이상 리츠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걸음마 수준입니다.

현재 리츠에는 45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90% 이상 배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범생이기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게 되면 투자 매력도는 급격히 저하될 것이고 리츠시장은 주가 하락 등을 통해서 굉장히 침체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본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상장주식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는 건 중요하지만 이렇게 중위험·중수익을 노리는 이런 리츠를 통해서 안정적인 배당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리츠를 분리과세에 포함하여도 세수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번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리츠가 포함되기를 강력하게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제 국토부는 들어가셔도 좋겠고요.

정부 측, 리츠의 세감은 얼마 안 된다고 하는 국토부 얘기가 있고 안도걸 위원님과 정일영 위원님 지적이 있었는데 리츠를 분리과세하는 경우에 세감은 얼마로 정부 측에서 계산하고 있습니까? 추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세수감은 저희가 계산 아직 못 해 봤고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하는 게 이제 주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배당을 좀 확대하자, 유인을 주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리츠나 펀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리츠는 받은 소득의 90%를 배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말은 뭐냐 하면 세제지원이 있든 없든 90% 배당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은 저희가 하는 제도는 배당을 확대하는 유인을 꺾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설계하고 있는데, 현재도 90% 이상 배당하는데 거기에 추가 혜택을 준다는 게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저희들은 좀 더 심도 있는,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안도걸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지요. 추가 혜택을 준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추가 불이익을 주게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주식에 투자할까, 리츠로 갈까 거기서 이렇게 형량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똑같이 고액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둘 다 고율 과세를 하고 있는 거지요? 종소세 대상이 되는 거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주식만 이렇게 떨어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그 돈들이 안 가지요. 그러면 주식

시장 리츠가 붕괴가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부작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를 도입할 때 부작용이 뭔지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렇게 해 가지고 리츠에서 빠져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지금 현재 리츠에서 공모로 들어가는 경우에 5000만 원 한도까지 9%로 분리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렇지요. 분리과세인데 그게 배당소득이 20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종소세 가입이 안 되는 소액 투자자들 이야기인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고액 투자자, 한쪽은 종소세 과세를 받고 한쪽은 안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주식은 분리과세로 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차이가 생겨 버리는 거지요. 이것을 내려 주면 좋지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거꾸로 올라가는 셈이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 이거지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리츠 같은 경우는 90% 배당하는 것으로 의무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고배당상품에 돈들이 많이 들어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빠져 버린다 이거지요, 그 돈들이. 90이 중요한 게 아니고 90을 보고 리츠에 들어가는 돈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 빠져 버린다 이거지요. 그래 가지고 리츠 시장이 붕괴가 돼 버리면 그것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소위원장 박수영** 발언 신청하신 순서대로 최은석 위원님 그다음에 최기상 위원님 순으로……

○**최은석 위원** 차관님, 이미 배당을 90% 하고 있어서 대상이 아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런 접근법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이렇게 논의하는 것들은 큰 틀에서 근본적으로, 제도를 한번 긍정적으로 바꿔 보자고 하는 건데 너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가지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간단히 말씀드리려고 발언권 신청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은 다음에 답변을 몰아서 하도록 하시고요. 종합적으로 해주시고.

최기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최기상 위원** 전문위원님께 하나 여쭙볼 것은 117페이지 각주 2번의 이원적 소득세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확대되고 있다. 몇 나라 정도 하고 있는지가 없어서요.

○**전문위원 정지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나중에 알려 주시고요.

정부에 여쭙볼 것은 113페이지 ‘대상기업 요건’ 이렇게 정부안에 있는데 이 정부안에 의거해서 대상이 될 만한 기업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입니까? 상장협이라는 데에서 나온 의견은 봤는데 이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이 제도를 적극 환영합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상황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따로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최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여쭙보고 싶은 게 결국은 이 제도를 도입해서 세수효과가 고소득층에 집중될

거라는 지적들은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뛰어넘을 만큼의 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자신감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걱정이 계속 남을 것 같거든요. 그에 대한 상황만 말씀 듣고 마무리하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종합하기 전에 위원님들 얘기 다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태호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 저는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지지하는 거고 배당소득 분리세제 도입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또 이게 지금 흐름이기 때문에 인정하고 질문을 드리려고요.

아까 정일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조세제도의 변경을 통해서 배당성향을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하나 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이미 아까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그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증거는 없다 이런 게 있고.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 때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한 번 시행을 해 봤잖아요. 해 봤는데 그때도 결과적으로 보면 배당을 늘리지는 못했고 늘어난 기업의 경우에도 결국 대주주가 최대이익을 보는 그런 결과가 왔다 이런 거거든요. 하여튼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인데 그런데 쟁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최고세율을 보니까 위원님들이 제시한 것들이 보면 제일 낮은 게 9%, 정부안이 35%, 30% 등등 여러 가지 안이 나와 있는데 최고세율 적용의 부분에서는 정부 입장은 어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최고세율에 대해서는 정부안보다 내려가는 쪽에 논의할 여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 그러면 정부 입장은 오픈돼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태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해당 기업에 대해서 정부안과 다른 위원님들의 안이 또 상이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하나씩 여러 가지 의견 나온 것 중에 입장을 전달할까 합니다.

○정태호 위원 그다음에 시행일을 내년으로 1년 당기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래서 26년도 지급되는 배당부터 분리과세를 할 수 있고요. 그 대상 기업은 25년도 사업 기준으로 판단하면 시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 그다음에 조세특례제한법으로 할 거냐, 소득세법으로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도 오픈돼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일단 한시성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태호 위원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소위원장 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부 측의 답변도 한번 듣고 위원님들이 굉장히 다양한 안을 내놓으셨는데 종합적으로 정부 측 입장을 듣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

습니다.

뭐 있습니까?

○정일영 위원 리츠 하나만 간단하게……

○소위원장 박수영 얘기할 게 또 있습니까?

○김영환 위원 아니, 손 들었는데 왜.

○소위원장 박수영 들었어요? 못 봤어요. 그러면 정일영 위원님 다음에.

○정일영 위원 차관님, 아까 리츠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얘기를 하시던데 리츠 분리과세제도가 내년 일몰이지요? 2026년도 말 맞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일영 위원 그래서 차관님 말이 되게 중요한데 그런 취지면 사실 이게 1년 정도 남아 있기는 하지만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더 불안해질 것 같아요. 거기다가 리츠를 제외하고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 그러면…… 최근에 보면 코스피가 한 23.5% 상승했는데 리츠 톱10 주식은 22.3% 상승했더라고요. 리츠가 기여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일영 위원 리츠가 부동산시장 안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취지에 맞게.

그런데 차관님이 리츠 포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하셨는데 리츠 시장 붕괴 또 역차별 이런 우려도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리츠. 대답을 하셔야 돼요. 고개 끄덕끄덕만 하면 속기록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소위원장 박수영 종합답변하실 때 다 같이 넣어서 말씀하시면 되고요.

○정일영 위원 그런가요?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제가 신청하신 것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환 위원 뭘 못 봐요, 다 보시면서.

일단 여러 위원님들이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작년 한 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은 저로서는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수영 위원장님도 마찬가지로 추경호 원내대표 당시 금융투자소득세 법안을 제출했다는 것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배당소득 분리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세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질문드릴게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보니까 23년 배당성향이 40.5%라고 기재돼 있어요. 맞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습니다.

○김영환 위원 선진국 평균이 42.2%고.

24년도는 어떻습니까? 배당성향이 어때요?

○전문위원 정지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조금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2024년도는 블룸버그 자료고요. 29.2%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기준이 어떻게 달라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박금철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파악하는 시점하고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낮다

는 건 확실한데 그러면 도대체 특정 시점에 얼마나? 블룸버그는 그것을 30으로 하는데 그때 금감원은 그것을 29로 하고 이래 가지고 약간씩 다릅니다, 배당액을 어느 시점에서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낮습니다.

○**김영환 위원** 단순히 시점상의 문제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낮기는 낮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낮기는 낮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에요.

배당성향을 높이는 요인들이 조세도 있을 수 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지만 수많은 독립변수들이 또 존재를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세수효과도 독립적 분석이 힘든 게 뭐냐 하면 한쪽의 변수에 변화를 줬을 때 결과물에 영향을 미치는 서로 상호관계를 계속 추적해서 분석해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독립변수들 간에 서로 영향을 줄 때는 더더욱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 가정하에, 다른 변수들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의미 없게 나올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독립변수들 간에 서로들 영향을 줄 테고.

그래서 첫 번째, 배당성향을 결정하는 요인들 중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 이게 첫 번째 기재부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게 배당성향을 또 결정하는 요인이기도 하나? 그리고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해 줬을 때 주총에서나 이런 소액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해 달라는 요구가 관철되기 시작하고 이게 배당성향에 또 결과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독립변수들은 어떻게 지금 판단을 하는지. 왜 이게 배당성향을 결정하는 주요한 원인인가, 요인인가? 이것을 기재부에서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배당성향을 높이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냐? 이것을 또 얘기해 주셔야 되잖아요. 거의 명확해요? 자본시장이 활성화됩니까? 이 두 단계 논리적인 단계를 다 건너가야 되는데 두 단계 다 확실히 기재부는 얘기를 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배당 결정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가 상법 개정 등이나 여러 가지 주식시장의 활성화·투명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이 다 배당에 간접적·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요. 하지만 세제도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원 오브 뎀(one of them)이잖아요. 그러면 주식시장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른 큰 변수들은 없는지, 예를 들면 공급 사이드 쪽을 우리가 더 강화시켜주는 요인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이 세수효과를 감수하고서라도 이게 가장 큰 변인이기 때문에 비교형량을 해 봤을 때 세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했을 때 주식시장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지 아니면 안도걸 위원님도 관심 있는 퇴직연금 기금화해 가지고 한 500조 시장을 공급 사이드를 풀어 준달지 하다못해 기준금리 내려도 주식시장은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수많은 거시변수들, 수많은 미시변수들 사이에서 이게 주식시장 활성화에 배당성향 그다음에 주식시장 활성화로 넘어가는 가장 큰 주요한 원인인지 어느 정도 확신하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가장 큰 요인이냐고 말하면 저희로서는 지금 이것을 계량화해서 다 분석하기는 어려운데요.

○**김영환 위원** 어렵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영향이 크다고는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김영환 위원** 얼마나 커요? 비교형량을 했을 때 얼마나 큼니까? 이것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 활성화 안 돼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일단 이 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걸로도 간접적으로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영환 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기재부 입장을 알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드릴게요.

조세중립성을 얘기하려는데요. 형평성 관련 문제일 겁니다. 펀드, 간접투자 상품들, 리츠, 똑같은 배당소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달리 정하는 게 저는 소득의 원천 성질상 다 똑같은 소득인데 여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제가 미리 그때 실무당정협의 때 제가 한번 세제실장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만 했을 때 똑같은 성질의 다른 소득들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그랬는데 이것만 딱 하겠다고 분명히 답을 하셨잖아요, 그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그때 그렇게 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벌써 안도걸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이, 정일영 위원님도 그렇고 배당소득의 성질이 똑같으면 다 같이 해 줘라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 자체가 다른 배당소득들에 영향을 분명히 줄 거다라는 것 하나하고요.

그다음에 세수손실 관련해서 그때 2017년 조세재정연구원 자료, 그때 세수손실을 초래했다고 하는데 그때 얼마인지 혹시 파악이 됐어요? 그때 더 까다로웠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1000억 미만이었습시다.

○**김영환 위원** 1000억 미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그런데 그때 요건은 되게 까다로웠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좀 더 까다로웠습시다.

○**김영환 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동적 분석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과거 데이터밖에 없어요. 그 데이터를 분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는 정말 백번 양보해서라도 보면 데이터를 보면서 하는 게 맞다. 보면서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구요.

그리고 근본적인 질문인데 지금 애플 같은 경우도 배당성향이 높아요. 특히 미국 기업들이 배당성향이 높는데 스티글리츠나 여러 경제학자들이 왜 미국의 제조업이 붕괴됐는 가라는 것을 두고 많은 비판을 어디 쪽에 두냐면 금융자본 쪽에 두고 있어요.

애플이 국내 제조회사가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없습니다.

○**김영환 위원** 없어요. 없습시다.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붕괴가 금융자본의 과도한 배당요구들, 단기이익의 요구들로 인해서 제조업이 국내에 있을 수가 없지요. 왜? 코스트가 높으니까 다 해외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분석하는 경제학자들이 많아요. 비판 요인들이 많습시다. 특히 한국같이 제조업으로 먹고살아야 되는 국가 같은 경우 현재 코

리아 디스카운트의 일정 요인이 배당성향이 낮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디까지 적절하게 우리가 디스카운트를 줄이면서도 제조강국을 계속 꿈꿀 수 있는지, 금융자본의 단기적 이해관계를, 과도한 이해관계 요구를 어디서 정리를 좀 해 줄지 이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생존의 아마 기준들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고민들은 기재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답변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듣도록 하고요, 위원님 질의가 워낙 많으시니까.

○김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과세할 때 배당소득이 왜 세율이 높지요? 이유가 뭐니까, 실장님? 대주주의 양도차익 최고세율하고 배당소득 최고세율하고 종합과세에 포함되잖아요. 왜 그렇게 정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보통 선진국 같은 경우는 아예 금융 쪽을 따로 보고 있는데 저희는 과거부터 이자하고 배당을 금융소득으로 그냥 같이 보자 이런 식의 개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주식양도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옛날에는 과세가 안 되다가 그걸 점차 넓혀 오는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배당은 금융기관이 지급하기 때문에 원천징수도 쉽고 여러 가지 과세 인프라도 있고 해서 그건 과거부터 과세가 됐고 주식양도세에 대해서는 그렇게 과세가 되지 않다가 점차적으로 넓혀 오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 부분이 과도기적으로 하나가 있고요.

노동소득과 비교해서는 왜 그렇게 정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자·배당 같은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을 시켰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도 보통 금융 쪽은 조금 세율을 달리하는 이유가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그게 사실 금융소득하고 노동소득하고의 원천이 다른데 왜 낮게 하나 그런 지적도 있지만 또 금융소득의 특성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걸 원래 이동성도 크고 약간의 세율 차이만 가지고도 워낙 이동성이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금융소득을 조금 다르게 취급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기재부의 앞으로 조세정책의 방향하고도 좀 연관돼 있을 텐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여러 위원님들 지적 중의 하나는 불평등입니다. 특히 자산의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는 요인들을 이걸 도입했을 때 어떻게 만회할 거냐라는 게 하나고요. 애초에 자산소득 불평등을 강화시키는 요인들을 아예 없애거나 줄이자라는 게 또 위원님들의 주장 중 하나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꺼번에 대답해 주시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재부가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김영환 위원 기록했다가 꼭 대답을 해 주세요, 속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진행하시지요.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이 이소영 위원님 의견 중에 하나가 나왔는데 대주주가 차라리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5% 했을 때와 35% 했을 때 유보해 놔다가 차라리 양도차익으로 남기지 배당소득으로 안 한다는 의견이 하나 있었는데 지금 대한민국 대주주들이 기업을 운영하는 오너들 아닙니까? 그러면 단시간에 배당소득 때

문에 지분을 팔거나 이런 사례들이 혹시 있었나요? 저는 보지를 못했는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무래도 대주주 같은 경우는 단순 양도차익 때문에 매각하려고 하는 요인은 일반주주에 비해서는 좀 작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리고 사실은 기업을 완전히 매각하거나 이러한 일이 없으면 저는 이러한 일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그리고 저는 세수효과가 조금 동적 분석에서 되게 리스키(risky)하다고 봐요. 어떻게 나올지 제가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바라보는 분들이 사실은 이 효과에 대해서 되게 의심스러운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수효과에 대해서 양쪽의 극단에 놓여 있는데 저는 되게 리스크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두드리면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답변을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관님이 종합 답변 하시고 그다음에 발의하신 의원님, 이소영 의원님, 최은석 의원님, 안도걸 의원님 순으로 마무리 발언 하시고 이 안건을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차관님께서 종합적으로 정부 측 입장을 답변해 주시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제가 다 노트는 했는데 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최대한 적은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혹시 부족하면 세제실장이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전년보다 배당을 줄이지 마라는 것은 영업 환경에 따라, 그 해 그 해에 따라 사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과하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저희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걸 둔 이유도 또 나름대로 고민한 것은 배당을 작년보다 줄였는데도 분리와세로 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매년 전년보다 줄이지 마라는 것도 좀 과도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소영 의원님 대안처럼 특정한 기준 연도, 시행시기, 시행하는 첫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지만 처음의 스타팅 포인트보다는 줄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정도의 기준이라면 저희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노력형과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볼 때 사실은 노력형을 둔 이유는 워낙 우수형에 허들이 좀 있으니까 노력형에서도 혜택을 줘서 일정 부분 효과를 기하자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3년 평균 대비해서 5% 증가를 해 가지고 사실상 매년 2.5% 늘어나는 게 실제로 어느 정도 기업이 어려운지를 저희가 데이터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24년 기준으로 3년 치 연속 2.5% 이상 늘리고 배당성향이 25~40%, 저희가 노력형을 타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전체 법인이 216개 법인이었습니다. 그중에서 3년 연속 2.5% 늘린 게 36개, 즉 한 20% 조금 모자라는 수준에 기준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여기서 평균으로 보는 경우에는 대체로 많이 넘지만 실제로 개별 기업별로 보면 생각보다도 맞추기 어려운 통계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것을 의

미 있게 갖고 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다만 그랬을 때 이걸 통과했을 때 세제지원이 우수형과 동일하나, 동일하게 전액을 다 하느냐 이 부분도 저희들 같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도 논의의 여지는 있지만 만약에 과하게 세제혜택을 줄일 때 그러면, 이 그룹에 해당되는 게 대체로 대규모 제조업체들입니다. 이분들이 볼 때 예를 들어서 특정한 최고세율을 저희가 주려고 하는데 혜택이 증가분이나 아니면 일정 비율만큼만 준다고 하면 사실상 의사결정하는 대주주 입장에서 보면 최고세율이 작동하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그로스업 단계로 하면 40%가 일정 비율 적용되고 낮아진 최고세율이 적용돼서 가중평균된 게 본인의 실효세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대주주에 대한 인센티브 기제가 약화되는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고세율이 정해지는 것과 이거랑은 연계되어 있다. 쉽게 말하면 최고세율을 어느 정도 내리느냐하고 노력형에 대해서 세제혜택을 주는데 어느 포션을 줄 거냐는 결국에는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일정 부분 고민은 되는 상황이지만 최고세율을 같이 보겠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최고세율 자체는 여러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같이 논의할 생각이구요.

그리고 대상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은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상장법인에 다 하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계속 이 부분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현재 있는 모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가 피하는 정책에 행태의 변화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도가 좀, 저희가 볼 때는 예전보다는 굉장히 심플하게 갖고 왔습니다마는 위원님 보시기에 아직도 복잡하지만 그래도 세수감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세수감이 조 단위로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큼니다. 그런 부분과 과연 이게 모든 상장법인에 다 주는 게 괜찮느냐, 행동의 변화가 없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고민이 되고요.

그리고 펀드, 리츠도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펀드, 리츠는 법인 도관이 되기 위해서 90% 이상을 배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0% 이상 배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를 맞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과연 이 부분에 만약에, 리츠를 말씀 주셨는데 리츠의 어떤 부분을 보고 타당성을 보신다면 사실은 이것 외에 굉장히 많은 동일한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공모펀드도 있고 사모펀드도 있고 인프라펀드도 있고요. 저희가 좀 이따, 국민성장펀드도 있고 굉장히 많은 펀드들이, 뉴딜펀드도 그렇고 다 이렇게 회사형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회사형을 어느 하나만 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어디까지 줄 건지 저희가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또 종합적으로 봐야지만 의사결정을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원천세율을 14% 대신에 9%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세수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외국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외국인은 저희들이 종합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외국인이 9%가 다 되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건데 외국인이 전체 우리 배당의, 제가 볼 때는 한 37%, 작년에 총 48조 중에 18조를 외국인이 받아 갔습니다. 이분들한테 다 9%로 원천징수하고 종료하는 부분이 생길 거고요. 또 금융권에서 제도를 도입하는데 현재는 14% 원천징수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9% 원천징수시스템을 새로 또 갖춰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을 위한 제도시행이 딜레이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14%로 해야 되고요.

또 개인이 만약에, 소액주주들이 9% 혜택을 받으려면 ISA 계좌를 통해서 들어가면 비과세 또는 9% 혜택을 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감안할 때 2000만 원 이하를 14에서 9로 내리는 것은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환 위원** 제 얘기 답변은 왜 하나도 안 하세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것은 세제실장님이 답변하시지요, 김영환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까 김영환 위원님께서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금융 쪽의 과세를 일반 근로소득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문제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 사실 그 부분은 지난번에 금융투자소득세가 국회에서 논의 끝에 일단은 도입을 안 하기로 했고 아까 정태호 간사님께서도 그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같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런 부분들이 합의가 돼 가지고 금융 쪽의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과세 체계를 가자라는 어떤 큰 합의 안에서 배당이 논의가 된다 그러면 같이 볼 수 있는데 지금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지난번에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급하게 배당 쪽에 주식시장,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런 방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차원에서 법안을 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일영 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소위원장 박수영** 예, 의사진행발언.

○**정일영 위원** 위원장님, 발의를 한 위원하고 소위의 안 한 위원하고 약간의 차별이 있는데요. 처음에 설명하고 나서 발의한 위원 중심으로 순서를, 질의 등등 한 것은 좋아요. 좋은데, 지금 마치 정부 측 답변 듣고 발의한 위원 세 사람 질문하고 끝내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지금부터는 같은 소위 위원 입장에서 질의를 하고 마무리해야 되지 않을까?

○**소위원장 박수영** 예, 기회 드릴게요.

우선 이소영 위원님 그다음에 최은석 위원님 그다음에 안도걸 위원님 그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대한 줄여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박성훈 위원님이 못 오셨지만 박성훈 위원님 발의한 내용 중에서도 다른 의원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있거든요. 유의미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논의가 되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가장 많이 주신 말씀이 이 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실제 배당이 늘어날 거냐, 효과성이 있을 거냐 그리고 이로 인해서 자본시장이 정말 활성화될 수 있을 거냐라는 질문

은 너무 당연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사실 제도를 시행해 보기 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는 맞는데요. 제가 이제 그거 관련해서는 몇 가지 우리가 같이 추단해 볼 수 있는 근거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전문위원 검토자료 123페이지에 보시면 대한민국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해 본 게 딱 한 번입니다. 박근혜정부 때였고, 당시에 3년 기한으로 일몰로 도입이 됐었는데 실제로는 도입하고 1년 딱 시행되고 중도에 포기했습니다. 분리과세는 포기하고요, 2000만 원 한도의 세액공제 제도로 바뀌어서 사실상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딱 1년 시행해 봤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세 번째 각주에 보시면 그 당시의 요건이 나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다 앤드(and) 조건으로 맞춰야 되는 제도였습니다. 배당성향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 그리고 배당수익률이 시장평균의 120% 이상이면서 총배당금 증가율이 10% 이상 증가, 그러니까 굉장히 복잡한 제도였지요. 그런데 이렇게 복잡한 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딱 1년 시행되는 동안에 효과가 없었느냐? 사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 종감 때도 보여 드렸던 자료인데요. 제가 오늘 이것을 다 출력해 오지는 못했지만 시행 딱 1년 되는 때에 전년도보다 3.4%p 늘어났었고요. 그다음 해에 이 제도가 세액공제로 변화되고 이제 유명무실화되면서 5.1%p가 하락했습니다, 평균 배당성향이요. 그래서 1년이지만 그리고 요건이 굉장히 복잡했지만 효과는 존재했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정부에서도 미국 사례 얘기했지만 미국의 경우 2003년에 저율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하고 나서 원래는 금융·유틸리티 상장기업들 중심으로 배당이 이루어졌었는데 분리과세를 적용하고 나서 비금융·비유틸리티 기업들에서 정기배당금 지급액이 약 20% 증가했고 신규 배당 시작을 한 기업들이 크게 늘었다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배당세금 깎아 준다고 배당이 늘어나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최근의 사례가 바로 감액배당에 대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액배당에 대해서 신규로 세금 부과를 하는 제도가 이번 조세소위에서도 논의가 되는데요.

사실 이게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그거를 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투입한 자본을 주주에게 돌려주는 거라고 봐서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고 배당을 하는 방법을 발굴한 거지요. 그래서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을 시작하고 나서—제가 출력해 오지 않아서 죄송한데—감액배당이 폭증했습니다. 처음 2022년에는 40개의 기업이 하다가 3년 후인 2025년은 4월까지만 카운트했을 때 3월 결산에서 150곳으로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경영자의 의사결정이나 주주들의 요구에 있어서 배당과세가 얼마나 민감하게 보여 주는지를 확실하게 보여 주는 사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에 배당을 하면 대주주도 세금을 내고 주주들도 세금을 냈기 때문에 그 요구가 약했다고 하면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방법이 발견되니까 너도 나도 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배당을 늘렸습니다. 금액 기준으로든 원래 5조로 시작해서 3년 만에 11조 원으로 늘어났었고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방침이 정해지고 나서는 이게 많

이 줄었지만 4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세금 세율 조정이라고 하는 것, 세금 정책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배당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저는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배당이 확대되면 자본시장은 활성화되는 거냐? 저는 그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별 기업으로 봐도 배당이나 자사주 소각은 그게 그대로 주가에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거의 합이 자본시장의 예를 들면 코스피지수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말씀 주신 것들 중에서 몇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대주주 양도소득세 비율하고 비교하는 게 맞느냐, 대주주가 지분을 잘 양도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대주주가 지분의 일부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 달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래 중에서도 언론 기사에 많이 나왔지만 더존비즈온 대주주가 지분 전부를 양도하고 있고 최근에 남양유업, 한샘 같은 기업들이 대주주 지분 전부를 양도했고 어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양도를 하는 경우는 세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고 비교는 유의미하다 생각하고.

아까 정부가 노력형에 대해서 3년 연속 2.5% 배당금을 늘린 곳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이 정도를 맞추는 것도 되게 어렵다고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진단이 좀, 평가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2.5%를 늘리든 얼마를 늘리든 아무런 혜택이나 이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맞춰서 늘릴 이유도 없는 것인데 만약에 ‘대주주 세율을 엄청나게 낮춰 줄게요’라고 하면 사실 2.5% 늘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지요.

왜냐하면 차관님 아시겠지만 물가상승률이 보통 연 2~3% 정도 됩니다, 특별한 해가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지금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배당세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물가상승률 정도 수준의 배당 증가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가상승이 연 2~3% 되는데 이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래서 저는 세율에 대한 어떤 정책 변화가 생기면 연 2.5%를 하는 것은 기업들한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수상은 배당성향 40%, 국내에 몇 개 되지도 않는 기업에 한정해 놓고서 그와 똑같은 세제 혜택을 물가상승률만큼 배당금을 증가시키는 기업들한테 준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 요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리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제도를 고민하면서 설계했을 때는 어쨌든 대주주 최고세율을 깎아 주는 것만큼 배당이 늘어나야 세수가 확대되기 때문에, 아래 구간 또는 외국인·법인들이 내는 세금은 배당금이 늘어나면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세수를 늘어나게 하기 위해서 배당 증가를 요건으로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그 논리를 일관되게 적용하자고 하면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리츠가 빠지는 게 맞겠지요. 왜냐하면 리츠는 모든 수익을 다 배당하고 있고 지금보다 세제 혜택을 더 준다고 해서 늘어날 여지는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논리 구조와 무관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리츠는 다른 어떤 기업이나 다른 거랑 비교해 봤을 때 수익을 전체 다 배당하는 비이클이기 때문에 사실 배당으로 치

면 전교 1등입니다. 그런데 전교 1등으로 배당을 가장 잘하는 곳에 대해서 ‘너는 더 늘릴 여지가 없으니까 혜택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뭔가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는 그 업계 관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균형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또 사실 리츠 상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문화가 조금씩 생겨 나가고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이게 세수 감소가, 아까 국토부에서인가요 안도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만약에 정말로 리츠에 대해서 분리과세 동일하게 적용했을 때 20억 정도 감소라고 한다면 꼭 이걸로 인해서 배당이 늘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문화를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리츠도 포함시키는 거를 저도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여기까지……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아주 연구를 많이 해서 가지고 주실 말씀은 많으신데 시간이 짧아 죄송합니다.

다음은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저도 오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면 정말 배당이 증가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될 거냐, 이 요인 말고 다른 것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 물론 이게 100%는 아닙니다. 다른 요인들도 같이 영향을 미치겠지요.

그런데 과연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될 거냐 하는 그런 말씀은 제 생각에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배당액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배당에 대한 세금이 혜택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거고 배당이 늘어나서 주식 투자로부터 소액 투자자들이나 전체 투자자들이 받는 현금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개선되면 그게 당연히 주가에 반영됩니다. 그거는 물어보기가 조금 그런 내용이지요. 왜냐하면 그거는 교과서적인 내용이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효과가 의심스럽다 하는 말씀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실제로 많은 기업들에서 대주주나 주요 배당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대주주에 대한 혜택을 주지 않으면 대주주들은 배당 안 받고 그냥 급여로 갖고 갑니다. 그게 우리나라 전체 상장 대기업들이 왜곡된 형태를 나타나게 하는 이유 중의 하나이기도 한데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해서 그런데 L 그룹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여러 계열사에서 급여를 많이 갖고 가세요.

그런데 실은 그거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다 보면 이런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 때문에 아예 주요 그룹의 재무 담당 실무자들이 배당을 늘리는 것 자체를 검토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지금 기업에 있는 솔직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분명히 이제는 그런 제약이 없어지고 각 기업들이 배당을 늘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아주 자유롭게 검토해서 가급적…… 왜냐하면 회사 주가가 올라가야 자본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는 직접 조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캐파나 이런 것도 늘어나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회사의 주가를 높이기 위해서 배당을 늘려야 된다는 것들은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고.

그다음에 저도, 아까 이소영 위원님 얘기했지만 대주주가 주식 양도와 그다음에 배당과 관련된 세율 차이 이런 거는 주식 양도의 사례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겠냐라고 하지만 이것은 저는 전혀…… 그래서 배당을 안 하고 뒤로 자꾸 유보하려

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양도하거든요, 이것. 왜냐하면 대주주가 언젠가는 양도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업 거버넌스가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배당하지 말고 내부에 유보시켜 놓는 게 본인한테는 분명히 이익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배당성향과 배당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정부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데 이 배당성향, 배당소득금액은…… 지금 글로벌 경영환경이 정말 불확실해지고 그래서 기업들의 손익변동성이 되게 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측하기 힘든 대개 아주 거액의 투자 같은 것들이 갑자기 필요한 환경으로 점점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당과 관련해서 배당성향을 유지하느냐 배당금액을 전년보다 더 늘려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 지금 실제로 기업이 현실에서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나 또 손익의 변동성 같은 이런 측면에서 일관성 있게 계속 유지하는 것들이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배당성향에 관한 조건이나 또 배당금액에 대한 증가 이런 조건들을 넣게 되면 이런 것들은 기업 경영의 현실을 되게 도외시한 것이다, 진짜 기업이 지금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잘 모르고 우리가 여기에서 그냥 지표를 만들어서 탁상에서 공론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아까 세수 감소 이야기했는데요. 이것은 배당을 많이 늘리게 되면 전체적으로 세수가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좀 더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가 되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그리고 아까 2000만 원 이하 9%가 외국인 37% 비중이라고 했는데 실장님, 차관님, 이 37% 중에 연간 배당소득 2000만 원 이하 받는 그런 개인 외국인들이 많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외국인들이 저희가 그렇게 파악은 안 되지요.

○**최은석 위원** 아니, 아까 차관님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 배당소득 중에 외국인들이 37% 갖고 간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게 2000만 원 이하 세율을 14%에서 9%로 낮추면 외국인들이 혜택을 많이 볼 거다 하는 이런 논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외국인 개인들이 들어와서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 되는 그런 비중이 되게 높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외국인 대부분은 기관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외국인은 무조건 다 원천징수만 하고 끝납니다. 2000만 원이냐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외국인은.

○**최은석 위원** 그러니까 원천징수를 하는데 아까 차관님이 14%를 9%로 떨어뜨리는 것에 대한 문제점 얘기하실 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외국인은 위 14% 단일입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그것을 아까 얘기하시면서 외국인들만 혜택을 본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그러면 제가 잘못 들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종합과세에 그 일단이 없습니다. 2000만 원 이하 구분이 없이 전부 다 원천징수로 끝나기 때문에 다 14% 받고 그것을 9로 내리면 전원이 다 9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외국인만 혜택을 본다는 것이 아니고요 낮추면

당연히 내국인도 보지만 외국인도 많은 혜택을 본다 이런……

○최은석 위원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그러면 조세협약과 관계없이 무조건 우리가 9%로 낮추면 다 9% 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중에서 어떤 조세조약 맺은 개인이 해외에서 다시 특례세율 신청한다든지 이렇게 낮아질 수는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더 낮을 수는 있겠습니다, 조약을 해서.

○최은석 위원 그래요? 9%로 낮추면 모든 외국인들이 다 9%로 원천징수하고 끝인가요? 그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 이런 것들, 상호 조세조약 이런 것들 영향을 안 미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일단은 9%를 하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자기 특례세율 적용받겠다 그러면 나중에 다시 자국 내 세무관서에 가 가지고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을 해서 추가적으로 더 받아 갈 수는 있겠지요, 환급을.

○최은석 위원 추가적으로 더 받아 간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원래 원천징수된 것을 다시 조금 더 환급을 받아 갈 수는 있겠지요.

○최은석 위원 이것은 어쨌든 저도 당장 계산이 잘 안 되기는 한데……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 윤수현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금융세제과장입니다.

외국인은 5조를 받든 10조를 받든 무조건 원천징수세율로 받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9%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9%로 하게 되면 그것보다 더 높은 세율로 될 가능성은 없고 더 낮은 세율로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신청해서 더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게 말하자면 조세협약에 서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고?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장 윤수현 조세협약에는 보통 최고세율이 나와 있습니다. 보통 14, 15 되어 있는데요. 그것보다 낮을 경우에는 더 낮은 것 적용받고 14보다 높을 때는 14를 적용받는 겁니다.

○최은석 위원 그래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펀드에 대한 그것 제가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러면 간접투자에 대한 투자자들에 대해서는 혜택이 배제돼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혜택이 배제된다는 말씀이 아니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리츠를 포함한 이분들은 왜 90% 배당을 하게 했냐 하면 90% 이상 배당을 하면 이것은 하나의 껍데기다. 투자를 전달하기 위한 하나의 도판일 뿐이고, 그러니까 법인세 과세를 안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런 것이지 저희가 무슨…… 그분들이 사실 90% 이상 배당 안 해도 됩니다. 안 하면 다만 법인세를 부과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이것 어떤 다른 그런 게 있는 건 아닙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를 도입했을 때 지금 간접투자한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건 없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불이익을 받는다는 말씀이……

○소위원장 박수영 펀드를 포함하지 않으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수요가 떨어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아까 안도걸 위원님도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좀 더 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왜 자꾸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미 법인세의 혜택을 보기 위해서 그분들은 90% 이상 배당을 선택했거든요. 저희가 여기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줬을 때 추가적으로 배당이 늘어나는 부분을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한 가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조세소위에서 계속 논의할 겁니다. 어떤 펀드가 들어와서 이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자라고 하면 저희들이 보통 2000만 원 이하자에 대해서는 9%나 14% 분리과세를 많이 줍니다. 그러면 9% 분리과세 받으면 저희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더 유리하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 주자는 이야기거든요. 즉 이 말은 뭐냐 하면 저희가 지금 하는 건 어떤 상장법인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거지만 이 상품에 대해서는 뭐냐 하면 투자자에 대한 혜택입니다. 그러면 각 상품을 논의하실 때 대체로 보면 고소득자가 투자한 것까지 혜택을 줘야 되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 고소득자들 배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상품 만들 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건드린다는 것은 모든 상품의 구조를 다 바꾸자는 취지입니다. 그리되면 저희가 볼 때 지금 가늠은 안 되지만 부동산 PF, SPC, 사모펀드, 민법상 조합, 모든 펀드들이 똑같은 논리로 의미 있는 정당성이 있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할지 저희들은 한번 이 부분을 굉장히 깊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소영 위원 연관된 것이라서……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최은석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국내 대기업을 CEO를 지내셨던 분이기에 때문에 최은석 위원님께서 현실 기업환경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이소영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안도걸 위원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ETF에 대해서 이 제도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 제도로 인해서 ETF 투자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ETF는 사실 그릇 같은 건데, 거기에 삼성전자도 있을 거고 현대중공업도 있을 거고 그런데 그 담긴 기업들의 배당이 이 제도로 인해서 각각의 기업들의 배당이 늘어나면 ETF의 배당 자체가 늘어나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이크를 잡은 김에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소위원장 박수영 하시지요.

○이소영 위원 128페이지에 보면 박성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 노력상에 당기준이익 적자기업도 포함을 하자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128페이지 상단에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일단 여쭙보고 싶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는 적자기업의 무리한 배당까지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입장을 사전에 물어봤을 때 당기순이익이 적자인데 배당을 하면 오히려 자본결손이나 이런 것의 위험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것을 유도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박성훈 의원님 이 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사실 그렇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배당이라는 게 어차피 자본을 털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익잉여금에서 준비금을 뺀 배당 가능 이익을 최대 한도로만 해서 배당을 할 수 있는 거고 한 해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번 올해에 내가 당기순이익이 적자라 하더라도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돈이 많이 남았는데 그걸 이익잉여금으로 쌓아 놓고 있었으면 그것을 올해 배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주당 100원씩을 배당하고 있었는데 내가 올해 잠깐 일시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적자라고 해서 주주들한테 배당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신뢰나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 배당을 한 기업이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그게 진짜 노력상이고 사실은 수학적으로는 마이너스거나 당기순이익이 없는데 배당을 한다고 하면 배당성향은 무한대인 거지요. 그러면 배당성향이 25% 이상만 돼도 조금 늘리거나 또는 40%만 돼도 혜택을 주는데 배당성향이 무한대인 기업에 대해서는 ‘야, 너가 이렇게 적자니까 너는 혜택을 안 줄 거야’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법안을 발의할 때 이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당기순이익 적자기업에 대해서도…… 꼭 굳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법에 일일이 규정할 필요는 없겠는데, 정부안에서 어차피 마지막에 구체적인 내용, 적용 대상 요건, 해당 기업의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꼭 법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전향적으로 당기순이익이 없거나 적자기업인데도 배당 가능 이익이 있어서 배당한 기업에 대해서는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우리 2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음은 발의하신 안도결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다.

○**안도결 위원** 저는 두 가지만 다시 정부 당국께 할게요.

이번에 우리가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기업 투자 부분에 자금이 몰리도록 하자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특히나 거기에서도 우리 산업을 지키는 제조업체에 많은 자금들이 들어가고 또 그 자금들이 가급적이면 오래 잠기는 투자,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대규모 투자, 지금 투자 규모들이 굉장히 커지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우리 자본시장을 통해서 뒷받침을 하자라는 취지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의 효과는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 글로벌 제조업체 있잖아요. 간판기업들, 제조업체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느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배당성향 커트라인을 20% 낮춘 이유가 제가 쪽 들여다보니까 배당성향 20이나 25 내에 집중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제조업체들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지금 살아남기 위해서 설비투자, R&D 투자 하다 보니까 여력이 거기까지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노력을 해서 배당을 조금 높인다는, 주는 노력을 하는 실적에 비례해 가지고 이것은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무슨 20% 등등 하는데 통계는 저하고 조금 다르게 갖고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기로는 여하튼 정부안 기준으로 하면 코

스피 상장기업의 한 17%예요. 그런데 제가 제시한 그 안으로 하면 한 20% 되거든요. 한 60여 개의 업체들 그리고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혜택을 본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감안을 좀 해 주시고.

리츠 관련해 가지고 하는데 90% 배당하는 것은 성격이 그런 것 아닙니까? 도관적이기 때문에 90 아니라 100도 될 수도 있는 거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일반투자자들이 리츠에다 할 거냐, 간접투자를 할 거냐 아니면 직접투자를 할 거냐 그것 아닙니까? 이번에 그것에 대한 세제개편이 바뀔으로써 조세 중립적이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간접투자에는 불이익을 주고 직접투자에는 이익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지금 정부의 판단입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특히나 공익적 목적이 큰 리츠라든가 인프라펀드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익적 입장에서 일반 채무적 투자자들이 돈 벌기 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간접투자 비이클에 대해서는 불이익은 받지 않도록, 기존의 제도개선 이전과 같은 혜택은 갈 수 있도록 똑같이 키 높이는 맞춰 달라 이걸 거지요. 그런 취지니까 그걸 잘 이해하시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마지막으로 정일영 위원님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진도를 빼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오늘 오전에 중요한 사안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게 발의하신 의원님들께는 죄송한데 저는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위원님들 중심으로 진행하시는 것 같아서 다소 유감입니다. 왜냐하면 이것 굉장히 중요한 정책인데 발의한 분들은 이걸 찬성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거나 반대하는 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소위에서는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돼요.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도 의견이 다 달라요.

○정일영 위원 아니, 그렇지만 같이 발의한 분들은 일단 이 제도 자체를 찬성하는 분들 이니까 발의한 거지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차관님, 지금 전 국민 중에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몇 %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2000만 명 정도가 투자자라고 알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상위 10% 되는 분들이 보니까 전 국민의 3%예요, 3%. 그러니까 97%의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이게 효과가 진짜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날지…… 세수 감소가 아니라고, 중대가 날지 이런 건 물론이지만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꼭 세제 이것만 가지고 딱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배당이 늘어난다 그것만 볼 게 아니고 정부에서는 종합적으로 97%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예를 들어서 정기예금, 정기적금을 해요. 그러면 정기예금, 적금한 그 돈은 기업으로 안 갑니까? 주식 안 하고 일반예금 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부분이 2000만 원이 넘으면 그분들은 과세를 많이 받고 주식을 하면서 그만큼 생기면 과세를 적게 받고, 그러면 그 국민들의 불만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고소득자, 부자감세 이런 논리도 어떻게 피해 나갈 거냐는 얘가지요.

또 여기 보면 지니계수, 자산불평등도도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면 결국 고소득자 상위 10% 안에 드는 분들이 더 투자를, 주식을 더 많이 사겠지요. 그러면 그분들의 비중이, 자산·소득의 정도가 더 올라가고 순자산불평등도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잖아요.

정부는 종합적으로 보아서 정확하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제안을, 제시를 하셔야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이 이 중요한 제도를 도입하는데 꼭 그냥 눈 감고 코끼리 더듬기 같아요. 정부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책효과가 진짜 배당도 증가하고 투자가 또 기업으로 들어가고 밸류업 효과도 나타나서 자본시장 활성화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아까 미국은 주식시장이 완전히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미국 국민들이 주식시장을 생각하는 것하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준비가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소영 위원님이 혼자서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시는데 정부에서 이 법안을 낼 정도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 있게……

정책이라는 게, 이 중요한 정책을 이런 기대가 있다, 이런 취지가 있다, 이런 막연한 것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세밀하게, 정교하게 정책을 만들어서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고 이런 부작용이 있지만 이런 부작용은 이런 제도를 통해서 최소화하겠다.

아까 김영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제조업 쇠퇴, 역차별 그것도 상당히 우려가 돼요. 아까 이소영 위원님이 그에 대한 다른 말씀도 하셨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쪽 보면 제조업보다는 금융 쪽으로 고배당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대한 투자가 더 많아지고, 그러면 우리나라 지금 한미 관세협상도 그렇고 마스가도 그렇고 한국이 그래도 좀 잘 발전한 이유가 제조업 아닙니까, 제조업 기술? 그런데 이쪽에 마이너스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당이 높아진다는 게 보면 그동안 저도 기업 그런 것도 해 봤지만 결국은 사장·대표이사·이사진 임기 3년, 단기 성과 내는 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요.

기업에 굉장히 쌓아 놓고서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자기가 재임하는 동안 성과를 많이 내, 배당을 많이 해, 이사들이 주총에 가서 그런 성과를 홍보해, 이쪽에 많이 포커싱이 된다고요. 그게 꼭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 이런 제도가 그런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더 나아갈 수도 있다 이런 걸 우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도 있고 플러스 면도 있는데 아까 양도, 배당 그 얘기도 하시고 그랬지만 이왕 정책을 추진하면 정부는, 기재부는 자신 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소신을 가지고 제가 얘기한 정책효과, 세수 감소, 제조업 문제 등등, 아까 리츠도 있고 자료를 좀 주세요, 내일이라도. 그리고 상세하게 설계를 해서 자신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저는 정부 측의 이런 설명 가지고는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많이 우려가 되고 이 자료만 해도 전문위원님이 만드셨나? 122쪽, 배당소득 분위별 신고 현황 이것도 맞는 데이터예요? 분위별로 보면 숫자가 거의 똑같아요, 174만 6495명. 이게 맞아요?

○전문위원 정지은 이게 10% 비율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통계청 자료로 이렇게……

○정일영 위원 어쨌든 그런데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설명자료도 주시고 데이터도 좀 주십시오. 너무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일단 정태호 간사님하고 이소영 위원님이…… 이소영 위원님은 예결위 간사라서 여기 자주 못 오시기 때문에 오신 김에 말씀 다 하시도록, 대신에 짧게 해 주십시오. 우리 2시간 이상 얘기했습니다.

정태호 간사님 먼저 하십시오.

○**정태호 위원** 한 가지만 질문인데요.

122페이지인데 국세청 자료에 의하면 2023년 배당소득 분위별 현황에서 배당소득 상위 10%가 전체 배당소득의 91.23%를 점유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상위 10%에 대한 세율을 낮춰 줌으로 인해서 부자감세라는 지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정부 입장은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이 취지가, 배당을 의사결정하는 사람이 결국 대주주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 유인을 줘서 추가적으로 배당이 늘어나면 결과적으로는 이 배당을 통해서, 아까 제가 투자자들이 2000만 명 그랬는데 1400만 명 정도로 확인됐습니다. 1400만 명 투자자들한테 결국에는 자산 형성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식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또 유상증자가 늘어나고 기업이 자금 조달을 더 원활히 할 수 있고 그러면 그게 또 기업들의 투자 여력이 될 거다라고 저희가 생각하기 때문에 선순환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소영 위원님, 마지막으로 한마디하시겠습니다.

○**이소영 위원** 일단 여러 분들 말씀 중에 한 가지 공통적 우려를 말씀 주신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참고하실 만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배당을 자꾸 촉진하면 제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제조업 강국으로 가는 데 애로가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제조업 비중이 높은 대만이나 중국도 우리나라보다 배당성향이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미국만 볼 것이 아니라 사실 일본이나 독일처럼 제조업 강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도 우리보다 배당성향이 높고 일본은 우리보다 배당성향이 10%p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도 수준은 제조업이나 다른 업이나 이런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아까 차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물가상승률 정도 수준조차도 배당을 늘리고 있지 않은 기업의 현실인 것이고 여기에서 배당 촉진을 일부 더 한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에 어떤 산업적 이슈를 일으킬 정도의 수준이 아니다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정부안은 지금 3년 일몰로 되어 있고요, 조특법으로. 지금 일곱 분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의원안은 계속 적용이 되는 소득세법으로 되어 있는데 조특법이든 소득세법이든 일몰기한을 정하는 건 재량적인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특법에도 일몰기한이 없는 것들도 있다고 전문위원님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런데 저는 이 제도가 일몰이 아니라 개정하는 방식으로 종료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소득세법 그리고 계속 적용으로 법안을 냈는데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인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3년은 사실, 아무리 일몰기한을 정한다고 하더라도 3년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 제도의 분위기를 보고 상위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을 하위 기업들이 따라가고 이렇게 하려면 좀 여유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제도를 시작하자마자 끝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26년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새 정부가 야심차게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건데 적어도 이재명 정부의 임기인 2030년까지는, 5년 정도는 적어도 유지가 돼야 그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금융과 관련된 세제를 논의할 때 이것의 효과성을 제대로 보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조특법 3년 일몰로 하는 것은 너무나 짧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긴기간으로도 고려할 수 있는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거 포함해서 지금 바로 답변 주실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님들 간의 간극도 컸고 정부안과의 차이도 상당히 컸었습니다마는 저희가 2시간 이상 논의하면서 약간의 조정할 수 있는 범위는 보이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을 다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재논의하도록 결정을 하도록……

○이소영 위원 3년 얘기만 답변을 좀 들으면 안 될까요?

○소위원장 박수영 답이 되겠습니까?

○이소영 위원 검토하신 게 있으신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요.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해서 좀 더 유연한 입장을 만들어 와서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재논의하는 걸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시간 15분이 지났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딱 10분만 정회했다가 11시 25분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별권 2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별권 2권입니다.

주요내용 140페이지부터이고요. 이것은 안건이 2건이어서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의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것이고 박수민 의원님 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미환류소득 산정 시 고려하는 환류대상에 내국인에게 지급된 배당을 추가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금의 합계액을 추가하고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의 비율 구간을 상향 조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배당 장려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가 등 경제 선순환 효과라든지 국내 기업가치 저평가 해소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배당을 통한 환류가 기존의 투자·임금증

가·상생협력을 통한 환류를 구축할 우려 등이 제시되고 있으므로 이런 부분들 같이 감안 하셔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143페이지의 개별 안건을 말씀드리면 박수민 의원님 안은 환류대상을 내국인에게 지급 된 배당금으로 한정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차등배당이 좀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부안은 144페이지입니다.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면서 환류대상 기업소득 비율을 상향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비율을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을 고려하고 관련된 내용이 관련 기업집단에 대한 침익적인 조치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로 상향 규정하는 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밖의 조 제목 변경과 관련, 인용 조문과 관련해서는 누락 사항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건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건입니다.

3년 연장안과 5년 연장안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소득을 환류하도록 지속적으로 장려하는 효과가 기대되는 반면 투자·임금 증가·상생협력 효과 등에 대해서 상반된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는 점 고려하셔서 심사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는 기업의 배당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아까 전에 논의한 배당소득 분리과세와 함께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즉 기업소득 중에서 일정한 비율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 추가 과세하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에 배당을 추가해서 배당을 더 많이 하면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혜택을 보고 배당을 적게 하면 이 제도를 통해서 디스인센티브를 받도록 하자는 취지고요. 대신에 그렇게 하면 앞부분에 있는 차감하는 소득 항목 자체를 예전보다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기업소득 환류의 비율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수민 의원안에서는 내국인에 대한 배당만 하고 상향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상향하지 않으면 오히려 산식이 굉장히 안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국인만 하는 것은 현재 저희가 볼 때 외국인 주주 비율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 간에 과세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제도는 현재로서는 도입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은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내국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박수민 의원님 안에 대한……

○소위원장 박수영 박수민 의원안에 60~80 그대로 유지하자는 게 있고 정부안은 또 올리자는 게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정부는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배당을 추가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원래 모수도 올려야지 이게 비례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신가요?

(「정부안에 찬성」 하는 위원 있음)

박수민 의원님이 원래 투자의 전문가 아닌가요, 우리 위원회 위원은 아닙니다마는. 내국인에게 하자고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닌가요? 외국인에게까지 상생 환류 투자, 투자한 그 세를 면제해 준다 또는 환류해 준다는, 배당해 준다는 게 좀 맞지 않다고 보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정부 측에서 그건 분리하는 게 불가능한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그러면 주주구성에 따라 기업별로 이 제도 자체가 다르게 작동될 겁니다. 외국인 주주가 많은 데는 아무리 배당해도 여기서 일정 부분의 디스인센티브를 받게 될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은 전반적인 기업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제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내·외국인 구분을 하는 게, 적용하기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으로 잠정 합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8권입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벤처기업 출자자의 법인세 및 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강제징수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3년 안과 5년 연장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은 지금 3년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3년 연장……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벤처투자기업 도와드려야 되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으로 잠정 합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 정지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간 확대 및 신청요건 완화와 관련된 안건이고 2건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의 적용기간을 2025년 말 이전에 폐업한 후 2028년 말까지 사업개시 또는 취업으로 재기한 경우까지로 1년간 적용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특례적용 신청기한도 2029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영세개인사업자의 재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연장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부분입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부분입니다.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 대상에 3개월 이상 특수형태 근로에 종사하며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추가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징수특례의 기준 체납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에 기반한 재기를 인정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측면이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기준금액 인상 부분은 현실을 반영한 기준 조정 조치로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2020년 코로나 때 도입되고 1년씩 연장해 왔던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 특례제도 자체를 1년 연장하는 것을 먼저 제안을 드리고요.

이번에 추가로 제도를 좀 바꾸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제도의 징수특례를 받으려면 재기를 해야 됩니다.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요건에 특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형태 근로자로서 3개월 이상 일하는 경우에도 재기라고 보고 이분들에게 징수특례를 주자는 취지고요.

채납 기준이 원래 5000만 원으로 처음에 도입됐는데 그 당시에 전체 정리보류액 중에 5000만 원 이하가 한 87%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준으로 다시 한번 이것을 뽑아 보니 한 8000만 원까지가 86% 정도 되기 때문에 그간의 물가 상승까지 감안해서 5000만 원의 기준을 80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까지 함께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특고 포함한 건 아주 잘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갈 텐데요.

그사이에 박성훈 위원님이 의사진행발언 있으시다고 합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당직을 맡다 보니까 오전에 당 주요 일정 때문에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발언할 기회를 놓쳤는데요.

그 내용은 이 자료에 있으니까 속기록에만 추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문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계형채납자의 채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앞에 나와 있는 징수특례 부분과 연장선으로 같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내용은 17페이지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채납액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채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리고 징수가 곤란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채납액 등에 대해서 소멸대상채납액에 5000만 원 한도로 납부의무를 소멸해 주는 내용의 소멸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재산·소득 금액이 없어 세금 납부가 곤란한 채납자들에 대한

납부의무를 소멸해 주는 것으로 경제적 재화를 지원하고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다만 현재 징수특례를 통해서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고 있고 체납국세를 장기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또 동일 체납자가 대상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소멸특례를 별도로 추가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관련해서 지금 이 제도는 과거에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그리고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징수특례제도와 소멸특례제도가 같이 중복적으로 적용되지 않게끔 관련 규정을 도입하고 했었다는 점을 참고하여서 심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으로 사업에 실패한 영세 사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서 제안된 의원님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인 자구나 이런 요건은 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기본적으로 지금 소멸특례라는 게 말 그대로 체납액을 탕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앞에서, 납부하는 게 쉽지 않은 영세 개인사업자들에 대해서 징수특례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이걸 아예 소멸시키고 탕감을 한다고 했을 때, 결국 이런 이슈 나올 때마다 늘 나오는 거지만 성실하게 갚고 있는 국민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효과성과 관련해서도, 물론 반짝 이런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2018년에서 2019년 사이에도 소멸특례를 3000만 원 한도로 시행한 적이 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 그런데 그때 이후로도 사실 계속해서 체납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작년 기준으로 체납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분들이 105만 명이 넘고 체납액이 총 9조 4322억에 달하는데, 심사자료 21페이지에 있습니다.

물론 이 전액이 다 탕감되지는 않겠지요. 여러 조건들이 있겠지만 이 정도 막대한 체납액 탕감을 하는 게 과연 좋은 선례일까, 저는 여기에 대해서 선뜻 찬성하기가 어렵거든요. 정부 측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멸하려는 건 재산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징수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재산이 없다고 판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분들은 더 끈다고 해서 실제로 추가적인 세금을 거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도입되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19년에도 한번 일시적으로 도입했다가 다시 없어졌는데 그 이후에, 코로나를 겪고 난 그 이후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한번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저도 이 부분이 현재 징수특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체납 대상자를 가지고 중복해서 반복적으로 특례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제도적 취지나 필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지만 사실상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온 많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제도로 생각이 되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게 학습효과가 발생해서 앞으로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할 많은 영세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게도 내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좋겠다는 그런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게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악의 없는 채무자를 구분한다는 것 이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채무의 늪에 빠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빚을 지게 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게,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볼 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세기본법의 대원칙을 없애는, 소멸시효라고 하는 이 원칙을 건드리는 부분은 징수특례와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만일에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복된다고 하면 소멸시효와 같은 이런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대원칙이 허물어지게 된다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 지금 국세 체납이 걸려 있으면 다른 사업 영위를, 또 재기를 하거나 할 때 이게 금융기관에 다 걸려 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그래서 국세 체납부터 먼저 정리하고 오라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그런데 지난 코로나 시기 이후부터 우리 소상공인들, 특히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랬다면 경제적으로 재기했을 때의 경제적 효과와, 취업하거나 사업을 다시 영위할 때의 경제적 효과와 아니면 계속 경제활동인구에서 빠져 있는 효과와 그걸 비교형량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해외 선진국들은, 지금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국세를 체납했을 때 이런 특례들을 주는 그런 제도들이 어때요? 혹시 알아본 게 있습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과장님이나 주무관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영환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 재기 과정에서, 사실은 금융 채무도 그런데 금융 채무 같은 경우는 일반 민간끼리 사계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탕감을 계속 시키면서 재기를 돕잖아요. 그러면 국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누가……

○소위원장 박수영 담당 과장님이 자료 갖고 계시면 담당 과장님이나 뒤에 계신 분들

이 일단……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해외 사례는 찾아보도록 하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이분이 경제활동을 계속 못 하고 있으면 결국에 국가는 복지제도로 이분들을 도와드릴 수밖에 없어서 재정이 지출됩니다.

대신 이분들이 어차피 현재 재산에서 갚을 방법이 없으니 이걸 털고 재기를 해서 경제 활동을 하면 오히려 저희한테는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것도 되고 근로소득이나 뭔가 소득을 일으켜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저희 재정에도 일정, 크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납부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볼 때 선순환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환 위원** 그때 금융 채무 부실채권 정리하는 예산이 얼마였었지요? 민간하고 4000억……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4000억을 일대일로 매칭……

○**김영환 위원** 그때 103만 7000명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최저임금으로 계산해 보니까 그분들이 다 경제활동으로 들어오면 한 27조 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그때 계산을, 27조~28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105만 명 이분들인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게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게 효과를 발휘해야 돼요. 왜냐하면 국세 체납이 걸려 있으면 다른 걸 못 하게 돼 있어요, 금융 채무를 탕감하더라도. 저는 이게 같이 연동돼 있는 정책적 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재부의 마지막 답변 듣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훈 위원님이랑 천하람 위원님도 이렇게 너무 무분별하게 하면 기존의 선의의 납세자들한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그런 부분을 고민 안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제도를 설계할 때,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 모든 세목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업 과정에서 자영업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세목, 보통 종합소득세라든지 부가가치세로 그 세목을 한정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선의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는 없지만 법에서 최소한의 요건으로서 과거 5년 이내 조세범으로 처벌받았거나 또 진행 중인 어떤 재판이 있거나 또는 범칙조사가 있으면 이런 분들은 제외되도록 저희가 요건을 넣었습니다. 그런 부분 까지도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기상 위원님이 제일 먼저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최기상 위원** 이 제도가 없어도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또 없어지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최기상 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없어서 받는 불이익이, 가령 이렇게 체납 상태면 어디 취업해서 월급 받는 것도 안 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보통은 그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뭔가 체납, 완납 이런 걸 내라 또는 사업을 하실 경우에……

○**최기상 위원** 저는 직접 사업을 하는 건 좀 다른 맥락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을 하다가 세금을 못 낸 사람을 바로 탕감을 시켜 주고 다른 사업을 하게 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일단 말씀을 여쭙보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은 자기 이름으로 새로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것 말고 다른 것도 못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세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다른 사항의 제도까지 정확히 파악은 못 했지만.....

○**소위원장 박수영** 취업을 말씀하시는 거지, 자기 사업이 아니라.

○**최기상 위원** 취업이나 이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을 아예 못 하게 되는 건 아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마 원천적으로 제약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취업 고용주가 그런 요건을 넣는다고 그러면.....

○**최기상 위원** 그런 경우가 잘 있나 싶습니다만, 일단 그래서 이게 본인 이름으로 뭔가 사업이나 개인사업자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거라고, 그게 중심이라고 한다면 국세를 체납한 분이 한 5년 정도는 그 정도 불이익은 감수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은 안도걸 위원님이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안도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정부가 신중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하튼 도덕적 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철저히 막아야 되는데, 지금 사실상 여기의 대상이 되는 요건이 무지 까다로운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무재산자여야 된다, 그리고 강제징수 배분액이 체납액보다 적어야 되고 그리고 총 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도 미달해야 된다, 그리고 폐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상 이분 같은 경우는 도저히 경제적인 회생 능력이 지금 없는 상태가 아니냐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납세 여력이 있는데 이걸 회피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도저히 납세를 감당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다만 재기를 해서 다시 일어나겠다는 의지를 또 확인을 다 하더라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러한 도덕적 해이가 실제 발생할 여지는 지금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걸 정말 도덕적 해이가 끼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현실 상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 실제로 납부하지 못할 세금을 탕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렵게 체납 세금을 납부한 분들의 그 체납 기록이 3년 동안 그대로 남아 가지고 계속 경제활동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금융위하고도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겠지만 신용평가사들이 체납 기록을 3년 동안 유지하는 이걸 폐지하는 걸 기재부차관님께서 조금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그 두 가지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재산에 대한 조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을 굉장히 줄여 왔다는 건 맞는 말씀이고요.

추가로 하나 더 하면 사후에, 실태조사 당시에 재산이 없다고 봤는데 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다면 이 소멸을 다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사후관리 요건도 같이 추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록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은 정태호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 제가 발의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저는 다른 위원

님들의 지적사항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부도 그 부분을 감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작년에 소상공인 폐업이 100만 건을 넘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와 그 이후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소상공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금 체납으로 인해서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도와드릴 실익이, 그 상태로 두는 게 국가적·경제적으로 실익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제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게 이분들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했던 건 뭐냐 하면 코로나 시기에 영업을 못 하게 했습니다, 정부가, 국가가. 그래서 엄청 타격을 입었어요. 그런데 정부가 그때 해 준 건 뭐냐 하면 돈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장사가 잘될 줄 알았는데 더 안 된 거예요. 그 피해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물론 성실하게 사업을 해 가지고 세금을 납부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그러나 그 조건에서 어쩔 수 없이 이 상태에 빠진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한 특수한 상황을 경험하고 그런 조건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는 걸 감안해 주신다면 이건 일반적인 모럴해저드나 그런 문제로 접근할 상황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도 소상공인들 영업 제한하고 나서 정부가 돈 다 갚아 줬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냥 돈 대출해 주고 정부가 일 다한 것처럼 했는데 저는 그게 정의롭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천하람 위원님 거수하셨습니다.

○천하람 위원 추가로 여쭙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아까 무재산 등으로 징수 가능성이 없다는 걸 판단할 때, 월급이 있으면 징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분이 월급을 어디서 받고 있으면 징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마 국세징수법에 월급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압류하지 못하고 그냥 체납 있는……

○천하람 위원 압류 금지 채권 범위가 있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 부분이 있는데요.

○천하람 위원 그러면 그걸 약간 넘어서는 월급이 있다고 그러면 징수 가능성이 있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렇지요.

○천하람 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국민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도둑놈이 많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게, 방금 최기상 위원님도 언급하셨지만 어쨌든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하셔 가지고 월급이든 아니면 특고 해서 나오는, 배달을 열심히 하셔서 일정 부분 소득을 얻으신다 그러면 그런 분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서 혜택을 못 받고 요즘 동네에 보면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 재산도 타인 명의로 해 두시고 월급도 현금 같은 거 받으면서 실제 찍히는 소득은 없게끔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또 이런 제도의 혜택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물론 간사님 말씀처럼 이게 일반적인 모럴해저드가 아니더라도 막상 현실에서

는 저렇게, 예를 들면 현금으로 소득 챙기고 이런 사람은 이런 것 혜택을 받아서 감면받고 누구는 성실하게 이런 모래주머니를 달고도 취업을 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수익을 얻고 나라에 조금이라도 세금 갚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고 그런 케이스들이 중간중간에 띄엄띄엄만 보여도 우리 국세 행정에 대한 신뢰가 저는 아작 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특별히 답변하실 거 없으시면 정일영 위원님 질의……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조세총괄정책관입니다.

자료 15페이지에 보시면 이 특례와 관련해서 제1호를 보시면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어디 취직했는지 이런 걸 실태조사를 좀 엄격하게 할 생각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해 가지고 조세 회피가 있는 건지 좀 심층적으로 저희들이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무재산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지 이걸 살펴서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천하람 위원님 질의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은 탕감이 안 되고, 소득이 있으니까. 소득이 없는 사람 또는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사람은 탕감을 받는데 이게 맞냐 이 질문이었거든요. 국장님 답변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획재정부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어디 취직을 해서 뭘 하고 있다 그러면 실태조사를 통해 가지고, 국세청이 가서 실태조사를 해서 면접도 하고 실태조사를 해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소득이 있다고 하면 소멸대상이 아닌 거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천하람 위원님 질의였잖아요. 차관님이 답변하셔야 되겠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결국 실태조사를 나가면 위원님 걱정하는 것처럼 이거를 빼돌려 있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한다면지 그런 것도 같이 최대한 파악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하람 위원 아니, 그런데 그래도 근본적으로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혜택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압류 금지 범위가 높지 않잖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분은 혜택을 못 받는 건데 열심히 재기하려고 하는 분을 빼는 제도가 맞는 겁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영환 위원 데이터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이게 한 4년 정도 시행했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그다음에 또 2018년부터 19년, 그러니까 두 번 시행을 했었는데 그때 최초에는, 4년 시행할 때는 제가 보니까 소멸대상채납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18년·19년에는 좀 많아졌는데 그 대상 인원이 얼마인지하고 이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게 있으신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그때 따로 이후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것은 없지만 당시의 실적은 있습니다. 아까 과거 말씀하신 10년도부터 14년도부터 했었을 때는……

○**김영환 위원** 한 8000명, 7000명?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지원 규모가 5800명 정도 됐고요. 그때 면제됐던 규모는 154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18·19년에 했었을 때는 지원 대상 인원은 한 1만 6000명쯤 됐고요. 그다음에 그때 세액으로는 약 2200억쯤 됐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저는 어쨌든 생계형채납자, 영세개인사업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등 관련해서 이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코로나 때 특히 어려웠고 그 뒤로도 경제가 제대로 회복이 안 되고 민생이 이렇게 어려운데 그때 지원해 준 것도 있고 등등.

그런데 결과적으로 저는 궁극적으로 이런 질문도 생겨요. 가난이라는 게 또 이분들의 어려움이라는 게 과연 이분들만의 책임이냐? 정부와 사회와 환경의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어려운 분들을 좀 거기서 벗어나서 제대로 생활할 수 있고 또 자영업이든 뭐 또 제대로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만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된다. 특히나 요즘 경제가 계속 어려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이런 범조항, 이런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모든 제도가,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사실 완벽한 게 없습니다. 100% 완벽한 제도가 어디 있겠어요. 정책도 항상 구멍도 있고 빈틈도 있고 다소 부작용도 있고 그런데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세밀하게 설계하고 정책을 만드는 게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정책 취지가 맞으면 거기에 맞게, 이와 같은 것은 전에 해 본 그런 유사한 경험도 있고 하니까.

여기 개정안에 보면 상당히 실태조사에 관해서도 많은 조문들이 또 개정안, 수정안, 수정의견들이 있고 하니까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시행령에서 막을 수 있도록 시행령, 대통령령 정한다고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법의 개정, 이런 제도의 도입에,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 제가 찬성이고 부작용,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조문을 좀 더 다듬고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넣고 정부에서 정교하게 정책을 좀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우리가 두 번 시행했잖아요. 첫 번째 혜택 받은 사람이 두 번째 또 받고 이번에 또 받고 이런 현상이 있는지는 자료가 없으시지요? 혹시 있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게 도덕적 해이, 모럴해저드의 전형이 되는 것인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마 요건 자체에서 어떤 시점 이전에 생긴 채납에 대해서 걸렸기 때문에 그걸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받으려면 새로운 시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려울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25년 1월 이전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다시 또 해서, 장사를 해서 또 채납이 돼서 또 되는 건, 미래형 채납은 그건 작동이 안 되는, 하여튼 요건 자체가 과거……

○**소위원장 박수영** 그게 아니라 과거에 두 번 했잖아요, 우리가. 탕감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 탕감받은 사람이 두 번째 또 받고 이번에 또 받고 이런 거는 아니냐 이 말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게 못 하게 되어……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조문?

○**정일영 위원** 99조의10 6호에 있네.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하세요.

○**소위원장 박수영** 6호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는 자’, 그렇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상당한 장치는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만 여야 위원님들 또 최기상 위원님까지 의견에 일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관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주신 수정의견이 하나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정의견이 뭐였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26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99조의10, 아까 전에 말한 징수특례와 관련해서 중복요건을 배제하는 경우.

예를 들면 여기서 소멸을 받은 사람은 다음에 징수특례를 못 받는다는 규정을 추가하는 취지의 의견이고요. 그 앞에 있는 것처럼 예전에 할 때도, 2018년에 할 때도 같은 조항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거에 대해서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케이. 그 부분은 수용하도록 하고 전체적인 결정은 한 번 더 논의하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어느새 점심시간이 돼 버렸네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항목 몇 권 몇 쪽인지부터 말씀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8권이고, 31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개별소비세 분야, 교통·에너지·환경세 분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심사입니다.

첫 번째 안건은 농어업용 기자재 등의 공급·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의 적용기한 연장 및 추정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2건 일괄해서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2년 연장안, 3년 연장안, 4년·5년 연장안 그리고 10년 연장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추가해서 농어업용 기자재 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안도 같이 발의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농어민의 세부담 경감을 통해 간접적으로 농어가 소득보전을 위한 차원에서 관련 세제

지원제도를 운영 중인데 농어민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조세·재정지원사업 등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기존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 추정대상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농민이 아닌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데 농민·임업인이 아닌 자가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리고 어민이 아닌 자가 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기자재를 재판매하거나 타 용도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일몰 연장은 저희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추정사유가 아까 전에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농민이 아닌 자가 축산업용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경우만 추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문상 전반적으로 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민·임업인이 아닌 자는 농·축산·임업용에 대해서, 어민이 아닌 자는 어업용에 대해서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합리적인 것 같은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44페이지, 주요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협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것도 정부안은 3년 연장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3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이 2번 안건이야 사실 작은 부분이기도 하고 원래 해 왔던 일을 연장하는 거니까 제가 이것을 당장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닌데요.

오늘 심사대상인 8번만 하더라도 보면 화석연료에 대해서 보조금성 세금감면을 해 주는 항목이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심사대상인 2번도 석유류에 대한 거고요. 그 뒤에 보면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라거나 화물선용 경유 그다음에 목재펠릿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재생에너지 보조금을 박탈한 것들인데, 지금 당장 이것을 없애자라는 취지의 주장은 아니지만 G20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단계적으로 폐지하자고 약속하고 우리나라도 2011년에 그 약속에 동참을 했는데 지금 14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사실 셀 수 없는 석유류·석탄류, 이런 화석연료 보조금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을 반영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줄여 갈 수 있을지 좀 고민이 필요해 보이고, 이런 종류의 안건을 국회에서 심사할 때는 단순히 조세지출이 얼마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이런 화석연료 보조금으로 인한 다른 환경적 영향 이

런 것들도 좀 같이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도서지방이 다 섬이니까 자가발전을, 그러니까 발전기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거고. 원래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사실 최근 10년간 전기를 생산하고 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과거보다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전기만 하더라도 재생에너지 방식으로 얼마든지 섬에 자체적으로 전기 조달하는 곳들이 많아졌고 열의 경우에도 지열발전이라거나 태양열발전이라거나 전기를 통해서 히트펌프 같은 방식으로 열을 공급하는 많은 방법들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작은 커뮤니티, 도서지역의 경우에 그런 것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에 기재부가 이것을 해 왔다고 해서 기계적으로 계속 연장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화석연료 종류의 보조금 중에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고 없앨 수 있는 것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남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좋은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지금 보니까 농어민이 직접 수입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적용기한 연장이잖아요.

이것 이미 지나갔습니까, 위원장님?

○소위원장 박수영 지나갔지만 말씀하셔도 됩니다.

○천하람 위원 지나갔는데 제가 좀 궁금한데 이것 수입하는 것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를 꼭 해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즘 특히 농업용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쨌든 수입품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국내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직접 수입하는 것까지 부가가치세 면제를 왜 꼭 해 줘야 되는지 제가 보다 보니까 좀 궁금해 가지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직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논의 가능한 부분입니다.

정부 측 답변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 부분은 보시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수입이나 국내산이냐를 보실 거냐 아니면 농어업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실 거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농민들한테 가는 기자재라든지 농민들이 쓰는 유류라든지 농민들에게 발생하는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전통적으로 세금들을 거의 다 면제를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차원으로 이해가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의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것 같은데 천하람 위원님 지적은 타당한 면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다음에 재논의하기로 하고.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렇게 무작정 똑같이 3년·3년·3년 연장할 게 아니라 2년으로 줄인다든지 하고 부대의견을 단다든지 하는 식의 뭔가 노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정부 측 어떻게 보십니까, 차관님?

석유, 목재펠릿 이런 친환경적이지 않은 발전원에 대해서 뭔가 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셨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 건 자체만으로 보면 작기는 하지만 이소영 위원님 말

씀처럼 사실 이것을 다 합치면, 전체적인 친환경 세제에 대한 구축으로 넓게 가면 저희가 검토할 사항은 많고요.

이 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은 면세유를 누가 공급하냐면 수협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자가발전용 석유 공급도 있고 그다음에 어업인들이 배에서 쓰는 것에 대한 면세도 있고 그런데 하나만 과세로 전환하게 되면 사실은 그 부분에 부정수급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같이 보기는 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말씀처럼 친환경적인 세제 전반으로 넓게 보신다면 사실은 저희가 부가가치세뿐만 아니고 세제 전반을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는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늘 기재부가 미리 다 연구를 하고 왔어야 되는데 이게 시기가, 적용기한이 도래하는 게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는 다른 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고 또 다른 것 도래했을 때는 이것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이것을 2년으로 줄인다든지 부대의견을 넣어서 태양광을 한다든지 풍력을 한다든지 지열을 한다든지 하는 식의 연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한은 며칠 전부터 계속해 왔던 3년으로 하시되 부대의견을 달아 주시면 저희가 그 기간 동안에 검토는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소영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소영 위원 부대의견을 달고 실제로 기재부가 전반적인 화석연료 보조금 성격의 세제지원을 검토한다고 하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 문구는 위원장에게 맡겨 주시고요. 부대의견 달고 3년 연장하는 것으로, 일단은 부대의견 플러스 정부안으로 합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관리주체, 경비업자 또는 청소업자가 국민주택이 아닌 일정 규모의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관리비 인상 부담을 방지해서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현행법에서 영구면세 조치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그냥 3년 연장안이 저희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도는 대다수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필수 주거 서비스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52쪽 표를 보시면 상당히 큰 아파트들도, 평수 큰 데도 지금 면제해 주고 있거든요. 비수도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수도권 아파트는 가격으로 따지면 이게 상당할 것 같은데 삼십사오 평짜리들도 지금 면제를 해 주고 있는 거지요.

윤영석 위원님.

○윤영석 위원 지금 보니까 비수도권 읍면 소재인데 동까지 합치면 이게 얼마나 되는지 나오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동……

○윤영석 위원 그러니까 비수도권 읍면 소재로 지금 돼 있잖아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에 동이 있잖아요, 동이. 읍면동이 있는데 동까지 합해서 이렇게 면제를 할 경우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 통계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윤영석 위원 혹시 그 통계가 없나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왜냐하면 보통 기초단체의 동 단위로 가면 상당히 노후화된 지역이 많아요. 오히려 읍면 지역은 신도시나 이런 게 개발돼 가지고 주택가격이 더 높고 신규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동 단위는 보면 굉장히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아 가지고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건지 실태를 조사해 가지고, 굳이 이렇게 읍면만 하고 동은 빼 버리면 또 다른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유의해서 그런 통계를 한번 봐 주시면 좋겠어요.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재산소비세정책관인데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에 대해서는 영구면제를 하고 있는데 그 근거는 주택법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읍면 지역의 경우에는 100㎡ 이하로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이외의 지역은 85㎡ 이하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그러니까 동 단위도 100㎡ 이하로 하면 안 되느냐 이거지, 동일하게.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그것은 주택법 소관 사항입니다.

○윤영석 위원 주택법에서?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예, 저희들은 주택법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만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주택법을……

○기획재정부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예, 주택법에서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 위원 아, 그래요?

○소위원장 박수영 윤영석 위원님께서 주택법 개정을 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시골의 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윤영석 위원 기초자치단체는 시 단위가 많잖아요. 시 단위가 많은데, 시 단위에 보면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시 단위들이 신규 개발 있지 않습니까, 화성 같은 경우에? 그런 데는 읍이나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다 신도시고 동 단위는 오히려 아주 노후화되고 원도심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역차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불만을 초래한다는 거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니 그것은 다시 논의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수도권의 45평 이렇게까지 면제를 해 줘야 되는 건지요?

○오기형 위원 지금 제가 잠시 놓쳤는데 이 내용이 실제 적용되는 대상이 어디까지입니까, 아파트에서? 이 부가세 면제 한 번 더 조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게 면적으로 하니까 아마 한 40평대까지, 85㎡ 이상부터 135㎡ 이하까지 한시적으로 면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치면 아마 한 32평에서 40평대까지 될 것 같습니다.

○최은석 위원 전용면적 135㎡, 52평인가 이것도 해당되지 않아요? 그럴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정확히 그 부분은……

○소위원장 박수영 전용면적이니까 한 50평까지 면제가 되는 이런 형국인데.

○최은석 위원 예, 전용면적이야……

○오기형 위원 그러겠네요.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수도권 오십몇 평이면 가격이 상당할 텐데 거기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게 맞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게 쉽게 말해서 아파트 관리비에 대해서 부가세를 면제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일몰하게 되면 결국 주택의 소유자가 아니고 세입자가 이것을 부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것을 일몰시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도권의 오십몇 평짜리는 세입자도 보증금 규모가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대상자가 많은 게 아니라 가격이 높을 것이다 이런 얘기지요.

○정태호 위원 관악구 40평형이 8억, 9억이에요.

○소위원장 박수영 관악구는 예외인 모양인데 강남 따지면 상당히 큰 규모인데요.

간사님은 반대 의견, 그러니까 그대로 정부안대로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서울시 지역구시기 때문에.

○정태호 위원 서울도 서울 나름이라니까요.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에서 좀 다른 대안을 연구해 오세요. 예를 들면 강남·서초·송파의 전용면적 사십몇 평, 분양면적 오십몇 평짜리까지도 전부 다 이것을 면제해 주는 게 과연 정의에 맞느냐, 형평에 맞느냐 하는 이 부분이시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그런데 관악구 같은 데는 너무 싸다 이렇게 말씀도 계시고 합니다.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방금 제가 자료를 하나 찾아보니까 서초구의 원베일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해당되거든요. 여기 53평형이 135㎡ 이하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시세가 120억~130억이네요.

전세 가격 한번 볼까요. 전세도 아마 한 칠팔십억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쨌든 불형평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이것은 기재부가 다시 연구해서 오도록 하십시오. 정의에, 공정에 맞는지 검토해서 다

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온실가스 할당배출권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5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이것은 검토의견은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세 이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부안,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3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3년 연장이지요.

혹시 반대하는 위원님 계시면……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상할당 실질 비중이 4% 정도밖에 안 돼서 96% 무상으로 할당받고 있는데 그 무상할당 받은 양을 다 사용하지 않고 남은 것을 시장에서 팔았을 때 그 차익, 그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 과세를 안 한다는 얘기인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부가세를……

○기획재정부제1차관 박금철 예, 부가세입니다. 부가세 면제한다는 겁니다, 그 거래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거래가격에 10%를 안 붙이겠다는……

○이소영 위원 어쨌든 그냥 원칙적인, 과세 원칙상으로는 붙여야 되는 건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시장 차원에서……

○이소영 위원 그것을 10년째 면제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2015년부터 시행이 돼 가지고 올해까지가 3기 마지막 해고 내년부터 4기에 접어드는데 1기·2기는 제도의 안착기라고 해서 3년·3년 이렇게 운영이 됐었고요. 그때 많은 예외를 허용해 줬었고 3기에서는 물론 코로나나 이런 상황들 때문에 굉장히 특수한 여건은 있었지만 그래도 제도가 5년짜리 안정기에 들어가 있고 내년부터는 더 발전하는 그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 제도를 시작할 때, 지금까지 시범 단계에 이런 과세특례를 적용해서 10년 동안 온 것은 그렇다고 치겠는데 앞으로 내년부터 4기가 진행되는 데 여전히 과세 제외를 해 줘야 되는 건지 일단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데요.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결국 이것은 거래가 생겼을 때 시장조성자나 이런 쪽에서 부가세를 계속 부담하기 때문에 이게 처음에는 시장조성 차원이지만 지금 입장에서는 거래 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게 되는, 가격이 상승해서…… 저희가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부가세를 면제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이것을 일몰하기에는, 저

회는 배출권 시장이 좀 더 지속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포스코 같은 경우에 감축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헌남노로 인해서 공장을 몇 개월 문 닫았다는 이유로 무상 할당받은 배출권이 남아서 그것을 시장에 팔아서 1000억 원 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면 포스코가 얻은 1000억 원 수익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을 내게 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것은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이소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내고. 그러면 부가세는 지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거래가격에 10%……

○기획재정부제제실장 박금철 거래가격에 붙이는 거냐, 부가세……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상대방이 10% 내야 되는 겁니다, 살 때.

○이소영 위원 그것을 원천징수하게 되는 것을 면제해 준다는 취지인가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박금철 아니, 그러니까 원천징수……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내야 되는 돈을 깎아 준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박금철 그렇지요. 부가세 포함 안 된 가격으로 사는 거지요.

○이소영 위원 그러면 가격이 10% 더 높아질 수 있는 것을 덜 높아지게 하는 거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는 무상 할당받은 것보다 더 많이 배출하려고 그 배출권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배출권 가격이 높을수록 사실 감축의 유인이 커지는 구조잖아요, 이 제도 자체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배출권 가격이 높을수록……

○기획재정부제제실장 박금철 배출권 가격이 높으면 부가세도 당연히 높겠지요.

○이소영 위원 줄이려고 하는, 감축하려고 하는 회사도 그에 대한 유인이 커지고 이걸 사려고 하는 회사도 이것을 사느니 차라리 내부적으로 감축해야 되겠다는 유인이 생기고 그런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박금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 우리나라는 사실 1만 원도 안 되는 배출권 가격이어서 정말 낮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 거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배출권 가격이 거의 10만 원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자체가 실제 감축을 추동하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계속 평가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4기 배출권거래제에서도 여기 나오는 상쇄배출권 같은 것들이 무분별하게 많이, 정확하지 않게 사용된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고 배출권 가격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1만 원대보다 가격을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규제의 방향이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방향이라고 한다면 사는 사람한테 배출권 가격을 10% 덜 내게 해 주는 부가세 면제 연장은 그런 정책 방향에는 안 맞는 것 같거든요.

○기획재정부제제실장 박금철 위원님 지적하신 바처럼 만약에……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친환경 세제의 일환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 포스코가 배출권이 왜 남았느냐, 도대체 무상할당을 얼마를 하고 유상권 그걸 얼마나 주냐, 그러니까 사실 그게 너무 많냐 적냐 이런 논의가 있고 전반적으로 유상 비율을 늘려 나가는 이런 큰 방향의 흐름이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보시길 해야 되는데 일단 여기로만 보면, 물론 ‘세제실이 너무 조금만

본다. 너무 좁게 본다'라고 말씀 주실 수는 있지만 일단 여기만 본다면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를 과세하게 되면 그 전에 비해서, 현재 무상할당이 많이 됐든 어쨌든 갖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거래를 좀 더 활성화하면 이 시장 자체가 좀 더 활성화되고 그래서 기업들이, 온실가스 시장이 결국 활성화되면 그게 환경정책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지금.....

○이소영 위원 아니, 환경정책에 도움이 될까 봐 한다고 보이지는 않고. 오히려 60페이지를 보면 부가가치세 면제를 통한 비용 절감이 생산설비 투자나 온실가스 저감으로 이어지지 않아서 온실가스 저감목표 달성하기 위한 지원수단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게 전문위원께서 제시하고 있는 의견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더라도 배출권 가격이 10% 높아지면 그 가격이 높은 만큼 그 아래 단계에서는 감축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배출권 가격 톤당 5만 원이면 톤당 4만 원짜리 감축수단은 경제성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배출권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춰서 더 거래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정상거래를 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가격에 전가되게 해야지 지금 이 거래제가 의도하는 그런 경제적 유인효과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큰 방향에서는 그게 맞다고 저도 보고 있는데요. 일단 말씀처럼 온라인 배출권 거래제가..... 아까 1만 원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가격이? 그런데 그게 작년·재작년에 2만 원, 3만 원 가다가 떨어졌거든요. 그것은 예를 들자면 처음에 배출권 할당을 많이 받았는데, 기업의 수요에 비해 무상할당을 너무 많이 해 줘서 거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가격이 낮춰지는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또 다른 차원에서 많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가격이 낮아진 상태에서 이것 과세를 할 거냐 말 거냐, 자기가 쓰지 못한 배출권이 생겼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론 무상할당·유상할당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전체 큰 틀에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그렇게 나온 거래를 좀 더 활성화하는 차원의 측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소영 위원 일단 제 의견은 부가세를 깎아 준다고 해서 팔지 않을 배출권을 팔거나 사지 않을 배출권을 사는 효과는 잘 생기지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규제제도가 같이 병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규제 메커니즘에 따라서 오히려 사고팔고가 일어나는 측면이 크고.

일단 이 법안에 대해서는 이미 2015년부터 10년 동안 제도의 안착기까지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연장하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협의가 좀 덜 돼서 지금 당장 뭐를 바꾸기 어렵다고 한다면 일단 1년 정도만 연장을 하고 그동안 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관련된 세제체계의 전반적 검토를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에서 늘 정태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오시던 문제이기 때문에 정태호 위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정태호 위원 이소영 위원님이 워낙 자세히 말씀하셔서 가지고 내가 덧붙일 말이 있을

까 싶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옳으나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현재 탄소가격이 1만 원인 수준에서는, 유럽이 10만 원이잖아요, 부가세를 붙이나 안 붙이나 이 시장을 조성하는 데는 별 기여는 못 할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무상 할당 규모가 너무 크니까, 팔려는 사람들은 양이 많고 쓰려고 하는 사람들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격이 다운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에 더 초점을 맞춰야지 이 자체가 무슨 시장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들을 잘 살펴보고 제도 설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이 부분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상황을 좀 놓쳤는데요. 지금 들어 보니까 이런 상황 같습니다.

지금 배출권 거래제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금융권이 한 60% 거래에 참여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만약 부가세를 부과를 하게 되면 보통은 부가세 체계상 앞단에 부가세를 맞은 상품을 사면 이 사람이 다른 데 매출을 일으킬 때 여기서 또 부가세를 내기 때문에 부가세끼리의 차액을 공제하기 위해서 미리 산 것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마지막 단에서 부가세를 안 내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자기가 떠안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는 면세 사업자입니다, 부가세가.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러면 온실가스에서 10%가 붙어서 왔지만 이것을 본인이 떠안게 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시장조성자 입장에서 10%의 추가 비용을 내고 들어갈 거냐, 사실상 시장조성 일을 덜할 거다, 그러면 이 시장이 잘 굴러갈 거냐, 이런 취지가 있다고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방금 실무자로부터 들으신 것 같은데요. 이소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상당히 설득력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하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것은 서면으로 검토서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나누어 주십시오.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개정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 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안이지요, 3년 연장하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행복기숙사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입니다. 3년안, 5년안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은 3년이겠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3년 연장이 정부안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반대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 제시기 때문에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난방용, 농·임업용으로 공급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으로 3년 또는 5년 연장안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 안도 아까 이소영 위원님 이의 제기하신 것과 동일한 선상에 있기 때문에 같이 기재부에서 검토해서 의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80페이지입니다.

외국인관광객 등이 관광숙박시설에서 30일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으로 2년 또는 3년 연장안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일몰 3년 연장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외국인관광객에 대해서 언제까지 숙박에 대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빼 줘야 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숙박요금은 관광의 필수적인 지출 항목으로 봐서 현재 방한 관광객의 주요 고려 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외국인관광객의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숙박비의 10% 부가가치세가 좋은 호텔 같은 데 투숙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박금철 방한 여행 주요 고려사항이라고 문체부에서 조사한 것을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 제일 큰 요인이 교통이고 두 번째가 치안이고 3위가 숙박시설입니다. 물론 그 숙박시설의 요금도 당연히 포함은 될 것 같고요. 이 혜택을 받으려면 호텔 측도 일정한 의무를 부담해야 됩니다. 요금을 많이 올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혜택을 적용 못 받고.

위원장님 지적처럼 전에 이것을 한번 도입을 했다가 어느 정도 효과 달성했다고 그래

서 종료를 했다가 다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외국인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이런 관계부처의 요청도 많고 그래서 이게 살아났고 일몰을 연장하는 차원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천하람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천하람 위원 이것 작년에도 우리 논의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렇게 외국인이 숙박하는 경우 10% 부가가치세 환급 안 한다고 해서 엄청난 문제가 생기거나, 저는 전혀 그렇게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84페이지에도 있지만 이렇게 외국인관광객 숙박에 대해서 영세율 적용해 주는 외국 사례도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랑 관광 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이 다 이런 제도를 하고 있다고 그러면 모르겠는데 왜 우리나라만 유독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불필요하게, 과하게 넣어 놓은 것은 이번 기회에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이 늘 주장하시는 것을 오늘 천하람 위원님이 주장하십니다.

오기형 위원님 발언하시지요.

○오기형 위원 천하람 위원님 주장하시면 열심히 듣고 있다가 배우려고 합니다. 동의하고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뭔가 좀 다른…… 지금 관광 활성화 필요하긴 한데 적절한 정책수단이 뭐냐 이런 논쟁이기 때문에 이 사안, 그러니까 부가세만 갖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실제 다른 경쟁국가와의 관계에서 별 이슈가 없다면 그냥 원상회복, 정상화시키는 게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른 정책수단을 좀 더 면밀히 관계부처랑 협의해서 같이 의견 한번 나눠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해외 사례 말씀을 주셔 가지고요. 전문위원 말에도 나와 있듯이, 저는 이렇게 읽었습니다. 우리나라는 환급을 하지만 다른 나라는 부가세를 경감하고 있다, 세제지원하는 것은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 밑의 58번 주석에 보시면 20% 하는데 관광객에 대해 10% 경감해 주고 있기 때문에 환급이나, 부가세 경감이나는 각 나라가 판단할 문제고 관광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경쟁국이라고 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기형 위원 한 번만 좀 더 말씀드리면……

○소위원장 박수영 예,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충분히 논쟁의 영역이고 절대적으로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관광객들이 감내할 수 있는 전체 숙박비용과 그다음에 다른 나라 경쟁국가 정책수단에서의 숙박비용, 이 비교되는 이야기가 돼 있어야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 요율만 갖고 평가하기는, 단정적으로 할 수 없는 것 같고. 전체적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에 대한 대책 속에서 재검토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도 자체가 적절하고 존속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기에는 설득력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지적대로 보니까 프랑스·이태리·스페인 전부 숙박요금 엄청나게 비싼 나라들이거든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경감해 주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정부 측에서 자꾸 완강하게 말씀하시니 다시 한번 정부 측이 전향적으로 검토를, 위원님들 여러 분 말씀이 계셨으니까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건이고요. 이것은 2건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건이 1건 있고요.

그다음에 92페이지 부분입니다.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대해서도 적용기한 연장 건과 그리고 정부안으로 공제한도를 설정하고 그리고 2개의 과세기간 동안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안이 별도로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일단은 재활용폐자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단순 연장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중고차의 경우 제도는 3년을 연장하지만 이 중고차 부분에서 매출액을 과소신고하거나 매입액을 과다하게 포장해서 부당한 매입세액 공제받는 현상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제한도를 둬으로써 일정한 제어를 하는 전제로 연장하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재활용폐자원은 고물상 이런 것 얘기하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재활용폐자원, 고물상은 계속 전체 다 연장해 주고 중고자동차에 대해서는 한도를 두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여객선, 도선 등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이고 2년·3년·5년 연장안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에서 말씀 좀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도 아까 전에 저희가 논의했던 석유류 일몰 연장과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3년 연장에 부대조건……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 이소영 위원님 말씀 주셔서 ‘3년 연장하되 석유류라든지 화석

연료에 대한 부분은 빨리 재검토한다' 이런 부대조건 넣기로 했으니까 그 부대조건을 조건으로 정부안대로 합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103페이지입니다.

이것도 화석연료 관련 건입니다. 연안화물선박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만……

○소위원장 박수영 예.

○이소영 위원 이 11번 관련해서는 한 말씀 남기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환경정책의 일환으로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인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이소영 위원 그러니까 황산화물, SOx라고 불리는 그 유해물질, 우리 대기오염에도 크게 기여하는 그 물질이 중유에 함유량이 더 높는데 그게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서 이런 선박 연료유에서의 황 함유량 기준이 국제적으로 강화되면서 중유가 더 싸면서 SOx가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더 비싸지만 SOx가 덜 나오는 경유로 옮겨 가게 하기 위해서 경유 세금을 깎아 준다는 개념인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이소영 위원 그렇게 해서 21년에 도입돼서 이게 5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중유에서 경유로 가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경유 세금을 깎아 주는 것은 처음에 이해관계자들이 거기의 어떤 변화에 적응하고 경제적인 영향을 덜 받게 하기 위한 과도기적인 측면인 거지 이것을 또 3년 연장해서 계속 경유에 대한 세금을 깎아 준다는 게 맞는 방향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원래는 오염물질이 더 배출되고 덜 배출되는 게 있으면 더 배출되는 것에 있어서 어떤 페널티적 성격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나 여러 가지 그런 정책 방향하고는 맞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이소영 위원 그런데 중유에 대한 가격 부담을 좀 올리거나, 예를 들면 그런 환경부담을 높이거나 하는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것도 기계적으로 5년 했는데 또 그냥 일몰기한 도래했으니까 3년 더 연장해서 경유 세금 계속 깎아 주자 이게 바람직한 환경정책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황 함유량이 많이 섞여 있는 중유에 대한 선박유 사용규제는 사실 일정 부분 환경규제로 해야 되는 일이지 이렇게 세제혜택으로 경제적 유인을 하는 것은 단기적이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적으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통일적으로 부대의견을 넣는데 가만 보니까 이걸 3년으로 우리가 연장해 주면…… 정부가 제대로 의견을 가져올는지 모르겠는데 1년이나 2년으로 줄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님들?

○이소영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기형 위원 동의합니다. 오히려 통일적으로 그렇게 푸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도 동의하시지요?

○천하람 위원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통일적으로 한 1년으로 줄일까요, 아니면 2년으로? 그리고 내년에 다시 논의하면 되는 거니까.

○이소영 위원 1년으로 하고 그동안 기재부가 종합적인 검토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문제는 부대의견에 하고 조항 자체는 1년만 연장하는 걸로 하고 그사이에 기재부에서 연구·검토해서 안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1년 후에 다시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1년이라는 시간은 저희가 기후부랑 협의하기에 아무래도 좀 짧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게 오래 걸릴 일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렇다면 1년 뒤에 재논의할 때에 '1년 동안 충실히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년만 더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국회에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109페이지입니다.

해저조광권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면제제도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안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이걸 3년 연장안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해저광물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이것은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114페이지입니다.

2개의 내용입니다. 영농자녀 등이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는 안과 감면한도를 2억 원,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유사한 취지로 이전 논의에서 어업용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특례 적용기한 연장 건을 잠정 합의하셨다는 점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적용기한 연장은 저희가 3년으로 정부안을 냅니다. 그리고 감면한도와 관련해서는 두 분 의원님이 5년간 1억 원을 올리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간의 통계를 보면 평균 감면액이 한 2200만 원에서 2600만 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거의 한도 달성을 못 하고 있고요. 지난 10년간 2만 4000명이 이 제도를 활용했는데 2만 4000명 중 380명 정도가 1억 원을 초과한 사항

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감면한도까지 늘리는 것은 좀 과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어떤 의견……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저는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 게, 우리나라 농촌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개선하려면 아무래도 영농하시는 분들이 대형화되고 현대화돼야 되는 것들이 앞으로 농촌의 중요한 당면과제인 것 같은데요. 물론 과거에는 좀 없었지만 앞으로 대형 영농 농민들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한도를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전향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삼백몇 명 정도 있다고 그랬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1%입니다.

○최은석 위원 앞으로는 그게 조금 더 대형화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최은석 위원 예.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대형화·법인화 이런 것을 확대하자는 차원에서 농업법인이라든지 이런 데 현물출자할 때 양도세 감면한도가 제약이 돼 가지고 현물출자를 못 하는 것을 막자고 그런 부분도 며칠 전에 논의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런 차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는 사실, 물론 이걸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 대형화 차원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경농지를 한다든지, 지금 사실 농업 쪽에는 거의 세금이 없습니다, 어느 분야에서도. 그런데 이것은 조금 다른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것은 직계비속한테 증여하는 경우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대형화하고 법인화하고 조금 논점은 다릅니다만 어쨌든……

○최은석 위원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직계비속이 농촌에서 계속적으로 농업을 확대하고 앞으로 계속 농촌에서 농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해 보려면 증여에 대해서도 좀 더 확대하는 게 의미가 없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수영 잠깐만요. 농촌 지역구를 갖고 계신 유상범 위원님이 오랜만에 손드셨기 때문에 먼저 기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차관님, 농촌의 실정이 뭐냐 하면 젊은 세대들이 돌아오지 않는 게 실정입니다. 돌아오는 세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사실은 축산을 해서 상당한 부를 이룰 수 있는 분야 그다음에 특작물을 통해서 도시에서의 생활보다 많은 소득을 올리는 경우, 이 경우 외에는 사실은 젊은 영농인들을 육성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위기지역이고 소멸지역으로 가는 이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보면 감면이 사실 국가재정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상당히 적어요. 이렇다면 이 기간을 그냥 통상적으로 3년, 3년 이렇게 하는 기계적 3년이 아니라 이런 것은 젊은 영농인들이 이것을 계속 이어받을 수 있는 하나의 유인책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그러한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5년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이 부분 정부안은 적용기한 유예를 3년 연장하는데 이걸 5년 연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가 되는 게 없다면 정부도 그대로 따라 주는 게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기본적으로 기간에 대한 문제는 유연하게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농상속공제 관련된 부분이라서 잠깐 보면 영농하는 쪽에서 증여를 받은 걸 증여세를 면제하는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증여에 대한 제도가 다른 데서 계속 연관돼 있는 이슈입니다. 매년 세법 논의할 때마다 나오는 이슈이기 때문에 큰 흐름에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증여세·상속세에 관해서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따로 가지 않고 같이 가기 때문에 시스템적인 일치가 필요하고 예외가 있다면 특별하고 엄격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금액을 늘리는 것은 조심스럽다.

두 번째로 영농상속공제제도가 이미 30억 정도 있다고 그러니까, 증여도 있고 상속공제 방법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종래 국감 때마다, 2년 연속 논쟁했던 주제지만 가업상속공제가 대한민국에서 한 25년 전에 도입될 때 1억으로 시작을 했어요. 지금 가업상속공제가 600억입니다. 작년에 1200억 하려다가 그거 막았고 멈췄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갈 거냐, 세습사회로 갈 거냐 저는 이런 의견이 좀 있고.

두 번째로 일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이라고 표현되지만 중소기업, 작은 기업들을 꼭 자식한테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 기업이 존속해야 이 사회가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 가업에 대해서 제삼자 승계도 허용을 해요. 그리고 대신 이연 시스템이거든요. 우리가 시스템에 대한 다른 고민도 필요할 수 있는 거다. 어떤 생업이, 계속 시설물이 유지되고 경제활동을 하려면 그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그렇고요.

지금 현재 농촌소멸 상황 속에서 되도록이면 유인책을 줘야 된다는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이견은 없습니다. 이게 효과들을 봐서 그때그때 심사하면서 유연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지금 상황에서 기간은 좀 유연하게 갈 수 있는데 이걸 확대하는 건 좀 조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면한도 확대는 조심하더라도 적용기한은 조금 더 유연할 수 있다는 오기형 위원님 말씀이 계셨고. 보니까 농촌지역 출신 의원님들은 줄줄이 4년, 5년 늘리는 안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정부 측에서 조금 유연해질 수는 없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견 영농증여고요. 아까 오기형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영농상속공제라는 또 다른 제도가 있고 거기는 한도도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까지 기간도 늘릴 것인지, 사실은 이 부분도 계속 평가를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물론 4년, 5년 후에 평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원칙적으로는 한 3년 정도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위원님들 의견하고 정부 측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의 국내 투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는 안입니다.

2건의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김영진 의원안은 국제결제은행이 받는 국내원천소득 중 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등 이와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 면제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국제금융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가 받는 국내원천 이자, 배당, 유가증권양도,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 법인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24페이지 하단부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125페이지에 적시가 되어 있는데요—1호부터 17호까지 금융기구 목록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지금 11호에 있는 국제결제은행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이고 14호에 있는 다자투자기금에 대해서는 관련 면제 규정은 없고 나머지 금융기구 같은 경우에는 관련 협정 등을 통해서 면제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측면을 볼 때 조세 형평성 측면이나 국제결제은행의 원화자산 투자 확대·활성화 측면에서 관련 개정안이 제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안은 김영진 의원안에 더해서 국제금융기구가—124페이지 중반 부분입니다—적격 외국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투자하는 경우에 그 관련 적용 신청이나 경정청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개정안의 형식과 관련해서는 김영진 의원안은 국제결제은행을 명시를 하고 있는 반면에 정부안은 국제금융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 실제 규정하고자 하는 기구는 국제결제은행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실 것으로 보았고요.

그다음에 125페이지 부분에서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의 범위와 관련해서 정부는 국내 원천 이자, 배당, 기타소득까지 해서 관련 소득의 범위를 열거를 하고 있고 김영진 의원안 같은 경우에는 관련 투자상품의 내용이나 이자,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매차익 등 이와 유사한 소득이라고 해서 일부 예측 가능성이 저하되는 측면도 있다는 점 좀 감안하셔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할 때 현재는 국제조약상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세제를 감면을 해 주면 투자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돼서 이 내용을 넣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말씀처럼 실제로 이 법이 적용되는 게 현재로서는 BIS가 유일해 보이는데 김영진 의원님께서서는 직접 법에다가 BIS를 넣었고요 저희는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사실상 실질은 똑같지만 법에다가 특정한 기구 이름을 쓰는 것은 좀 그 자체로 처분적인 법률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대령으로 위임해 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김영진 의원안과 큰 차이는 없어 대령으로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이게 국제결제은행에서 요청이 있어서 하는 입법인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최기상 위원 이것 안 하면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 꼭 그런 건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문제라기보다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겠다는데 세금 이슈가 있고 보통 다른 국제금융기관은 다 저희가 면제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같은 대우를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최기상 위원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박금철 예.

○최기상 위원 장점이 훨씬 많다는 말씀이네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세법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소위원장 박수영 9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9권으로?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 9권이고요.

1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안건은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를 강화하는 안입니다. 지금 관세법 개정안은 정부안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연대납세의무자 중에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를 강화해서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대납세의무의 성립 요건을 일부 축소하는 내용입니다.

현황 부분입니다.

현재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수입물품에 대해서 납부할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 등에게 과세가격 등의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구매대행업자도 수입신고하는 화주와 연대해서 관세 등의 납부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구매대행업자들이 과세가격 거짓 제공 요건을 회피하면서 관세를 포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과세가격 거짓 제공 요건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현재 국세기본법 등 기타 내국세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에서도 관련 일반적인 행위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구매대행업자의 세금 편취 행위로부터 직구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는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직구와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계속 입고 있는 일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해결하려는 건데요.

3페이지 그림을 봐 주시면, 직구소비자가 먼저 1번입니다. 구매대행자,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에게 주문하고 돈을 입금합니다. 그러면 이게 주문이 돼서 실제로 배달이 되는데 구매대행업자가 이것을 거짓으로 하면 저희가 이 사람에게 관세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했던 사항인데요. 문제는 거짓으로 하지 않고 아예 아무것도 안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구매대행업자는 추가로 신고 자체도 안 하고요.

대신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해외판매자랑 결탁을 해 가지고 해외판매자가 국제특송회사에 보내는 인보이스에다가 이것을 저가로 보냅니다. 30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짜리라고 발송한다고 하고 실제 그 물건은 가고요. 그러니까 세관 입장에서는 10만 원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30만 원짜리입니다.

이랬을 때 구매대행업자는 거짓으로 한 건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매대행업자가 사실은 30만 원에 대한 관세까지 다 받았습시다. 실제로 받아 놓고 그 관세를 해외판매자랑 나눠서 가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납세의무를 부과하겠다, 거짓으로 신고하든 하지 않든 직구소비자로부터 관세에 대한 값을 받았다면 무조건 납세의무를 넣자라는 게 저희 법안의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방금 설명에도 나오지만 구매대행업자가 가격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지요.

○최기상 위원 그러면 가격을 신고하게 하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이것을 보면서. 신고하게 하면 되지 거짓 신고도 안 했는데 연대책임을 더 넓힌다는 측면에서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구매대행업자가 신고를 안 하게 되는 경우를 막으면 되는 일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안 되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박금철 현행 제도 자체는 누가 신고를 하게 돼 있냐면, 그림을 보시면 수입신고인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매대행업자는 어차피 여기에 안 끼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중간에 해외판매자가 하나 있는데 결국은 해외판매자를 통해 가지고 뭔가 거짓으로 하기는 하는데 구매대행업자가 자기는 안 한다 이런 차원인데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은 현실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구매대행업자로 하여금 정보를 많이 받게 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관세정책관 최재영입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관세법상 수입신고를 하게 돼 있는 사람은 물품을 소유하는 화주—여기서는 직구소비자입니다—또는 관세사 그다음에 관세법인이 신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라는 게 나름대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거의 99%

이상 관세법인에서 하게 돼 있어 가지고 현행법상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 구매대행업자가 바로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는 저희들은 통상 상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짓 신고하면 지금 책임을 묻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고 안 해도 괜찮은 상황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신고를 안 했는데 부담을 지운다? 이게 맞는 책임인가 싶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지금은 관세를 대납을 받았거든요, 받은 경우라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추가적인 부담이 아니고요. 자기는 이미 관세를 받았습시다, 구매대행업자가. 그런데 그것을 안 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가 받은 관세 범위에서는 직구소비자와 구매대행업자가 같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라 이런 겁니다. 사실 원래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기상 위원** 그런데 지금은 구매대행업자가 신고할 의무가 없으니까 안 하는 것 아니에요? 의무가 없지요, 법률상? 그러니까 안 하겠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최기상 위원** 의무가 없어서 안 했는데 거짓 신고한 경우랑 같이 취급해서 연대책임을 확대하겠다는 거니까 저는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하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짓 신고라는 요건이 있으니까 그 거짓 신고라는 요건을 증명하기가 어려워 가지고 사실 현재는 이게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신고를 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시스템에서는 지금 관세국장이 설명드렸지만 수입신고인이 신고를 하게 돼 있으니까, 물론 구매대행업자가 신고를 하게 해도 되고—이것은 관세법을 완전히 고친다는 전제에서—수입신고인이 하게 되는데 지금 현행 제도하에서 해외판매자와 국제특송회사 그 부분만 조금 손을 댈 수 있다면 사실 큰 틀을 고치지 않으면서도 가능할 것 같고.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 적발을 직접 하기가 어려우니까, 구매대행업자는 간접적으로 자기가 받은 세금 범위 내에서는 당연히 납부를 같이 해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오기형 위원** 저……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 먼저 유상범 위원님이 드셨는데.

유상범 위원님.

○**유상범 위원**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화주가 연대해서 관세 등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과한다고 돼 있어요. 이 화주는 구매대행업자에게 관세를 포함해서 물품대금을 보냈어요. 그런데 소위 말하는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신고를 안 하기 위해서 저쪽의 수출업자와 짜고 30만 원짜리를 10만 원으로 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화주는 자기의 의무를 다 이행했는데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다시 그것에 대해서 화주가 연대해서 책임을 지는 이런 구조는 굉장히 논리적 설명이 안 되는 구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여기 연대납세의무자는 화주가 아니고요. 구매대행업자에게 납세의무를……

○**유상범 위원** 그런데 화주는 이미 구매대행업자에게 돈을 줬단 말이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맞습니다.

○**유상범 위원** 돈을 줬는데,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화주는 이미 30만 원에 상당하는 관세를 납부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매대행업자가 관세 신고를 안 했다는 이유로 구매대행업자가 다시 화주와 연대책임을 진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세관 입장에서 뭔가 거짓 신고, 낮은 가격으로 신고된 게 만약 적발이 됐다고 하면 관세를 덜 냈으니까 누군가한테 가 가지고 덜 낸 부분을 내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관 입장에서는 소비자한테 먼저 갑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본인은 이미 관세 포함된 가격으로 구매대행업자한테 줬는데 어찌 됐든 구매대행업자가 그것을 저가로 신고하게 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원래는 지금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데 연대납세의무의 요건에 거짓으로 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거짓이라는 요건을 빼면 구매대행업자 책임을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유상범 위원님 염려하시는 것은 연대납세의무를 하게 되면 구매대행업자가 내지 않은 경우 연대를 한 직구소비자한테 다시 한번 물리는 경우가 생긴다 이런 염려를 하시는 겁니다.

연대책임이라는 게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안 내면 나머지가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직구소비자는 이미 구매대행업자한테 관세를 줬는데 대행업자가 안 내니까 다시 소비자한테 또 물릴 수 있는 것이 연대거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이걸 안 맞다 이거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도 이미 연대납세의무가 있는데 요건이 너무 까다로워 가지고 구매대행업자한테 더 내게 하기가 어려우니 요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구매대행업자 책임을 좀 더 강화시키려는 것입니다. 직구소비자가 현행 제도 보다……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말씀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점을 기억하시고.

오기형 위원님 말씀 듣고 논의해 봅시다.

○**오기형 위원**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구매대행업자에게 기존 조건을 없애고 그냥 막 추가적으로 부과할 경우에, 사회가 요구하는 자신의 의무를 위반한 것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는 건데 이게 그런 근거가 충분하냐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구매대행업자에게 특별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그러고 나서 그 신고가 거짓인 경우에는 책임을 묻는 이런 메커니즘을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그냥 말씀만 듣고 보면 구매대행업자가 사고를 친 건데 사고 친 것에 대해서 요건을 면밀하게 해서 이런 것이 사고 친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연대책임을 저라라고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거짓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이 무조건 부과하는 게 맞냐, 이것에

대해서 여전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까 최기상 위원님 지적하신 논점과 오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논점이 똑같은 거예요.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천하람 위원 저는 오히려 정부안에 약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매대행업자가 관세분을 받았다는 게 증거가 명확하게 나오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당연히 나오니다, 조사를 나가면.

○천하람 위원 그러니까 예컨대 물건 가격이 있을 거고 관세분이라는 게 명확하게 있을 거니까 관세청이나 이런 데서 적발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확보해서 그게 확보되는 경우에만 연대책임을 물릴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천하람 위원 물론 뭔가 귀책사유를 물을 만한, 연대책임을 물을 만한 보다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좋을 텐데 지금 행정적으로 그런 것을 그 사람들에게 부과하는 게 프로세스상 쉽지 않고 어쨌든 명확하게 본인이 관세분을 받았다는 게 입증되는 경우에만 이것을 적용한다고 그러면 저는 정부안대로 해도 사실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최은석 위원 저도 직구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지금 정부안은 타당한 것 같고요.

제가 하나 질문이 있는데, 지금 혹시 구매대행업자하고 해외판매자 간에 여기서 누락되는 관세액을 서로 세어하는 관행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보통 특수관계, 해외에 있는 누군가 자기와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 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최은석 위원 어쨌든 해외직구 관련된 프로세스의 거래 투명성을 위해서 연대납세의무 부과해서 관세 포탈 안 되도록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전체를 바로잡을 수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관세정책관입니다.

현재 이 제도가 도입이 된 것은, 19년에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걸로 했었고 시행하면서 전체의 약 0.1~0.2% 정도 이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해외판매자가 특수관계인인데, 어쨌든 해당 국가에서 설립된 법인이잖아요. 우리로 보면 외국인이지요. 그것 관련돼서 양국 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취하든지 해서 이런 것들을 근절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도 되게 필요해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여러 가지 공방이 오고 갔는데 관세청하고 기재부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이게 맞는지 점검하고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위원장님, 하나만 말씀드리면 아까 논의 중에 연대납부의무를 화주에게 주는 게 부당하지 않냐는 말씀이 잠깐 논의가 있었는데요. 원래 수입하는 사람이 관세의무자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물론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원래 직구소비자가 부담자입니다. 다만 이 사람이 돈을 줘

버리면 그 사람도 책임지라는 거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그러니까 유상범 위원님 지적은 직구소비자가 이미 구매대행업자에게 관세를 냈는데 이 사람이 안 냈다고 해서 다시…… 연대책임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두 사람 공히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직구소비자에게 다시 한 번 더 부과를 해도 말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 지적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그것 부연설명을 좀 드리면……

○소위원장 박수영 됐어요. 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관세청하고 연구해서 빈틈없이 만들어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범 위원 제가 곧 가야 될 거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추가 의견만 좀……

○소위원장 박수영 추가 의견 또 있어요?

○유상범 위원 관세청 국장님.

○소위원장 박수영 없어요. 안 오셨어요.

○유상범 위원 안 오셨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세제실 관세정책관입니다.

○유상범 위원 정책관님, 소위 말해서 본인이 대행을 하면서 관세를 받았는데 결국은 그 관세 신고를 안 한 것 아니에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예, 제대로 안 했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지요? 그렇다면 이 구성요건은 대행자에게 행위 책임을 부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그렇습니다.

○유상범 위원 그렇다면 ‘관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화주의 관세납부에 대한 연대의무를 부과한다’ 이렇게 구성을 해 놓으면 좀 나올 거예요.

지금 행위 주체가, 화주가 마치 두 번에 관해서 책임을 지는 걸로 돼 있는데 화주가 대행자에게 관세를 이미 보냈다고 하면 화주는 관세 면책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만 입증을 하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유상범 위원 그러면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대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구조가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 놓으니까 화주가 돈을 냈는데 다시 또 같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형태가 되잖아요. 화주에 대한 연대채무를 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뀌어야지.

○소위원장 박수영 국장님, 잘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주세요. 관세청하고 조금 더 얘기해 보십시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8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법 제42조의2에 따른 가산세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사유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한 세액을 수정 신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11페이지 상단입니다.

특정 물품 수입 시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받기 전에 수입 신고를 했으나 심사 결과 신고 시보다 해당 물품이 고세율 품목으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부족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납부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고 납세자 권익 증진을 하려는 취지입니다.

현재 개정안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와 성격이 유사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통보 후의 수정 신고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감면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합리성이 있는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보고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품목분류 사전심사가 장기 지연될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판정이 어렵거나 그렇게 되면 WCO까지, 국제 관세기구까지 갔다 오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부담 문제를 저희가 감면해 주기 위해서 만든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부안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없으시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관세 감면 제조·수리 공장의 지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려는 내용입니다.

현황 부분입니다.

완제품의 관세율이 원재료의 관세율보다 낮은 역관세 현상, 즉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이 세관장이 지정하는 공장의 항공기 또는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제조·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품과 원재료에 대해서 관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정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고 갱신 여부를 기한마다 다시 재심사를 하는 방식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다수의 지정공장이 갱신을 반복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세관당국의 관리하에 보다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적용되고 있는 보세공장의 특허기간이 10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세율불균형 물품 제조·수리 공장에 대해서 중소기업체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업체 부담 경감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세율불균형 물품의 감면에 대해 필요한 제조·수리 공장 지정기간을 보세공장과 똑같이 10년까지 확대하려는 사항이고요. 현재까지 운영해 본 결과 그간에 지정하고 3년이 지난 다음 요건의 미달로 지정 취소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연장되는 걸 감안해서 10년까지 운영할까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역관세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잠깐 전문위원도 그 말씀을 주셨는데 보통 관세라는 건 예를 들면 부품에 1% 관세가 되면 그 부품들을 모아서 완제품이 되면 보통 완제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면 5%를 붙인다든지 그게 통상적인데 이거는 반대인 케이스다. 왜냐하면 부품에 대한 관세율은 높고 완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낮는데 왜 이런 제도가 있느냐?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완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생산이 안 된다는지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항공기 같은 건 국내 생산이 없기 때문에 항공기를 싸게 들여오려고 관세를 안 매기는데…… 항공기 전용 부품이면 그 부품 자체도 사실 관세를 안 하면 좋은데 항공기에 쓰이는 부품 중 항공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서 범용으로 쓰이는 부품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좀 높게 매기고 그러고 나서 항공기에 쓰일 때 이거는 따로 처리를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공기하고 반도체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부안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21페이지입니다.

앞부분은 중소기업 관련 제도였고요. 이거는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제조 또는 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원재료 중 WTO 민간항공기협정 대상 품목에 대한 관세 면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거나 영구적으로 면제하려는 내용입니다.

3건의 안이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님안은 2028년까지의 수입신고분 100%의 관세를 감면하는 안이고, 정태호 의원님안은 2030년까지의 수입신고분 100%의 관세 감면 이후에 2034년까지는 차레대로 20%씩 감소하는 감면율을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진성준 의원님안은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를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면제하는 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5페이지,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내 항공정비산업의 가격 경쟁력 확보의 필요성과 민간항공기협정에 가입하거나 국내 법으로 관세 면제를 하고 있는 미국, EU, 일본 등 해외 주요국 사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관세 감면으로 특정 기업에 혜택 집중의 우려가 있을 소지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산업과의 과세 형평성 문제 등도 아울러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입장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항공 MRO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필요성은 있지만 다른 분야와의 과세 형평성이나 특정 기업에 혜택 집중 우려 등을 감안해서 TCA 비대상 품목은 올해 종료가 되니까 이대로 종료를 하고 TCA 대상 품목에 한해서는 일정 기간 연

장하고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현재 정부안은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부안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작년에 저희가 1년만 연장했는데 그때는 TCA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계속 TCA를 핑계대니까 했었는데 지금 TCA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장님 중에 누구 아시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추가……

○소위원장 박수영 예, 세제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작년에 그렇게 의견 주서 가지고 저희가 부처들하고도 또 한 번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계속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나 이런 데는 결국은 WTO 협정에 가입을 해서 아예 원천적으로 면제를 하자 이런 입장이고 항공청이라든지 이런 데는 우리나라 부품산업을 좀 더 키워야 되니까 아직은 그런 WTO 협정에 가입하는 것보다는 현행 체제하에서 가는 게 맞다, 이래서 계속 약간 평행선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때 확인해 보기로 했는데 여전히 전과 입장이 똑같군요. 국토부랑 항공청 입장이 다르다 이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들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냥 3년 연장해 줄 것인지, 정태호 의원님안처럼 5년 연장해 주고…… 그때까지는 TCA 가입이랑 결판이 날 거라고 보고 아마 정태호 의원님은 20%씩 감면하는 안을 내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의견 좀 말씀해 주시지요.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항공청도 입장이 있기는 있겠지만 어쨌든 사실 지금 우리가 항공기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관세가 없지요. 그런데 저는 이 분야에 대해 아주 자세히 아는 건 아닌데 아까 말씀했던 원칙 그런 걸 봤을 때, 항공기는 관세가 없는데 여기 부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고 하는 것도 좀 부자연스러운 것 같고. 다만 앞으로의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니까 한 3년 정도 연장하는 박수영 의원님안 정도로 가면 어떻겠나 싶은 게 제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TCA가 진짜 5년 뒤에 제대로 된다는 보장은 지금 현재 없는 거 아닌가요, 정태호 위원님? 된다면 이렇게 좀 감면해서, 압박을 좀 하는 거는 있는데.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저는 천하람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일단 3년 정도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일단 연장하고 TCA 진행 상황을 한번 지켜볼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년 연장하는 안으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위원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의결을 위원장님안으로 하시는 건가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면 TCA 비대상 품목에 대해서도,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위원장님안은 그것조차도 현행 유지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습니다. TCA 비대상 품목……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비대상 품목은 원래 종료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안은 혹시 그것조차도 종료를 안 시키고……

○**소위원장 박수영** 지금 3년 연장하는 걸로, 제 안이나 정태호 의원님안이나 전부 다 그렇게 돼 있는 상황이지요. TCA 비대상 품목……

○**전문위원 정지은** 지금……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정지은** 현재 개정안의 내용은 TCA 대상 품목에 대해서 연장하는 안이고요 나머지 비대상 품목은 현행 일몰 연장 규정에 따라서 종료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 되겠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3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과 검토의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세조사 중복조사가 금지되는 대상을 이미 조사받은 조사 대상으로 한정하고 그리고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시점을 현행 조사시작 15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관세청 훈령으로 규정 중인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 등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이고, 관세조사와 관련해서 현행 기준과 절차 등을 보완하려는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관세조사와 관련된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서 중복조사 가능 범위를 조사 통지에 기재된 조사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15일 전에 통지하던 것을 20일 전에 통지함으로써 조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납세자가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합리적인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의견……

최기상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최기상 위원** 여기 34페이지의 현행에 ‘이미 조사받은 해당 사안’ 이렇게 돼 있고요. 개정안에 ‘이미 조사받은 조사대상’ 해 가지고 괄호로 설명을 해 놔놓아요. 그러면 현행 조항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 괄호 안으로 조금 한정된 거잖아요. 한정된 것 외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관세조사 통지서라고 내보내는데요. 거기 보면 관세조사 사유, 관세조사 범위·기간·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 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포커스 맞추려고 하는 것은 관세조사 범위와 기간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 가지고 그것이 중복이 된다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하려고 그러합니다.

○**최기상 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이미 조사받은 해당 사안’이, 지금 가령 정부 개정안에 의하면 이게 좀 포괄적이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맞습니다.

○**최기상 위원** 오른쪽에 괄호 열고 설명을, 이렇게 한정을 하셨는데 제가 질문드리는데 이 괄호로 한정된 거 외에 다른 사안이 어떤 게 상정 가능한지를 여쭙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를 들어서 나는 A·B를 보겠다라고 하면 나중에 문서로 A·B는 중복조사 아니냐 할 수 있는데 그 문서가 없으면 분명히 ‘그날 A·B·C를 받았는데 C는 어떻게 되냐? C는 받을 수 없다’라고 그쪽에서 주장할 거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A·B만 본 거 아닌가’ 나중에 이렇게 되니 문서로 남겨서 A·B만 중복조사이고 C는 아예 조사한 적이 없으니 조사되도록, 나중에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최기상 위원**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많습습니다, 현실에서는.

○**최기상 위원** 잘 고치셨어요.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보세공장 생산 물품의 과세 방법 선택 시기를 수입신고 전으로 조정을 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다음 페이지의 표와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의 표를 보시면 보세공장 생산 물품의 과세 방법과 관련해서 제품과세를 하는 방식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내외국 원료 혼용비율로 배분해서 과세하는 혼용비율 제품과세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 또한 제품 제조에 사용된 외국 원료의 세율 가격으로 과세하는 원료과세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과세 방식을 선택하는 신고를 지금 현재는 혼용비율 제품 과세인 경우에는 원료의 혼용 전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원료과세인 경우에는—43페이지의 표를 보시면—현행 방식은 사용신고 전에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 신청기한을 지금 일반제품 과세와 마찬가지로 일괄해서 수입신고 전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인 외국 물품과의 과세 형평성 제고 측면이나 현재는 관세행정의 현대화에 따라 혼용비율 제품과세·원료과세 물품에 대한 사후 확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에서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업에게 유리하게 제도를 바꾸는 내용입니다. 보세공장 제품 물품을 해외로 나가지 않고 국내로 반입할 때 처음에 과세 방법을, 아까 전의 그림 1·2·3 중에 3이 제일 유리하고요. 2 그다음에 1이 제일 안 좋은 사

항인데 신청 시기를 놓쳐 버리면 1번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미리 신청을 해야 되는데, 언제냐면 만들기 전부터 신청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놓쳤을 경우에 기업이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뒤로 해 가지고 실제로 국내에 반입하는 그 순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저희가 허용해 주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보세운송 시 운송수단 관련 의무를 명확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황 부분입니다.

현행법은 보세운송과 관련해서 운송수단과 관련된 의무 그리고 이를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에 관한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운송 수단을 정해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한 운송수단을 이용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현행 규정이 해석상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 내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보세운송과 관련해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그리고 의무 불이행에 따른 행정상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차원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전문위원 말씀처럼 규정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보세운송 이렇게 된 트럭만 이용하라 이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애초에 신고된 그 번호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행 규정이 ‘신고, 승인받은 경우 그 운송수단을 이용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신고를 안 하면 이 규정의 적용을 안 받느냐라는 반대해석 비슷한 그런 문제를 많이 하셔서 가지고 아예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명확화한 것이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소액화물에 대해서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현행법상 물품 중에서 세관장은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소액물품이고—그리고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담보제공, 통관보류·허용, 유치·유치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생략하고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간소화 조치를

법률에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51페이지 부분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액·다건 위주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동일한 절차를 적용할 경우에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행정상 부담을 감안한 조치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검토의견 두 번째 동그라미 부분입니다.

상표권 침해 의심물품에 대한 통관보류에 대해서 간이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상표권자와 화주의 권리 보호 절차가 일부 제한되는 측면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일정 가격 이하 물품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또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소액·다건 위주의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단속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측면이라는 점을 감안하셔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 이 지식재산권 보호 절차는, 예전에 한 품목을 대량으로 들고 올 때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 놔는데 지금은 해외직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품목은 엄청나게 많은데 건건이 들어오는 이거를 다 옛날 방식으로 할 수 있느냐, 실제로 관세청에서 그게 너무 부담이 되고 방법이 없으니 그 많은 여러 가지 지식재산권 중에서 상표권과 관련되고 소액화물의 경우에는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통관보류, 유치·유치해제 이런 것들을 전부 줄이겠다는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56페이지입니다.

택송품 운송 시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대상을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58페이지 그림 이하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송품의 배송과 관련해서 현행법은 택송품 운송업자가 우편법에 따른 일부 예외 규정을 제외하고 통관목록에 적힌 물품수신인의 주소지가 아닌 곳으로 택송품을 배송하거나 배송하게 한 경우에는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태호 의원님안은 택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를 경우에 택송품 운송업자가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세관장에게 실제 배송한 배송지 정보를 제출하도록 규정을 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이에 더해서 물품수신인의 주소지와 다른 곳으로 배송하는 경우에 현재는 우편법상으로 배송지 제출 의무 관련 예외 조항이 있는데 그 예외 단서 조항을 삭제해서 배송지가 실제 물품수신인의 주소지와 다른 모든 경우에 전체를 다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57페이지 부분입니다.

지금 택송품 운송업자는 DHL 등 국제 특송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배송하는

자는 국내에 위탁한 택배회사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행을 고려할 때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에 실제 배송지를 국내 택배업자들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물품 관련 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61페이지,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내용 중에서 실제 배송지 제출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부분은 정태호 의원님안과 그리고 정부안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인데요. 현재는 우편법 제31조 단서의 예외 조항 내용이, 관리사무소 등으로 배송을 한다든지 실제 수취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우편법상 예외를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취지는, 특송물품을 통해서 유입되는 마약류 등 유해물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그런 취지를 감안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2페이지 부분입니다.

과태료 부과 규정 부분입니다.

정태호 의원님안은 실제 배송지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에 개정안에 따른 단서 사유를, 그러니까 이번에 운송업체에 대해서 실제 배송지를 제출하게끔 하는 단서 조항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삭제를 하는 안이고요. 정부안은 그 단서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포함하는 안입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 개정안 단서에도 불구하고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이행 주체는 해석상 위탁자인 탁송품 운송업체로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개정안 단서를 제외할 실익은 크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과태료 부과 대상을 본문으로 한정할 경우에 실제 배송자가 실제 배송한 주소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등 관련 의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탁송품 운송업체의 과태료 면제 사유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측면에서 전체 조항을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는 부분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해외직구 물품이 사실은 소비자한테 편리하지만 저희들이 국경을 관리할 때 보면 마약 밀반입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도 같은 게 있는데 막 쪼개 가지고 보낸 다음에 다시 다 몽치면 관세를 탈루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배송지 주소가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일부러 주소지를 다르게 해 놓고 여기 와서 다른 데로 배송해 달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저희가 찾아낼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현재는 탁송품 운송업자가 이걸 부담했지만 실제 배송한 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그게 일어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체제를 저희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만든 제도고요.

또 우편법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봤는데 우체국 소포라고 그건 다를 거냐, 여전한 위험에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서함이나 이런 데 보냈을 때 저희가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것도 실제 배송지를 찾겠다라고 해서 우편법 단서 조항을 빼 버렸고요. 과태료는 전문위원 말씀처럼 정태호 의원님안 플러스 정부안의 추가 안까지 다 같이 넣어야지만 이해할 때 클리어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위원님, 차관님이 잘 설명한 것 같은데……

정일영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다.

○정일영 위원 이게 직구 같은 특송 관련해서 아까 차관님 말씀하신 거는 마약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일영 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에서 마약 위험국으로 바뀌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 대책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고치면 이런 마약 단속이 더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뜻입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실제 배송된 위치를 저희가 알게 되니까요. 그게 의심되는 곳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곳을?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데 그 사람들이, 이런 마약 물품 취급하는 사람들이 과태료 무서워서 그걸 안 할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박금철 아니, 그분들이 아니고요. 누군가한테 마약을 배달한 사람이 있으니까, 어디로 갔는지를 알면 도대체 이 마약을 누가 시켰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약을 시킨 사람이 아니고 배달한 사람은 정확하게 주소를 아니까 어디 갔는지……

○정일영 위원 그건 알아요. 다 이해했는데 정확한 주소를 제대로 기입을 안 하거나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야 과태료 처분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뜻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한 게 아니고요. 실제 택배함에 있는 주소지랑 다른 곳으로 갔으면 그 주소를 알려 달라는 겁니다, 저희한테.

○정일영 위원 어쨌든 그런 취지인데 그런 경우에 마약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실효성 확보가 과태료 가지고 되겠느냐, 그게 마약 단속의 실효성 확보로 연결이 된다면 과태료 처분이 약한 거 아니냐 제 얘기는 그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도 위원님 취지는 이해합니다. 이 과태료의 부과 대상은 택배회사입니다.

○정일영 위원 택배회사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택배회사는 과태료도 부담스러운 거지요, 정부로부터 과태료를 맞았으니까.

○정일영 위원 그러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 택배업체입니다.

○정일영 위원 택배업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마약업자가 아니고 택배업체……

○정일영 위원 아니, 당연하지. 마약업자야 구속시키고 형사처벌 하는 거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오기형 위원 형법 따로 있고.

○정일영 위원 그렇게 따로 있고.

(웃음소리)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탁송품 운송업자는 정부로부터의 과태료도 일단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일영 위원 하여튼 마약 단속의 실효성이 있다고 그러는데 과태료가 약하다 그 얘기예요.

○소위원장 박수영 하여튼 이 단계부터 한번 시행해 보는 게……

○정일영 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지요?

○정일영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불법·불량·유해 물품에 대한 정보 등의 제공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안입니다.

2개의 안건입니다.

차규근 의원님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에 대해서 해당 정보의 제공을 관세청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고 정부안은 취지는 동일하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구비조건 등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중앙행정기관의 신청 거부, 반려 이유를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6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관세청이 각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할 수 있는 수출입 물품 안전관리 관련 위험정보를 선제적으로 보유하고 그리고 관련 유해물품들의 반출입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할 조치로 보았습니다.

68페이지 부분입니다.

개정안의 문안 해석과 관련해서 차규근 의원님안에 따를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사유가 아닌 행정청의 재량으로 수출입 허가의 신청 불허, 반려한 물품 등이 있는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세청장에게 제공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 소지가 있어서 관세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요건을 한정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세관에서 미리 사전에 정보를 갖고 들어오는 물품을 관리하려고 하는데 현재로서는 위반한 품목만 돼 있지, 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수출 허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된 경우도 사실은 이게 우회로 들어올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목록을 저희가 받고 싶어서 추가한 내용이라고 생각되고요.

조문상으로 보면 차규근 의원님안이랑 저희 정부안이 비슷하지만 저희는 목적을 더 추가했습니다. 법정 조건 등에 부합되지 않아 반려된 경우인데 차규근 의원님안처럼 목적이 없으면…… 허가가 반려된 모든 걸 다 저희가 받는 거는 그것도 정보의 과도한 제공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목적 조항을 추가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차관님, 정확한 실례를 들어서 한번 물어봐야 되겠는데 직구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직구한 유해·불량 물품이 세관을 통과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정보 제공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거는 다른 중앙행정기관에 수입 신청을 했다가 반려된 품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면 무슨 환경 물품의 요건을 어겼다가 의약품이나 이런 데 관련된……

○정일영 위원 무역업 하시는 분이 수입을 했다가 기준에 안 맞아서 반려한 케이스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환경부 기준에 안 맞았는데…… 그분이 직구로 뭔가를 수입하려다가 환경부 기준에 따라서 반려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제가 한 경우를 간단하게 짧게 1분만 얘기할게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에서 직구를 두 가지 했었는데 하나는 머리에 바르는 샴푸 같은 거예요. 하나는 뽑는 거고 하나는 바르는 건데 바르는 건 통과되고 뽑는 건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 안 된 이유가 뭐냐’ 하고 국회의원이라고 안 하고 그냥 시민으로 물어봤더니 그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기준은 어디 있냐고 했더니 식품의약품처인지 어디서 만들었대.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만들었는데 그러면 어떻게 통관할 수 있냐? 소비자, 국민이 그것 통관이 가능하다는 입증 서류를 모두 만들어 가지고 찾아오래요. 그것 안 찾아오면 폐기한대. 참 어떻게 그런 행정이 있나 싶더라고. 이게 유사한 것 같아 가지고, 똑같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국민들 편하게 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수영 정 위원님, 여기는 유해물품이고 그것은 유해물품 아닌데 지금 규제하고 있는 것이고……

○정태호 위원 밀수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나 보지.

○정일영 위원 그렇게 보였나?

(웃음소리)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이것도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사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진 의원님안과 정부안입니다.

주요내용 및 검토의견을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휴대품 및 휴대품 소지 여부를 검색장비를 사용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의 법률상 근거를 명시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검색 결과에 따른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는 부분입니다. 검색장비를 활용해서 여행자 등을 검색한 결과 마약류 등의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그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유해물품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신체 검색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입법취지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는 현행에서도 관련 장비를 통한 검색과 신체 검색에 관해서 시행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법률에, 법적 근거가 없는 부분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개정안과 관련해서 일부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들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물품을 휴대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물품을 내보이고 또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의심되는 경우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자의적인 해석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그리고 또 신체 검색 관련되는 부분은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조치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형사절차의 강제수사와 동일한 수준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서 형사소송법 등의 유사 입법례와 같이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관련 문안을 수정의견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체 검사 요건의 일환으로 여행자 등이 숨기고 있다고 의심되는 물품의 종류 중에 마약류를 각 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마약류로 내용을 한정하고 있는데 작년 말에 개정된 법 제234조의2(마약류 등의 수출입 제한) 규정에서는 마약류 외의 원료물질 그리고 임시마약류 부분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마약류 외의 원료물질, 임시마약류까지 같이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4페이지의 여성에 대한 성년 여성의 검사 의무 규정입니다. 이 부분은 신체 검색을 할 때 여성에 대해서는 성년 여성이 검사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여성 인권 등의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공항 통과할 때 탐지기를 통과한 다음에 이상하다고 하면 신체 검사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관세법에 보면 물품의 검사는 돼 있지만 신체 검사와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현재 관세청 훈령으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에 공항에서 이것에 대해서 근거가 없으면 못 한다고라고 좀 소동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체 검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문을 저희가 제안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담은 거고.

전문위원께서 수정의견을 내신 건 저희가 다 수용할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방금 자료를 배포했거든요. 수정안이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미리 정부 측에서 보셨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같이……

○소위원장 박수영 같이 만든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다 수용하겠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첫 번째는 ‘상당한 의심’이라는 표현이 추가돼야지만, 이게 형사소송법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마약류 그리고 마약 원료물질, 임시마약류를 다 포함해서 ‘마약류 등’이라고 정의 조항을 하나 넣고 관련된 관세법 조문 한 4개 정도를 다 같이 동일하게 고치는 내용입니다. 저희는 타당한 제안이라고 생각해서 수용할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새로 만든 자료 보시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법 근거 없이 신체 검색을 한 거예요, 부령으로? 무슨 영으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관세청 훈령, 그러니까 법에 신체 검색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현행법 규정 보면 없네요.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물품의 검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물품을 검사하다 보니 신체 검사까지……

○정일영 위원 그런데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일종의 훈령? 뭘로 했다고 그랬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관세청 훈령으로 있었습니다, 신체 검색에 대해서는.

○정일영 위원 그러면 그것 상당히 문제가 있었네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 신체 검색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몸을 뒤지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축소검사입니다.

○정일영 위원 몸을 뒤진다고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어디 밀폐된 공간에 가서 예를 들자면 옷을 다 벗게 하고……

○정일영 위원 엑스레이나 여러 가지 기계를 통해서 1차 하고 은닉했다 싶으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상한 부위에 숨길 수도 있으니까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뽀뽀가 나면 그다음 단계……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신체 검색이라는 것이 그냥 다 통용되는, 우리가 상상하는 의미로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신체 검색은 다 하지요? 하고 있지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예, 하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것은 똑같이 신체 검색, 여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계 통과해서 문제가 생기면 축소검사를 하도록, 그렇게 단계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마약이 문제가 되는데 마약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어려운 부위에다가 넣고 하잖아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예,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찾아내기 위한 신체 검색을 얘기하는 거고, 여성까지 다 포함해서. 그래서 법 규정을 이번에 새로 넣는 거다?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그렇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전혀 없겠습니까?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종래에 세관에서 그렇게 활동을 해 왔었는데 요즘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다 보니까 국민들 일부는 ‘근거를 대라.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항의하는 게 있고 이래서 세관에서 실제 집행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법에다 근거를 확실하게 박아 넣게 되면 충분히 근거를……

○정일영 위원 이건 마약이라든지 특별한 경우니까 인권침해 이런 소지는 없는 거지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예,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 입법조사관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넣어서 인권침해 오해의 소지를 좀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정일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지난번 국감 때 이 이야기가 한번 질문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마약류 관련해서 국가의 수사기능 자체가 재조정되기 때문에 관세청 특사경에서의 수사 방식 또는 점검시스템과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업 구조를 잘 정리해야 된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지금 현재 행정법상의 행정조사 기능이 있고 사범, 범죄자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신체 구금에 관한 것이 같이 연결될 수도 있고 좀 구분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여기에만 넣는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래의 개념으로는 형사사범질서상 범죄자에 대해서 긴급체포, 구속할 수 있지요. 그리고 그다음의 질문이 ‘그러면 긴급체포 후 48시간 안에 사후 영장 발부됐냐’ 이 이야기가 따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행정절차로서 신체에 대한 검색과 그다음에 어떤 조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필요한 건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어쨌든 진행은 할 필요가 있는 건데 그게 이후에 수사로 이어지는 것과의 관계 속에서 정돈이 없이 이런 규정들만 계속 바뀔 경우 나중에 논쟁을 한 번 더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기왕에 준비해 온 것 개정을 하지만 실제 관세청이 지금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검찰개혁단과 같이 전체적으로 마약 수사와 관련된 절차적인 점검을 하고 그 점검 내용을 함께 국회에다 보고하면서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된다, 물론 전문 그룹이어서 더 잘하시겠지만. 그리고 나서 이 관련된, 행정 검사 절차에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정합성 있게 가는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나눠 주신 자료의 265조 2항을 보면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검색할 수 있다’ 이것은 이해가 잘 됩니다. 검색장비, 검색…… 저는 단어에 관해 여쭙보려고 합니다. 검색 이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3항에 가서 검색한 결과 이런 경우가 생기면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다고 똑같이 검색을 쓰셨는데 이 부분은 혹시 법률적으로 신체 검사하고 검색을 같이 쓰고 있는지 약

간 궁금해서요. 이때는 웬지 사람의 손이나 이런 걸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같이 그냥 검색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게 혹시 기존의 관세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굳이 검사라고 안 하고 다 검색으로 해서 그런 건지만 확인 좀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이것은 검사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조문 만드는 과정에서 검사와 검색을 그냥 혼동해서 쓴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최기상 위원** 차이가 좀 있나요? 차이가 어떻게 있나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검사는 좀 더 광범위한 범위의 개념이고, 검색이라는 건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뭘 검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이것은 다른 법률에 이와 같은 경우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나중에 조정하도록, 그것은 큰 문제는 아니니까.

○**전문위원 정지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최은석 위원** 저도 방금 신체 검색 관련해서 여쭙보려고 했는데 제가 신체 검색을 보고 딱 느끼는 감정은, 그냥 일반적으로 몸을 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요즘은 마약 같은 것은 먹기도 하고 또 신체 은밀한 부위에 숨기기도 하는데 신체 검색하면 약간 강제적인 신체의 전반적인 검사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법원의 영장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혹시 이런 데 대한, 예를 들어서 의심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아까 저는 그냥 삼키는 것만 얘기했지만 아마 또 다른 것 충분히 상정할 수 있을 텐데 당사자가 수치심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게 신체를 수색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법적으로 엄격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 당사자로 들어올 때 이 사람이 제가 되게 수치스러운 어떤 신체 부위에 손을 대거나 이렇게 할 때 그냥 단순하게 의심받고 있는 정황만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신체 검색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데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예를 들면 개인이 느끼기에 되게 수치스럽거나 억울하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 논점은 아까 오기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논점하고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이것 혹시 법제처와 사전에 협의를 해 보셨나요? 이게 영장 없이 이렇게 포괄적인 신체 검색을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결을 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저희들이 법제처랑 법무부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별다른 이견이 없었습니다.

○**박성훈 위원** 아, 그래요?

○**기획재정부관세정책관 최재영** 예.

○**소위원장 박수영** 앞쪽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가 들어가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

에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마는 우려는 좀 남아 있습니다.

이소영 위원님.

○**이소영 위원** 제가 이번에 기재위 국감 때 이것 관련된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부에서 자료도 받고 자료 서치를 하다 보니까 마약류 반입 의심이 될 때 신체 검색을 하는 것은 거의 우리나라만 제외하고 많은 선진국들이 이미 법제상 허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혹시 이미 논의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최근에 신체 은닉형 마약 반입이 되게 많았잖아요. 최근 유명했던 인천공항에 반입된 사건도 6명이 한 사람당 4kg 씩 마약을 그냥 몸 안에 붙여서 들어왔는데 제대로 검색을 안 하다 보니까 24kg이 반입 돼서, 한 달 동안 아무도 몰랐고.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만 법제도가 미비한 부분은 좀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지금 마약이 상당히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법제처하고 법무부 의견도 조회를 했다고 하니 전문위원실과 기재부가 합의한 이 수정안으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 안으로 가는 것으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하고 국제조세로 넘어가기 전에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관세법 마지막 안건입니다. 80페이지입니다.

이 건은 납부지연가산세에 관련해서, 이번 국세기본법 개정안에 납부지연가산세 관련된 정비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관세법에서도 준용하려는 규정으로 심사 결과에 따라서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조문 정리하는 차원의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조문 정리로 보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하고,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다가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전문위원님 뭐 의견 있어요?

○**전문위원 정지은** 마지막 부분은 국세기본법 개정안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정부안 받으시면 이것 그 심사 결과에 따라서, 국세기본법 심사 결과가 아직 잠정 합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때 국세기본법 논의하시다가 재논의하기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동……

○**소위원장 박수영** 그 부분은 재논의를 한 데 따라서 결정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효율적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4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1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조세소위 심사자료 9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83페이지입니다.

1번 항목은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국제거래에서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국외특수관계인의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현황 부분 하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상가격에 의해서 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인용되어서 해당 세금을 환급 받게 되는 경우 상대국에서 국외특수관계인 측의 수정 신고를 통해서 과세소득의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세부담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관련 소득에 대해서 이중비과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관련 조정 입증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정안이 제시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검토의견 세 번째 줄입니다.

상대국에서의 국외특수관계인 간 과세소득이 조정된 입증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해서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끔 개정을 하려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에서 국제조세와 관련된 부당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는,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건 국제조세 단계에서 생기는 가격에 대한 문제인데요. 예를 들어서 특수관계인 회사가 베트남에 있는데 베트남에서 물건을 샀을 때 100원으로 샀다고 해 놓고 세금을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쪽에서 '120원이었는데 잘못했다. 100원을 120원으로 올려 달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비용이 120원으로 늘어났으니까 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줬더니, 나중에 봤더니 베트남에서는 120원에 판 게 아니고 여전히 100원 받았고 그쪽 신고에서는 120원으로 올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해 줄 때 베트남에서 진짜 실제로 그걸 120원에 팔았다고 해서, 베트남 국세청에 세금을 더 냈는지 그걸 갖고 와라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약간 세테크처럼 이걸 악용하는 조치가 있어서 자료를 더 청구하게 된 계기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기 전에 83쪽 보면, 이래서 이게 5년간 세가 증한다는 거예요, 감한다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증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모 표시 안 돼 있는 건 전부 증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정지은 예.

○소위원장 박수영 어떻게 막 뒤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환급을 덜 해 주니까 저희한테 늘어나는 겁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거주자증명서의 발급 대상에 투자신탁 등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현재 국내 투자신탁 등의 명의로 해외계좌를 개설해서 소득을 지급받고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등의 적용을 받으려면 거주자증명서를 현지국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현행 규정은 거주자나 내국법인이 직접 관련 거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의 주요내용, 본문 부분입니다.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이 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과세 당국이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려는 것입니다.

투자자 편의 제고와 행정절차 합리화를 위한 취지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건 투자신탁회사가 해외에 자기 이름으로 국내인의 돈을 모아서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랑 조세조약이 돼 있으면 세금을 좀 깎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금을 깎아 달라고 요청할 때 주소를 내라고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는 투자신탁이나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서 주소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원래는 어떻게 하나면 가입한 내국인들 주소를 다 모아 가지고 보내 줘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A 회사라고 들어와 놓고 주소는 각각의 다른 이름으로 되니 해외에서 부인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신탁의 이름으로 거주자증명서를 떼서 주면 이름이 동일하니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허용해 주는 근거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 내용이 긴데 전체 일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그러시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지금 90페이지에서 94페이지까지는 글로벌최저한세제도 추진 배경 설명 자료를 간략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부분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대한 주요내용 부분입니다. 연결매출액 기준 7.5억 유로, 약 1조 원 이상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 그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서 특정 국가의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이 적용이 되는 경우에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미달세액에 대해서 부과하는 방법은 소득산입규칙과 소득산입보완규칙에 의해서 운용이 되도록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페이지부터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글로벌최저한세제도 보완을 위해서 OECD 모델규정 및 행정지침을 반영하는 것으로 크게 내국추가세제도를 도입하는 내용과 그리고 2024년도 6월에 발표한 행정지침의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 중에 개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내국추가세제도의 도입입니다.

이 부분은 98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통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 B-1과 기업 B-2가 15%보다 저율과세가 되는 상황에서 소득산입규칙에 따를 경우에는 최종모기업이 위치한 A국에서 추가세액을 징수를 할 수 있게 되고 또는 A국이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라서 C국에서 추가세액이 징수가 됩니다.

이 경우에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일실될 우려가 있는 상황이지만 개정안과 같이 최저한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추가세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내국추가세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에는 15%에 미달하는 모자란 세금을 추가 징수할 수 있게 되는 내용입니다. 과세권이 해외로 이전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동 제도에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99페이지 부분입니다.

다만 앞서 보신 그림과 같이 부족세액을 추가 징수하기 위해서는 OECD 모델규정과 행정지침에 부합하는 형태로 내국추가세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적격내국추가세제도라고 부릅니다. 적격 여부를 판단을 할 때 OECD 모델규정 및 행정지침과의 부합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국추가세제도와 관련한 그 이하부터의 검토는 주로 모델규정 그리고 행정지침과의 부합 여부 그리고 해외 입법례 등과 견주어서 적합하게 도입되었는지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는 내국추가세제도에 관한 계산 구조를 일괄해서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먼저 실효세율을 계산하게 되고 그리고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내국추가세액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국추가세액비율에 국내 초과이익을 곱해서 내국추가세액이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지금 이하의 개정 조문별 내용들은 내국추가세액의 산정 방법, 계산, 부과 방식 등에 대해서 국내 적용을 위한 사항들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OECD 모델규정과 해석 규칙 관련해서 현행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내용을 상당 부분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내국추가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내국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는지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분자인 조정대상조세가 있고 분모의 순글로벌최저한 세소득 개념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재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관한 현행 국제조세조정법의 규정을 준용해서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OECD 모델규정과 일치하는 방식의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다음, 110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내국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개념들을 추가적으로 정의하려는 내용입니다. 내국추가세액의 신고 후 조정 등에 관한 사항과 실효세율의 계산식 또한 현행법상의 관련 조문을 인용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따라서 계산된 내국실효세율이 15%보다 적을 경우 부족세액을 추가 징수하게 되는데 개정안은 해당 부족세액을 내국추가세액으로 정의를 하고 그 계산 방식을 표안에 있는 식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모델규정 및 주석의 취지와 그 내용 면에서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았고 그리고 글로벌최저한세제도를 적합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내국추가세액을 과세하기 위해서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에 대해서 그 세액을 배분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글로벌최저한세 규칙과 동일한 배분 방식인 법정배분방식과 지정배분방식을 따르고 있고 최종모기업이 국내에 부재한 경우에는 법정배분방식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성기업이 의도적으로 담세력이 약한 구성기업을 지정해서 납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납세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납부세액에 앞서 말씀드린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내국추가세제도 도입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명확히 하는 입법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28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최소적용제외 특례가 내국추가세 적용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129페이지입니다.

OECD 모델규정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복잡성을 고려해서 각 구성기업의 매출액과 그 이익이 특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하는 특례인

최소적용제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내국추가세제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례를 두려는 것으로 모델규정 및 주식의 취지에 부합하는 입법 형태라고 보았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특례와 유사하게 개정안은 내국추가세에 대해서 소수지분구성기업에 대한 특례와 공동기업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림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4페이지 그리고 135페이지 함께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OECD 모델규정은 소수지분하위그룹 및 공동기업그룹에 대해서 별도의 그룹으로 보아서 실효세율을 계산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수지분구성기업인 경우에는 다른 구성기업과 일괄해서 계산할 경우에 저세율로 과세된 소수구성기업과 통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고, 옆 그림에 있는 공동기업그룹인 경우에는 회계 결과 어떤 계정과도 연결되지 않아서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개정안의 내국추가세 규정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과세의 일시를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이 도입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14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글로벌최저한세 규칙하의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를 내국추가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투자구성기업은 투자펀드, 부동산투자기구인 구성기업 등을 의미하는데 분배금을 실효세율과 추가세액을 별도로 계산하는 개별 계산방식과 투시과세처리방식 그리고 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식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내국추가세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OECD 모델규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았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145페이지 표와 같이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글로벌최저한세 규칙하에서 전환기 적용면제 등에 관한 특례를 내국추가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환기의 기한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적용면제 특례란 글로벌최저한세제도의 복잡성을 감안해서 실효세율이 충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와 기업에 대해서는 글로벌최저한세제도에서 요구되는 계산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특례를 의미합니다.

현재 OECD 모델규정은 소액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적용면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법도 이에 부합하는 형태로 입법이 되어 있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의 내용 중에 내국추가세제도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간 동안 특례를 적용하려는 내용은 OECD 모델규정 및 주식 등에 부합하는 입법 형태로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이 이에 더해서 전환기 적용면제 시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하는 규정을 제출하였는데요. 정부는 OECD 논의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현행 법률에 규

정되어 있는 기한을 시행령으로 위임하는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지금 현재 OECD 모델규정에 따른 주식상의 어떤 개정 내용에 변화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전환기 적용면제 기한을 OECD 협약 당사국 간에 합의해서 조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법률 개정이 아니라 시행령 개정을 해서 대응하려는 취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추가적으로 개정안에 따라서 적용면제 기한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한다고 하더라도 현행 OECD 모델규정이나 주석을 기준으로 할 때에는 현행법과 동일한 내용이 지금 현 기준으로서는 시행령에 입법이 될 예정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최초적용연도 특례를 내국추가세에 대해서도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최초적용연도 특례란 조정대상조세에 포함되는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에 대해 최초의 연도에 대해서는 예외를 부여하는 특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국추가세에 대해서도 동일한 특례 적용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현행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추가세액배분액 신고, 징수 등의 방식을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현행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의 추가세액배분액 신고, 징수 등의 방식을 내국추가세에 대해서도 좀 유사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고요.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이 세액배분액의 납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각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현행법도 세액에 관한 경정·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법인세법과 유사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정안은 내국추가세제도 도입으로 발생하는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경정·결정·통지·징수될 수 있도록 규정을 하려는 것으로 납세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해당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내국추가세와는 다른 내용으로 2024년 6월에 발표된 행정지침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서 현행법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는 입법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현재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서 실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해 기존의 부담세액을 순소득으로 나누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산정기준이 되는 부담세액은 조정대상조세라고 합니다. 이러한 조정대상조세는 구성기업의 소득 또는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 조정사항을 반영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조정사항을 반영하기 전의 부담세액을 대상조세라고 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 따를 때 대상조세는 다른 구성기업 등에 배분되는 절차를 거치기도 하는데 161페이지 하단의 일괄한도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와 162페이지 상단에 있는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하에서는 현행법에서 포괄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도 대상조세를 배분하

게 되거나 현행법으로 포괄하지 않는 대상조세 또한 배분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개정안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상조세의 배분 범위와 배분 대상이 되는 대상조세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내용입니다. OECD 모델규정 및 주식의 내용과 일치하는 방식의 입법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총괄해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역시 국제조세는 복잡합니다. 전문위원님, 이 복잡한 것 검토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차관님, 올해가 아니고 작년에 OECD가 지침을 바꿨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작년에 개정 안 하고 올해 개정하고 있나요? 2024년에 OECD 지침이 바뀐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OECD 지침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왜 QDMTT(내국추가세)를 올해 바꾸냐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작년에 OECD 지침 바뀐 것을 반영해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작년에 하지 않고 올해 한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가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올해까지가 일몰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만 하면 돼 가지고…… 사실 작년에 했어도 되지만 올해 안에만 하면 돼 가지고 올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기획재정부신국제조세규범과장 박은영 이번에 추가적으로 행정지침이 개정된 게 있어서 그것까지 한꺼번에 다 반영하였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올해 추가 지침 개정이 있어서 그걸 반영한 것이다.

차관님, 정부 측 의견 주실 차례인데 전문위원 검토와 다른 것만, 다른 내용 없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없습니다. 이게 다 정부안이고요. 전문위원께서 고생해서 잘 설명하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뭐 이미 다 아실 것 같아 가지고요.

○김영환 위원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다국적기업이 영국에 있는데 그 자회사가 우리나라에 하나 있고 일본에 하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세제상 15%보다 적게 낸다고 하면 이 세금을 누가 가질 거냐의 싸움입니다. 결국 과세권의 다툼인데요.

이번에 이 제도를 도입해서 퀄리파이드(qualified)된 DMTT를 도입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자회사에 대한 5% 차액은 저희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현행 OECD 규정상 영국에서 영국에 있는 기업에다 세금을 부과합니다. 영국이 하지 않으면 일본이 할 수 있는 게 세 번째입니다. 순서가 한국·영국·일본 순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하면 영국이나 일본이 이 과세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고 문제는 그렇게 되려면 퀄리파이드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OECD에 된 지침대로 저희가 개정해야만 그게 작동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이 세제실에서 근무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매우 간략하고 명쾌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과찬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우수 인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이것 매우 복잡한 겁니다만 혹시나 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국제조세라서 제가 알고 있는,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일단 좀 말씀을 드리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입법화가 되어 있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건 아닙니다.

○박성훈 위원 그건 아닌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이미 많은 나라들이 QDMTT(내국추가세) 도입을 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적용한 게, 예를 들어 OECD 모델규정이라든지 OECD 포괄적 이행체계(IF) 이것을 그대로 따라서 만드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OECD 모델규정을 따르는 겁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조세의 불확실성이 가장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 국제조세, 특히나 지금 말씀하셨던 IIR이라든지 UTPR이라든지 QDMTT 이런 거 적용과 관련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구글세 같은 지금 적용되고 있는…… 반대의 경우도, 우리나라 기업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오히려 해외에 나가서 일하는 이런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보지 않으셨나요? 조세감면 혜택을 목적으로 우리 기업이 해외에 나갔을 때 오히려 이 규정으로 인해서 그 혜택이 상당히 줄어들 수도 있겠다 이런 우려는 없을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지금 우리나라 기업 말씀하신 거지요?

○박성훈 위원 예, 우리 기업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만약 우리나라 삼성전자 기업의 자회사가 베트남에 있으면 우리나라가 내국추가세를 도입하든 안 하든 어차피 베트남이 QDMTT를 도입하면 거기서 과세를 맞는 문제입니다.

○박성훈 위원 그게 가입되려면 모든 국가들이 다, 지금 소재한 우리 기업들도 당연히 그 조약이나 협정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이게 글로벌최저한세에 가입된 나라들끼리의 문제인데요.

○박성훈 위원 그렇지요. 미국이 아직까지 필러 1의 기준을 못 받고 있는 거고 가입할 의지도 없는 거고,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은 필러 1은 아니고 필러 2고요. 말씀처럼 필러 1은 고정사업장이 없더라도 어떤 매출이, 예를 들면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고정사업장이 없는데 여기서 매출을 많이 일으키면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소위 말하는 디지털 서비스 택스라고 그래 가지고 많은 논의가 되고는 있는데 미국이 반대를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은 사실 도입되기가 쉽지는 않은 내용이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필러 2 같은 경우는 그것은 아니고 글로벌최저한세라고 해서 어디에 있든 15%만큼은 세금을 내라, 일종의 국가 간 조세경쟁을 좀 자제시킨다고 그럴까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요.

필러 2의 핵심에 세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아까 계속 전문위원님께서 얘기한 소득납입규칙, 보완규칙이 있는데……

○박성훈 위원 IIR, UTPR……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게 마지막 세 번째 세트입니다. 이것까지 되면 하나의 세트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제 결국 각국의 과세 당국 간 분쟁 가능성이나 이중과세 이런 부분들은 이걸로 완전히 해소가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것은 양자 간의 국제조세 문제는 아니고 어찌 보면 다자 간, OECD 모델규정을 따르는 나라 간의 문제인 것이고. 만약에 그것이 어떤 특정, 예를 들자면 일본과 우리나라 사이의 어떤 규정상…… 그런데 우리가 그 모델규정을 따랐는데 그 문제라고 그러면 아마 그건 양자 간의 문제라기보다는 OECD 모델규정 자체를 가지고 한번 다시 얘기는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양국 간에 분쟁이 더 생기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 제가 업계에 한번 물어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대요. 글로벌최저한세를 적용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예를 들어 미국이 IRA법을 통과시키면서 디렉트 페이(direct pay)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 오히려 글로벌최저한세율이 적용되면 QRTC(적격 환급세액공제) 이게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내어야 될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업계의 지적이 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맞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세제실은 어떤 식으로 검토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은 이것하고 직접 관련은 없고. 그런데 지금 소위 말하는 15%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도대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할 거고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의 문제인데요.

지금 말씀처럼 그런 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기업들의 어떤 계산 방식에 있어서 저희가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 국익을 반영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계속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미국하고 단독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OECD IF 틀 안에서 그 부분은 계속 저희 입장을 우리 기업의 이익 입장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래서 그거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그칠 게 아니라 저희가 이런 제도를 보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말씀하신 부분도 아마 이 큰 틀 내에서 전체적으로 우리 기업에 어떻게 더 혜택을 주거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을, 우리만의 고유한 규정을 넣으면 어떻겠냐는 위원님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한 가지 저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이 세 가지 과세 체계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OECD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피어 리뷰(peer review)를 통해서 입법화된 내용을 다시 한번 테스트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전체적인 논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특정 국가의 특별한 규정이 들어가게 되면 틀 자체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해 가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고유한 제도만 넣

으면 향후에 적격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래서 저희가 통상……

○**박성훈 위원** 결국 해석으로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니요, 해석 문제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OECD 모델하고 다른 뭔가 우리만의 것을 한다면, 우리 제도 자체가 OECD에서 인정을 못 받게 되면 저희가 여태 했던 IIR이든 UTPR이든 이런 것 자체가 아예 인정을 못 받는다는 그런 거고. 그래서 다자 틀에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면 결국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OECD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우리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것들이 OECD 모델규정에 포함되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좀 어렵긴 한데 중요하기도 하고, 제가 물어볼게요.

원래 디지털세 관련해 가지고 구글 같은 경우 매출에 비해서 국내에서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게 계속 얘기가 나왔잖아요, 구글 같은 여러 가지 해외 큰 법인들, 다국적기업들. 그때 우리 기재부에서 필러 1 도입을 추진하고 있었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저희가 OECD 차원에서 같이 그걸 검토를 했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지금 필러 1이 안 되는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지금 국제 논의가 그 부분은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러 1은 좀 지연이 됐고 필러 2는 그 부분 합의를 봐서 그걸 각국에서 입법을 한 거고 우리나라도 입법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정일영 위원** 몇 년 전에 필러 2보다 필러 1을 도입하려고 기재부가 앞서 검토도 하고 추진했던 걸로 아는데 그러면 필러 1은 지금 일단 스톱된 상태인가 보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계속 논의는 하고 있지만 필러 2에 비해서는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늦습니다.

○**정일영 위원** 특히 미국이 반대하는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많이 가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님 말씀처럼 처음에 필러 1이 많이 얘기가 나왔던 것이 소위 말하는 디지털 서비스 택스라고 그래 가지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고정사업장이 있든 없든 여기서 많이 매출을 일으키면 세금을 내라, 그래 가지고 유럽에서도 디지털 서비스 택스(DST)라는 걸 하려고 그랬고. 인도, 여러 나라들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보복 관세 비슷하게 굉장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논의가 중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지금 필러 1은 중단되고 필러 2로, 약간 우회로로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다른 겁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우회는 아니고요. 목적은 원래 달랐습니다. 필러 1과 필러 2가 목적은 달랐는데, 이것이 필러 1은 안 됐지만 다행히 필러 2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많은……

○정일영 위원 그러면 필러 1도 계속 추진할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 부분은 계속 국제 논의에 참여할 생각입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구글이라든지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필러 2로 가면 세금을 적게 낸다고 비난하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금을 조금 더 과세를 할 수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러니까 만약에 구글의 자회사가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기서 세 혜택을 많이 받아 가지고, 예를 들면 저세율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러면 저희가 내국추가세를 도입하게 되면, 그렇게 계산한 방식의 세율이 15%보다 낮게 되면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추가로 또 과세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일영 위원 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정일영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가질의는 없으신 듯하고요. 정부에서 어렵게 만들었고 전문위원이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정부안과 전문위원 검토안은 동일한 것이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한 가지, 심사해 주실 부분으로 보는 것은 145페이지 부분입니다. 이거는 내국추가세에도 이 내용이 적용되는 부분이지만 지금 글로벌최저한세 규칙에도 관련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일괄해서 개정안이 들어왔고. 내용은 적용면제 특례와 관련해서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로 이렇게 지금 법률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환기 사업연도’로 해서 시행령으로 위임해 달라는 의미여서 이 부분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바로 모든 나라에 이 제도를 한 번에 도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일종의 유예기간 같은 걸 준 게 있습니다. UTPR에 대해서 유예기간을 준다는지 여러 가지 그게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전환기 적용면제를 해 가지고 아주 간략하게 뭔가를 하면 그때까지는 봐주겠다 하는 게 26년 말에 끝나는 게 있는데 그거하고 별도로 UTPR에 대한 적용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그건 25년 말까지인데 사실 지금 그거를 연장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 OECD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가 조세소위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에 OECD가 언제까지 하자라고 하면 저희도 시행령 이런 거 필요 없이 바로 법에 시행 시기를 연장해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 주에도 계속 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정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이거를 OECD 논의가 어찌 되든 예를 들자면 ‘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이렇게 아예 해 놓고 OECD가 늦게 합의가 되면 다시 또 고치든지 아니면 일단 시행령에 유보해 놓고 내년 상반기에 합의가 되면 그거를 시행령으로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다시 소급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일단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행령에 시행 시기는 유예해 놓고 OECD가 합의하는 것에 따라서 시행 시기를 맞추면 어떨까 해서 저희가 법안을 낸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국제조세과장님, 뭐 보태실 얘기 있으니까, 국장님 말고 과장님?

○기획재정부신국제조세규범과장 박은영 아닙니다. 지금 계속 논의 중이고 이번 주에도 계속 밤에 화상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어 가지고 예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시행령으로 위임해서 OECD 합의가 되는 대로 바로 시행령에 넣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알겠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추가질의 있으시다고요.

○박성훈 위원 그냥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건데 지금 적용면제 기한 이거 하는 게, 결국 전환기 적용면제라는 게 제도 도입 후에 3년간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해서 편의를 봐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OECD나 이런 규정에 딱 기한이 명확히 박혀 있는데 이거를 굳이 시행령으로 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요.

○기획재정부신국제조세규범과장 박은영 지금 OECD가 그 행정지침 자체를 개정하려고 논의 중입니다. 박혀 있는 그 기한을 또다시 개정하려고 논의 중입니다.

○박성훈 위원 또 하나는 회계연도하고 세법상, 세무상 시기를 일치시켜야 되는 문제가 발생할 텐데 실무적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해결하는 건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여쭙 보고 싶습니다.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주신 말씀은 지금 적혀 있는 기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일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가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추가 의견은 없으신 것 같고 시행령 부분은 정부 측 설명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안대로 잠정 합의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지은 조세소위원회 심사자료 10권입니다. 소득세법·법인세법 파트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시작하기 전예요, 10권부터는 정부안이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이 내신 안들이 나오게 됩니다. 정부 측에서 의원님들 내신 안이라고 전부 부인하지 마시고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국내 운항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 급여 중의 일부를 비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건의 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문대림 의원님안은 내항선 그리고 연안어업 및 근해어업 선원의 급여 중에서 월 400만 원 이내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박성훈 의원님안은 국내 항만을 항행하는 상선에 종사하는 선원법에 따른 선원이 받는 급여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금액에 대해서 비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통해서 승선 근무 기피 현상과 내항선 선원의 고령화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입법이라고 보았습니다.

2024년 말 현재 기준으로 보면 내·외항 선원 간에 2~4배 수준의 임금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항선원에 대해서는 따로 월 500만 원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는 반면에 내항선원에 대해서는 승선수당과 관련해서 한 20만 원 정도 내외의 부과세가 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외항선원과 내항선원 간 세제 지원의 격차 완화도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또한 내항선원에 대한 부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 이내의 선원 승선수당은 1998년도에 정해진 것으로 최근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때 상향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해서 고려하실 부분으로 지금 근로자 임금에 대해서 부과세를 확대하는 경우에 다른 업종 근로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았고요. 그리고 외항선 등 국외 근로자에 대한 부과세 혜택은 외화 취득 그리고 장기간 해외 근무에 따른 근무 여건을 감안해서 해외 근무자에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특수성도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지금 부과세소득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안도 있는데 현행 부과세소득과 관련된 기준 금액 등이 시행령에 대다수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행 규정체계를 감안할 때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지금 조세와 관련해서 법률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추후에 이걸 시행령으로 위임할 경우에 부과세 범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공론화나 심의 없이 절차가 종료되는 문제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외항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금액 부과세 한도는 2011년도까지 월 150만 원 수준을 유지하다가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2024년 월 500만 원으로 최근 급격히 확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성 논의가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점 등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답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부과세 취지나 여타 근로자와의 형평성 그리고 해외 사례 등을 봤을 때 저희로서는 외항선원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국외 근로의 어떤 특수성 그리고 우리나라가 외화를 획득한다는 그런 점 등을 감안해서 한 경우이지 국내 근로자에 대해서 이렇게 부과세를 확대해서 적용한 사례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내 근로자의 경우에는 저희가 식비나 연구비, 취재수당, 벽지수당 등에 대해서 월 20만 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내항선원 소득만 늘렸을 경우에 열악한 근로 환경에 있는 나머지 국내 취약 근로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운송업자라든지 다른 청소 근로자라든지 많은 직역에서 이 부분에 대해 동일한 취급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로서는 조세제도를 운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외항선원과 이거의 차별을 이유로 한다면, 동일하게 건설업에 있어서도 국내와 국외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 건설자에게도 똑같은 이걸 해야 되느냐도 문제가 될 거고 또 이걸 올렸을 때, 해외에 계신 분 중에 건설하고 선원 말고 나머지 분들은 100만 원의 비과세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외에 있는데 100만 원 받는 분들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문제도 똑같이 등장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조세제도 형평성을 봤을 때 현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외항선원이 500까지 작년에 올라간 걸로 돼 있는데 이것은 시행령 개정 사항이었습니까, 우리가 논의 안 했던 거 같은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시행령 사항이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시행령 사항에서 너무 많이 급격하게 올려 준 면이 있군요.

법안을 발의하신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차관님 말씀하신 내용 중의 일부는 공감하지만 대부분은 제 입장에서 좀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국내 근로자, 특히 건설 근로자 말씀하셨는데 국내 내항선을 타고 있는 또는 연근해어업을 하고 있는 내항선원들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같은 해역에서 유사한 위험 한도를, 위험을 안고 있는 그리고 작업 강도가 비슷한 2개의 직역을 놓고 비교했을 때 외항선원과 내항선원이 말 그대로 25배의 비과세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일단 논리적으로 조금 성립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내에 있는 일반 근로자들과 다르게 내항선원들 같은 경우는 국가 비상시에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그런 역할을 맡는 분들입니다. 특히나 국가의 물류망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국내에 있는 일반 근로자 또는 해외에 나가서 일하시는 건설 근로자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결국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가장 크게 문제되고 있는 부분은 신규 인력이 유입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내항선원의 연령이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결국 고령화로 이어지고 있는 이 구조적 문제를 풀지 않으면 앞으로 국가 전략물자 수송이라든지, 현재 유인도가 약 한 480개가 되는데 이분들의 발이 되어 주거나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이런 기간산업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나 임금 수준을 보더라도 내항선과 외항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결국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볼 때 앞으로 정부가 내항선원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있지 않고서는 현재 외항선원과의 격차는 상대적 불평등만 또는 상대적 박탈감만 더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가 아마 1998년도에 20만 원 됐는데 그때 이후로 외항선원은 급격하게 비과세 한도가 늘어났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정부에서 고려를 해 주시고, 앞으로 어선들 그리고 선원들 그리고 우리의 바다를 지킬 이런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아마 국가의 기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어업과 연근해 어업 앞으로 굉장히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전환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발언 신청하신 순서대로, 정일영 위원님 그다음 최은석 위원님 순으

로 질의하시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정부 측에서 너무 옛날 사고방식이라고 그럴까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가는, 못 읽는 답변으로 저는 보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려고 그러는데요. 외항선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 주던 게 언제부터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74년입니다.

○**정일영 위원** 74년이지요, 1974년. 그때 우리나라가 막 수출로 성장하기 위해서 외항선박을 지원해 주고 국가적으로도 수출하기 위해서 해운항만청을 만들어 가지고 외항선사를 굉장히 지원할 때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제도가 도입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많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외항에 대한 중요성도 전에 비해서는 줄었고 또 항공으로도 많이 실어 나르고, 우리나라 산업 자체가 그렇게 부피가 크지 않은 반도체나 바이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내항 이쪽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해수부에 1년을 국장으로 가 있었는데 여러 군데를 봤지만 바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제일 고생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진짜 그걸 아주 뼈저리게 실감나게 경험을 해 봤는데. 바다에서 그 고생을 하는데 지금은 외항의 시대보다…… 그걸 벌써 한 50년 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항에서 연근해어업하는, 수산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어렵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략물자 그런 거라든지 내항 여객선 등등도 근무환경이나 사업하는, 기업하는 환경 또 기업 내부의 수익성 등등 이게 어렵고. 또 거기에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줄어 들고 이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우리 인천에서 봐도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서 내항 이쪽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다 이쪽에서 근무하는 그분들의 노동 강도를 감안할 때도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선원 인력난 이런 거 감안해서도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비과세를 얼마만큼 할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문대림 의원안은 급여 중 월 400만원 이내이고 박성훈 의원님안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다른 산업하고 비교한다든지 등등 감안해서 정부 측에서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외화 이런 얘기 하셨는데 외화가 필요해서 중동의 사우디에 우리 건설인력들 가서 고생해서 벌고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바뀌었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감안 하셔야 된다는 소리고.

다른 산업, 건설 이런 거 얘기하셨는데 내항·외항 바다에서 일하시는 분들하고 육지에서 건설 쪽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하고는 근무 환경이나 강도 이런 게 전혀 다르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데, 이게 더욱 확산돼서 비과세가 막 여기저기 더 뻗어 나가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이런 것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은 최은석 위원님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최은석 위원** 차관님이나 실장님, 외항선원에 대해서는 월 500만 원 이하 비과세 해 주는데 혹시 건설도 지금 500만 원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최은석 위원 나머지, 혹시 항공이나 기타 다른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게 얼마쯤 돼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일반 해외근로자는 100만 원입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면 외항하고 건설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씩 해 준 무슨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뭘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게 워낙 오래된 제도인데 추측건대……

○최은석 위원 아니요, 500만 원은 24년도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 제도 자체가 왜 들어왔냐는……

○최은석 위원 외항하고 건설에 대해서만 다른 업종과 다르게 월 500만 원이나 이렇게 금액을 과다하게 해 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94년도까지는 다 똑같이 100만 원이다가 99년부터 제도가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반 해외근로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데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그때도 결국은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 건설 근로자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배려 차원……

○최은석 위원 이게 결국은 인력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인력난? 해외의 외항선을 타려고 하는 외항선원을 모집하기 어려웠거나 작업환경이 워낙 열악했겠지요. 그런 이유로 해서 비과세 한도를 이렇게 점점 높이지 않았을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당연히 작업환경 문제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해외 근무에 대해서는 뭘가……

○최은석 위원 그런데 다른 업종은 100만 원에 다 묶여 있잖아요. 다른 업종들은 묶여 있는데 유독 외항선원하고 건설업종에 대해서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5배 정도 이렇게 많이 비과세 한도를 주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까 말씀드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건설 근로자나 이런 쪽에 대해서 조금 더 우대를 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누적되다 해서 그런 거 같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우대라기보다는 그만큼 외항선을 타거나 이런 데 대해서 선원을 되게 구하기 어려워서 여러 가지 목표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 같은 것들을 줌으로 해서 인력 유치와 관련된 그게 가장 필요성이 크지 않았을까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런데 지금 똑같은 일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국내의 내항선사에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벌어지고 있는데, 외항선에 대해서는 지난 한 40년 가까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거치면서 비과세 한도를 쭉 올려 줬는데……

저도 이 업종에 대한 경험이 좀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내항선사에서 선원 구하는 거 정말 힘듭니다. 정말 힘들고, 며칠 전에 신안에서 여객선이 좌초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안전상 문제를 놓고 보면 좋은 인력들이 우리 내항선사에도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인력구조가 되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월 20만 원이라고 하는 이 비과세 한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업종과 다르게, 외항선원과 건설이 유일하게 이렇게 다른 데 비해서 한 5배 정도 이상 비과세

한도가 높은 게 분명히 그런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내항선사에서 실제로 선원들 수급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얼마나 인력들 나이가 점점 고령화되는지, 이게 우리 국민들의 안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잘 생각을 해 보셔야지 그냥 '비과세 혜택은 외화 취득, 장기간 해외 근무 등의 근무여건을 감안하여'라고 하는 걸로 뭉뚱그리기에는 지금 내항선사들의 사정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재검토 잘하셔서 적정하게 비과세 소득이 적용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발언 신청하신 분은 오기형 위원님이시고 그다음에 최기상 위원님, 손 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방금 최은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월 공제가 20만 원으로 시작해서 27년 동안 그대로 있었다고 그러니까 이 점에 대한 문제 제기는 공감을 합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두 번째, 내항선원하고 여타 근로자와의 관계는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 대해서 쉽게 막 풀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반대로 외항선원에 대한 공제 범위가 확대된 것들을 계속 이렇게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이 오히려 필요한 것 같고 그 점을 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외항선원이 확대됐기 때문에 내항선원 확대하는 이런 논리로 하면 한이 없어서 실제 그 정책의 특수성 또는 여기 표시에 의하면 그 게 24년도에 갑자기 쪽 확대됐는데 21년·23년·24년 이 짧은 기간에 확대된 과정들에 대한 사유 설명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리고 그에 대한 정책적 기초가 적정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걸 재조정하고 그리고 내항선원 월 공제 20만 원에 대해 27년 지난 경과 부분에서 좀 더 유연하게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기상 위원님.

○최기상 위원 저는 조세평등주의 관점에서만 보면 내항선원들은 외항선원들과 비교해서 주장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두 선원들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와 본질적인 동일함이 뭔지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게 궁금해집니다.

가령 외항선원들은 한 번 나가면 평균 얼마 정도 일을 하고 들어오느냐 그리고 내항선원들은 아침에 나갔다가 저녁에 들어오는 형식인지 아니면 이분들도 나가서 며칠 동안 일하다가 돌아온다 이런 게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위험성 여부에 대한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바다는. 그러면 실제로 외항선원이 훨씬 더 위험하고 내항선원들은 위험하지 않은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그러면 외항선원들이 타는 배는 좀 많이 클 것 같은데 내항선원들이 타는 배는 상대적으로 작다면 그 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만이……

내항선원과 외항선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평가할 때는 기재부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평가를 한다면 과연 기재부에서 설명을 할 수 있을지 약간 걱정돼서 여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좋은 지적 같은데 혹시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 최진규 소득세제과장입니다.

저희가 외항과 내항의 항해 일수를 통계로, 숫자로 가지고 있진 않지만 외항선원은 당연히 국외로 항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항보다 훨씬 더 많은 날짜를 한 번 출항할 때마다 바다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내항은 종류에 따라서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안여객선 같은 경우는 당일 출퇴근하는 선원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내항선원이 국내 항구를 여러 날 돌아다닌다고 하면 외항까지는 아니지만 며칠 집을 떠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업종마다, 노선의 형태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기상 위원** 위험성 여부는요?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 최진규** 위험성도 마찬가지로 오랜 기간 먼 바다를 항해하지만 배의 상태가 선사별로 천차만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한말씀만 더 드려도 될까요?

○**소위원장 박수영** 예,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해외 사례를 조사해 봤는데요. 외항선원은 해외에서도 비과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도 365일 이상 국외에서 근무하는 경우에는 소득 전액 비과세,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연중 183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 비과세, 중국은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그런 나라들도 내항선원에 대해서는 별도로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 자료는 맞는지 한번 베리파이(verify)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천하람 위원님 거수하셨으니까 질의하시겠습니다.

○**천하람 위원** 이 부분 많은 분들 말씀해 주셔서 가지고 저도 좀 따져 봤더니 이게 여러 사유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한정된 선원 인력풀에서 외항선원과 내항선원 확보 경쟁이 일정 부분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국내에서 현실적으로만 보면? 그런데 임금의 차이도 많이 날뿐더러 외항선원은 상당히 높은 비과세 혜택을 사실 누리고 있고, 방금 최기상 위원님께서 위험성이나 항해 일수 이런 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도 내항선원이 오히려 약간 불리한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은 배들이 하도 잘 나와서 물론 외항선원이 항해하는 일수는 길지만 훨씬 더 안전하거나 설비나 이런 것도 신경 쓸 부분이 덜한데 내항선원 같은 경우에는 왔다 갔다를 많이 한다거나…… 쉽게 얘기하면 고속버스가 운행 거리는 길어도 시내버스 운전기사님들 스트레스 레벨이 더 높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보수도 낮은 데다가 일도 더 험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내항선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자료에도 있듯이 굉장히 고령화되고 이 악순환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전과도 관련이 되는 문제니까 한번 좀 논의를 제대로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

다만 의원님 두 분이 내주신 안 중에, 우리가 그렇다고 소득세법에 아예 몇백만 원 이렇게 쓰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 박성훈 의원님안처럼 대통령령으로 일정 부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몇십 년 됐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불가인상률이라도, 현실화하는 방안을 기재부에서 좀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고요.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너무 오래

됐다, 이거 이렇게까지 20만 원으로 고정해 놓을 게 과연 있느냐 그다음에 안전성 이런 측면에서 봐도 외항선원하고 크게 차이 안 난다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신 박성훈 위원님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논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결국 조금 해기사들 대부분이, 해사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런 분들이 앞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하느냐 보면 내항선원은 전혀 선택을 하지 않고 대부분 외항선을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하면, 결국 세계에서 어떤 혜택을 조금이라도 더 부여하지 않고서는 이런 구조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지금 60세 이상 고령의 어부들 또는 내항선을 타시는 분들이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분들이 앞으로 더 노령화가 될 텐데 신규로 새로운 젊은 선원들이 들어오지 못한다고 그러면 진짜 우리나라 내항이나 연근해에서 어선을 타시는 선원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대체를 해야 될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부 측에서 위원님들 모두가 다 염려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률을 입법하는 권한은 국회의 권한입니다. 기재부가 찬성을 하든 안 하든 국회는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문위원님, 2번 항목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요건 및 한도 등 과세기준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한도를 상향하거나 전액 비과세하는 내용입니다.

2건의 안입니다. 최기상 의원님안은 현재 대통령령에 위임된 비과세 한도 금액을 법률에 상향함과 동시에 비과세 한도 금액을 시가의 30%와 360만 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하는 내용이고, 천하람 의원님안은 할인금액 전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에 상향 규정할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 및 한도에 대해서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보다 충실히 준수할 수 있다는 측면과 또 예측 가능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비과세 한도 적정 규모와 관련해서는 현행 종업원 할인금액이 2024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규정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적정 규모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제도는 작년에 법안을 심의해 주셔서 가지고 저희가 제도를 운영한 첫해입니다. 그래서 막 운영 중에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이 나온 상황인데요. 기본적으로 그 당시에든 논의할 아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얼마만큼을 인정해 줄 거냐, 얼마만큼 깎아 주고 얼마만큼이 급여냐의 부분입니다, 할인을 많이 해 줬을 때.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20%라는 건 어떤 의미냐 하면 어떤 기업에서 매출 대비 총이익률이 20%라면 그 20% 범위 내에서 깎아 주는 것까지는 오케이, 하지만 더 깎아 주면 이건 사실상 급여다 이런 차원에서 20%로 저희가 정한 겁니다.

업종별 평균을 보면 대충 16에서 이십몇 이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평균을 잡았

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 미국에는 ‘매출 대비 총이익률을 초과하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다’ 이렇게까지 아예 규정을 해 놓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너무 많이 깎아 주면 이거는 급여고 그 정도 안에서 본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만든 제도인데요.

그래서 이게 시행 첫해고 그리고 벌써 고치기에는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단은 저희가 현행 상태로 운영을 해 보고 다시 한번 나중에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법안을 제안하신 의원님들이 여기 다 계십니다.

우선 천하람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천하람 위원 이게 제가 작년 국감에서도 사실 좀 열을 올리면서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전액 비과세하자라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사실 만만한 게 근로소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작년 국감에서도 말씀드리고 지금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상속세나 증부세나 여러 자산 관련한 세금에 대해서는 인하 논의가 굉장히 활발한 그런 상황인데, 사실 근로소득세는 놔두면 계속해서 증세되는 상황인데 또 작년에 회사에서 자기 종업원들 할인해 주는 것까지 굳이 세금을 걸겠다고 해서 제가 ‘이게 과연 맞는 일이나. 근로소득 비율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맞는 거냐’라는 걸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한 지 1년 정도 됐는데 이게 굉장히 중구난방입니다. 저희가 현실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시가라는 개념이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있냐 하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항공사에서 항공사 승무원들에게 굉장히 싸게 탈 수 있게 해 줘니다, 항공사 직원과 가족들한테. 그런데 이거에 대해 가지고 과세하려고 하니까 항공사에서는 항공권은 시가라는 개념이 없다라고 해서 여기에 대해 과세 대상이 아니냐라고 지금 하고 있고요. 여러 금융권 기업들도 굉장히 저리로 해당 임직원에게 전세자금대출이든지 주택구입대출이든지 이런 혜택들을 주는데 이것 역시도 사실 과세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반대로 몇몇 기업들은 이게 점점 스노우볼링이 돼서 다른 몇몇 세무서에서는 굉장히 고급 건강검진을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고, 지금 강동세무서·서초세무서 위주로 이런 식으로 계속 번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 제도를 보면서 기본적으로 제대로 잘 작동하기 어려운 제도다 그리고 실제로 혜택을 받고 있는 데에 제대로 공정하게 과세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근로소득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과세를 늘릴 일이나라는 게 저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은 최기상 의원님 발의하신 법안입니다.

○최기상 위원 천하람 위원님이 거의 다 말씀하셨고요. 작년에 일본과의 사례를 비교했을 때도 우리가 좀 과하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법안을 발의했다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발의하신 두 분 의원님 말씀 듣고 변경된 정부 측 입장이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근로소득세 기본적으로 말씀 주시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세수 기반이 굉장히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중이 33%까지 올라가 있고, 저희가 세입 기반을 확충하려면 근로소득세 분야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근로소득세를 건드리자고 말씀하시는 위원님은 안 계시고요. 이 부분, 이거를 면세를 해 주자는 것인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게 결국에는 근로소득세를 깎아 주는 취지이기 때문에, 비과세 한도를 더 넓히는 취지니까 그게 추가로 감세가 더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말씀드린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할인을 해 주는 데가 주로 주요 대기업 중심이라는 점도 좀 더 첨언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정일영 위원 차관님, 이런 식으로 해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할인금액에 대한 과세가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액수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직은, 올해 시행이여 가지고……

○정일영 위원 그래서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런데 당시에 저희가 이 제도를 도입할 때 주요 기업들의 사례를 조사한 건 있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 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예 규정이 없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세가 됐다는 소리야, 안 됐다는 소리야?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어떤 기업들은 이렇게 종업원들한테 주는 거를 세금 처리를 한 데가 일부 있고요 어떤 데는 아예 이것을 그냥 비과세로 해 가지고 세금 처리를 안 한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이 제도를 도입할 때도 모든 기업들의 종업원들이 세부담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어떤 데는, 예를 들면 병원 같은 경우에 자기 직원들한테 건강검진 서비스를 주기는 주는데 그거를 종업원 급여로 봐 가지고 나중에 세금을 더 때린 적도 있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240만 원까지는 정부 기준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것까지는 비과세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CJ 같은 데 보면 뚜레쥬르인가 빵집 가고 또 식당 가면 30%인가 직원들 DC 해 주던데……

○최은석 위원 직원들은 45%.

○정일영 위원 45%예요? 더 잘 아시겠구먼.

○소위원장 박수영 CJ 대표 있는데 왜 하필 CJ를 예로 드십니까.

○정일영 위원 아니, CJ가 잘하고 있어서 부러워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세금을……

○최은석 위원 세금 다 냅니다. 예전에 CJ그룹은 다 냈어요.

○정일영 위원 다 냈어요, 그걸?

○최은석 위원 예, 연말에 할인받은 금액을 근로소득에 다시 합산해 가지고 세금을 다 냈습니다.

○정일영 위원 다 냈습니까?

○최은석 위원 예. 그런데 이제는 240만 원까지 안 내겠지요.

○정일영 위원 그런데 지금 천하람 위원이 얘기하신 대로 항공사는 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안 낸 걸로 해석이 되는데.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든 그 직원들한테 1년에 열 번인

가 얼마인가 비행기 공짜로 타도록 이렇게 해 주잖아요, 부모님까지. 그런 경우는 과세가 안 됐겠지요. 그 비행기 좌석이, 400명이 타면 400명 가격이 다 다르다고 그러는데 시가의 개념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기업에서 근로소득, 월급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베니핏, 복지 차원의 그런 걸로 보이는데 이걸 그냥 비과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지요? 제가 위원장은 아니지만.

(웃음소리)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먼저 신청하셨고 그다음에 최은석 위원님 차례가 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24년도에 세법 개정됐으니까 25년 올해 첫 시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행 결과도 안 나왔는데 또 개정하는 건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논쟁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으로 옳고 그른 문제라기보다는 과정적으로 보면서 한번 필요한 유연성을 발휘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논의하는 건 좀 빠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일정 정도 시행해 본 다음에 한번 재론하면 어떨까요?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최은석 위원 저도 아까 존경하는 천하람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좀 비슷한 취지인데요. 실은 저도 이번에 근로소득세 관련해서 물가 연동하는 거 법안 발의해 놓긴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전체 경제 주체들 중에 보면 근로소득자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정말로 제일 투명하고 또 제일 과도하게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 회사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서 해당 직원이나 근무하는 종업원들에 대한 것들 이거는 240만 원 하면 월 2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실은 저는 너무 좀 과소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최기상 의원님이 낸 거나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1년이 안 됐지만, 이거는 1년 되고 나서 효과 볼 것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1년 지나서 무슨 평가를 하겠습니까? 그냥 각 기업들이 직원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주고, 아까 차관님인가 실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다 대기업이라고 하지만 하향 평준화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대기업이 앞서가면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도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각박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전향적으로 금액이라도 좀 늘리는 것들은 저는 1년이 지나지 않아도 되게 타당하다고 봅니다. 최기상 의원님 아주 좋은 법안 내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정태호 간사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정태호 위원 작년에도 이거 가지고 논의를 할 때 이게 대기업 근로자들에 유리한 제도다 그래 가지고 되게 논란이 많았지요. 그리고 실제로 점심 지원하는 것까지 그때 얘기가 나오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1년밖에 안 됐으니까 한번 좀 지켜보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수영 일단 법안을 내신 의원님들이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바로 계류시키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추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하는 걸로 하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20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교부한 성과조건부 주식에 대한 세제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현황 부분에 성과조건부 주식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 두었고요. 임직

원에게 근속기간 또는 성과와 연동되어 권리가 확정되는 주식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시행 시점별 이익과 관련해서는 뒷페이지에 이해를 돕도록 관련 그림을 같이 덧붙여 두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성과조건부 주식을 교부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교부이익 중에 연 500만 원에 대해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교부이익의 합계가 8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 교부이익에 대한 과세 방식을 교부 당시 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로 납부하는 방식과 양도 시점 이익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방식 중에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과세되는 금액, 50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는 5년간 분납을 할 수 있도록 납부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4페이지, 개정안과 관련한 검토의견입니다.

벤처기업 등 초기 단계 기업들의 인재 유인책 등으로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3페이지에도 관련 표를 제시하였습시다만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와 관련해서는 조세특례상에 관련 특례들이 도입되어 있는 반면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해서는 관련 특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련 유사 제도 사이의 불균형을 제거하고 세제의 중립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6페이지 부분입니다.

다만 임금 등 근로소득에 대한 보상을 성과조건부주식으로 대체하려는 유인이 클 경우에 근로소득세 과세기반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지, 좀 약화되는 영향은 없을지 등도 같이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성과조건부주식은 스톡옵션하고 비교하시는데요. 스톡옵션은 부여가 될 때 권리만 있지 행사 여부가 불확실한 옵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혜택을 줄 수도 있지만 이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상교부하는 현물급여이기 때문에 이것을 근로소득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간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제도가 벤처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벤처법에 따르면 성과조건부주식을 줄 때 중기부에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중기부에 확인해 봤는데요, 현재 한 건도 신고 사항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아직은 벤처법에 따라 이게 작동되지 않고 있고, 일반 기업들은 혹시 할 수 있겠으나 현재로서는 저희가 육성하려는 벤처하고는 관련성이 없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되는지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굳이 세 번째 이유를 든다면 스톡옵션은 신생기업, 벤처가 막 생겼을 때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신주를 발행해 주어서 인재를 유치하는 겁니다.

이것은 제도상 보시면 알겠지만 구주를 주는 겁니다. 이미 있는 자기 주식입니다. 즉 그 말은 뭐냐 하면 자사주를 살 수 있는 여력까지는 돼야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일정한 성장기반을 갖춘 기업이 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봐서 스톡옵션하고 특례 주는 것을 같은

선상에 놓는 것은 아직은 좀 무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발의하신 김태년 의원님이 성남이시기 때문에 벤처에서부터 중견기업까지 두루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발의하신 법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는 차관님 답변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차관님 의견에 다 동의하시는 건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그런데 중진 의원님이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로 낸 법안인데 이것 바로 계류시켜도 되겠습니까?

○정일영 위원 재검토하세요.

○박성훈 위원 소소위에서 논의하시는 걸로……

○정일영 위원 소소위에서 다시 보십시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럴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소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는 다음 안건, 35페이지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와 관련되는 임의 해지일시금 전액 분리과세 및 소득세 부과 한도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박수영 의원님안은 공제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공제계약을 해지하는 임의 해지일시금의 분리과세 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전액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안은 지급받는 현행 환급금 한도에 더해서 임의 해지로 지급받는 환급금에 대한 기타소득세가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3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지금 현재 기타소득으로 전액 분리과세가 되고 있는 연금계좌 등 유사 제도와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그 제도의 취지나 구조가 소기업·소상공인도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관련 분리과세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와 관련해서는 공제금의 지급사유를 확대하고 부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소상공인이 공제제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인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안과 관련해서는—38페이지 부분입니다—불합리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중 적은 금액을 환급금의 기준으로 다시 설정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산정하는 부분에서 행정상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실무 측 의견을 같이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의원님안인데요. 기본적으로 노란우산공제와 관련해서 처음에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소득세율이 천차만별이겠지만 그 세율만큼 공제를 받게 되는데 임의 해지를 했을 때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소득세율을 납입할 때 받은 것보다 오히려 더 돌려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고, 한편 그게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오히려 이것을 좀 이용할 수도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노란우산공제의 재정적 기반을 약간, 이게 잘못 활용되면 흔들 수도 있는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부분이고요.

두 번째로 경영위기로 해지하고 싶다는 그 부분은 저는 공감하는데 올해 저희가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경영위기로 임의 해지할 때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해서 분리과세보다 더 낮은 세율로, 4%의 실효세율이 되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제도를 이번에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위기 요건도 직전 3년 평균 대비 수입이 절반 이상 줄어야 된다고 까다롭게 했다가 이것도 한 20% 이상 줄어도 경영위기라고 해 가지고 경영위기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임의 해지할 때는 저희가 혜택 추가를 연중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한다면 분리과세 논의까지는 진행하지 않더라도 의원님이 제안한 법안의 취지는 이미 달성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송재봉 의원님 말씀처럼 감면받은 세액을 실제로 알 수가 없어서 이것은 집행력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제가 발의한 법안인데 노란우산공제에 관한 부분이고요.

이게 원래는 소상공인들이 가입해서 사망이나 폐업에 이르렀을 때에 목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 공제였는데, 중간에 해지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었는데 지금 차관님 말씀 들어 보니까…… 제가 이 법안 발의한 게 작년, 24년도였는데 그사이에 제도가 바뀌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제도를 손봤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것 시행령에서 손본 건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작년에 법을 고치고 올해 시행령에서 요건을 더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완화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고치셨다니까 저도 법안 발의한 의원으로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우리 소위에 계류하는 것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같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 관련 부분입니다.

42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개정안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해서 비과세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김미애 의원님안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가입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기타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고 안도걸 의원님안은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거주자에 대해 지자체가 거주자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2030년도 말까지 미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43페이지, 검토의견 부분입니다.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제도에 대한 가입 유인 증진을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만 공제지원금 비과세를 통한 공제부금 납입의 장려 효과 면을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안도걸 의원님안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가입지원금이 현재 일반적으로 일인당 12만~24만 원 수준으로 나오는데 비과세 규모는 일인당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수준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전문위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듯이 지자체의 가입지원금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령 시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해서 실효세율이 4%입니다. 이 부분을 없앴을 때 실질적으로 일인당 돌아가는 혜택은 1만 원에서 플러스마이너스 5000원 수준이라는 걸 먼저 실익 차원에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 이것을 다 과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살처분이라든지, 공익사업법상 보상금이라든지 감척지원금 등 다 과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과세하지 않는 쪽으로 간다면 여러 가지 다른 지원 체계에서 똑같이 동일한 요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항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이 현재 자리에 안 계시기 때문에 일단 보류해서 한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분류하고 다음 안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47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미디어콘텐츠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과세 규정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청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은 모두 소득세로 과세하도록 하고 후원금을 받는 경우에 해당 계좌를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공개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규정도 같이 추가하고 있습니다.

4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최근에 일부 유튜버들의 고의적인 소득 신고 회피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세원 관리 차원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다만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에 대해서는 이번 소위 심사 과정에서 부가가치세법상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정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되었고 잠정 합의된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전문위원님이 잘 정리했듯이 현행법상 소득세는 부과되고 있고요, 가산세도 부과되고 있고. 다만 매출을 누락할까 했는데, 며칠 전에 저희가 논의했듯이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를 소위에서 잠정 합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발의한 취지는 달성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법안은 우리 소위에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56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고 일부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안건이 지금 발의되어 있고요. 적용 방법과 관련해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세율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물가조정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단계에서 관련 물가조정 부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세율 일부 조정에 관련해서도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하는 방법들도 있고 지금 관련 개정안들이 제시되어 있고 표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부분과 과표구간 조정 관련해서 총괄 검토 부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소득 상승 없이 명목소득만 증가해서 실질 세부담이 증가하는 부분에서 관련 자동조정장치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제도로 보여집니다.

60페이지 부분입니다.

다수 국가들이 물가연동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물가연동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자동조정이 되는 측면 때문에 세수감소가 큰 폭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최소 28조 원에서 82조 원으로 추계가 되고 있는 점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4페이지의 소득세 과표구간·세율 일부 조정과 관련해서는 2022년도에 세법 개정을 하면서 하위 과세표준구간 조정이 한 번 된 적이 있다는 점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최고세율 및 최고세율 적용구간이 좀 높은 편이지만 중·저소득구간의 실효세율은 매우 낮은 편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번에 소득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부분이 상위 부분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루어져서 이 부분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물가연동제 관련입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일단 먼저 55페이지의 세수효과를 보시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런 세수감을 저희 정부 재정에서 버텨 낼 수가 없다고 저희는 생각되고요.

그리고 아까 근로소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면세자 비중이, 33%는 세금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을 이렇게 하면 점점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주로 10~20% 수준의 면세자가 있고요. 소득세 비중도 GDP 대비 보면 저희가 한 5.3%인데 OECD 평균은 8%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물가를 반영해서 23년에 하위 2개 구간의 과표를 올렸습니

다. 이렇게 올리게 되면 하위 2개만 반영되는 게 아니고 그 윗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구간을 거쳐 가기 때문에 일정한 혜택을 이미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수에 따른 것도 세수감이 20조 원대에 달하는 점이 있고 자녀세액공제나 부모급여 등 다양한 세제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간에 과표구간이나 세율을 조정하는 것도 이 구간대로 하면 과표 5000만 원부터 누적된 효과가 있어서 10억 원 이하까지 다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이고 과표 세수감도 5년간 28조 원이라는 점에 대해서 현재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5명의 의원님들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의 최은석 의원님이 내신 법안이 있는데, 최 위원님.

○최은석 위원 위원장님, 10권 시작하기 전에 분명히 기재부에 의원들이 낸 법안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 보면 여전히 같은 입장이신 것 같고.

차관님, 조금 전에 5년간 세수 규모 이야기하셨는데 이렇게 세수 문제가 있으면 근본적으로 국가의 조세 체계를 한번 검토해야지 가장 힘없고 억울한 근로소득자들이 계속 부담하라고 하는 취지는 안 맞다는 말씀을 저는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면세자 비율이 증가한다는 것은, 이것은 국민 개세주의에 따라서 세원을 넓게 가져가서 근로소득자들 중 면세자 비율을 어떻게든 낮추는 것도 정책적으로 해야지요. 정책적으로 해 나가야 될 일입니다. 이번에 이것만 하고 그 나머지 것들을 안 건드리어서…… 이런 것도 저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렇지요?

저도 수십 년간 회사에서 월급받으면서 세금 내면서, 맨날 제 월급 말고 다른 것만 다 올라가잖아요. 특히 여기 뒤에 계신 보좌관님들 더 그렇게 느끼실 텐데 정말 근로소득자들이 진짜 유리지갑이라고 불리는, 진짜 100% 이렇게 근로소득세를 다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물가와 관련해서는…… 정말 자기도 모르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지금 당장 세수 문제가 그렇다라고 하면 저는 이번 기회에…… 지금 보면 선진국, OECD 중에도 물가연동제를 많이 도입했잖아요. 그렇지요? 아까 우리 말고도 총 32개국 중에 이십몇 개국이라고 했나요?

그래서 물가연동과 관련된 이것은 글로벌 스탠더드까지는 아니지만 OECD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급여소득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보편적으로 도입한 제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지금 두 분 제 말 안 듣고 딴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선진국 사례를 잠깐 훑어봤습니다.

(웃음소리)

○최은석 위원 저는 이번에 부대의견이라도 꼭 달아서 이 부분은 기재부가 전체 우리나라 조세 관련된 것들을 좀 한번 다시 근본적으로 구조를 분석해서 근로소득자들의 부담, 특히 물가와 연동된 근로소득자들의 실질임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완해 주고 앞으로 개선할 거냐. 그래서 물가연동제와 관련된 이 제도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도입할 거냐 이런 데 대한 스터디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기재부차관님, 전가의 보도처럼 33%가 근로소득세 안 낸다 이것 말씀하셨는데 그걸 개선하려는 노력은 제가 기재부로부터 보고받거나 들어 본 기억이 없습

니다.

그러니까 세원은 넓게 하고 세율은 낮게 하는 게 기본인데 그 부분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제대로 안 바꾸는 쪽으로만 쓰시고 바꾸는 노력은 지금 전혀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최은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대의견을 넣든지 해서 기재부가 그 개선안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오기형 위원님 거수하셨습니다.

○오기형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처음에 물가연동제 나올 때 저도 이런 지적과 문제의식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주어진 조건 때문에 논쟁을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세수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면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저는 조건을 같이 논의해 봐야 될 것 같고.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른 세수 기반 확보에 대해 우리 조세소위에서 같이 고민과 결단을 해 줘야 된다.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열 가지 조세지출 그걸 한 50조만 확보하면 이것 선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용카드 관련 된 것 1년에 5조씩인데 5년 기준으로 하면 그게 한 20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용카드만 딱 정리하면 저는 최은석 의원님안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같이 고민할 때 안을 함께 말씀해 달라는 건데, 자산 양극화에 따른 논쟁이 지금 사회적으로 되고 있는데 각종 자산에 대한 과세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정리가 되면 오히려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좀 유연하게 가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근로소득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은 저는 적절한 문제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단으로 물가연동을 고려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전제조건 검토를 같이 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예, 실장님.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까 위원장님께서 먼저 제도개선 얘기를 하셔서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14년도에 소득공제제도를 세액공제로 많이 바꾸면서, 사실은 소득공제가 고소득자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때문에 그걸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면세자 비율을 많이 낮추려고 했고 그때 사실은 10%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세부담이 갑자기 너무 늘어난다라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경감 조치가 들어가면서 다시 30%, 그때는 초반에 40%도 넘어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조금 내려왔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3년 기준으로 보면 근로자 급여 총계가 922조입니다. 그런데 각종 소득공제로 제외되는 부분이 380조입니다. 그래서 사실 급여 총계의 41% 정도가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면세자 비율이 높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득세 부담 경감 조치하고 관련해서 물론 물가를 자동적으로 과표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세부담을 낮추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저희도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염두에 두고 있고. 그래서 사실 매년 거의 근로소득세 부담 경감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말씀은 드리

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우리가 지난번에 논의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하고 이 문제를 연계해서 또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것 또 있지요? 소득세 몇 건입니까, 뒤의 안건이? 전문위원님, 많이 남아 있나요?
○전문위원 정지은 이것은 10권이고, 소득세법이고요. 지금 조특법 소득이 남아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일단 이것도 추가로 더 논의하도록 하고.

다음 안건이 인적공제로 넘어갑니까, 아니면 소득세안입니까?

○전문위원 정지은 그렇습니다. 인적공제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인적공제도 법안이 많네.

위원님들, 6시가 다 돼 가는데 혹시 약속이 없으셔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셔도 되는 분이 있으면 예약을 하려고 합니다. 혹시 다른 약속 없어서 같이 하실 분 있으시면 지금 말씀 주시고요, 없으시면 예약은 안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들 약속 있으시군요. 그러면 따로 예약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7번까지만 하고 넘어갈까요? 7번이 긴가?

○김영환 위원 7번이 기네요.

○최은석 위원 위원장님, 6번에 대해 기재부가 좀 더 체계적인 연구나 용역 같은 것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방향을 정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박수영 예. 그것은 아까 얘기했는데 근로소득자의 33%가 면세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기재부가 연구하는 것으로 부대의견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당연히 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영환 위원 조세지출하고 함께……

○소위원장 박수영 그건 우리가 더 논의할 거고요.

자, 지금 6시 되기 10분 전인데 7번부터는 저녁 식사 이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7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9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박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금액 상향 조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현행 인당 연 150만 원으로 책정된 인적공제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안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20세 이하 자녀에 한해서 300만 원으로 확대하는 안이 있고 그리고 18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 그리고 기본공제 금액을 물가에 연동하는 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 소득금액의 기준을 상향하는 안도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등의 연령상한을 현행 20세에서 23세부터 25세로 상향하는 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79페이지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금액, 총급여액 기준을 상향 조정하려는 개정안은 2009년 이후에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조세 부담의 상승 효과가 있었음을 감안해서 조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고요. 다만 관련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같이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1페이지 부분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등의 연령상한 확대와 관련해서는 청년층의 사회 진출 시기가 지연됨에 따라서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시대적 변화를 공제요건에 반영하려는 취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2페이지 부분입니다.

다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제활동을 하는 청년들과의 형평성 측면이나 기본공제 대상 자녀의 연령요건을 상향하는 경우 연계된 다른 공제 대상 역시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심사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근로소득공제와 관련해서는 식사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 금액이나 소득요건이나 자녀 연령 기준에 대해서는 과세 기반을 감안할 때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근로소득자, 아까 세제실장이 이야기했듯이 총 900조 중에 40%를 공제로 빼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데 여기서 추가로 공제를 더 확대하는 것은 저희가 세수감을 감안할 때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령에 대해서 한말씀드리면, 20세에서 23세나 25세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사실 경제활동이 가능한 나이대입니다. 그래서 경제활동이 어려운 자녀의 경우에 기본공제를 하는 거지 경제활동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하는 것은 취지에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해서 공제를 못 받게 되는데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고소득층 가구의 청년은 혜택을 보는 불합리성도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신용카드 공제, 교육비·의료비는 계속적으로 공제를 해 주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수감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예를 들면 임광현 의원안으로 하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임광현 의원님안으로 하면 연 1.9조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연 1.9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래도 제일 양호하게 올린 게 임광현 의원인데 그게 연 1.9조나 됩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공제만 그렇고요, 자녀 나이를 올리면 그것도 1조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기본공제만 1.9조 원이에요, 세수감이?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180만 원으로 올릴 때 그렇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래도 국세청장님이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수감이 크기는 크군요.

위원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 주시고요.

오기형 위원님이 한숨을 쉬시는 이런 일도 있습니까?

○**오기형 위원** 너무 크잖아요, 세수감이.

○**소위원장 박수영** 세수감이 너무 크지요?

○**오기형 위원** 너무 커서 수용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수영** 글썄 말입니다.

간사님, 세수감이 너무 크지요?

○**정태호 위원** 보류하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보류? 계류?

○**정태호 위원** 그렇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아니, 계류냐 재논의냐 이건데.

○**정태호 위원** 계류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의견 없으신 데다가 세수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안건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는 경로우대자공제, 장애인·부녀자·한부모 공제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금액을 일괄적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92페이지 부분입니다.

추가공제의 도입 취지에 맞게 노인이나 장애인 등을 부양함으로써 추가지출이 수반되는 가구에 대한, 추가공제 대상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93페이지 부분입니다.

다만 기초연금의 지속적인 확대 추세와 같이 다양한 재정사업이 시행되고 있음을 고려해서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도 공제제도를 확대함에 따라서 과세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전반적으로 예정처 기준에 따르면 5년간 10조 세수감이 존재할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

요. 항목별로 보면 70세 이상 공제의 경우에는 기초연금 등에 대한 확대에 이분들에 대한, 노인들에 대한 예산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장 내년의 경우만 해도 기초연금 확대에 1.6조 그리고 기타 노인 일자리나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으로 4000억이 예산에 추가로 반영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공제의 경우에는 현재 2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장애인 가구가 생길 때 추가비용이 연 204만 원으로 현재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부녀자공제는 사실 저조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독려를 위해서 추가로 늘어난 공제인 데요. 현재로서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반대의 경우에는 과세 형평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이상 확대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한부모공제의 경우에도 예산 지원 있는 게 또 있을 것 같고요. 사실은 한부모가정 지원의 경우에는 세제상으로 지원하면 소득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데 비해서 예산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소득기준을 감안해서 적확하게 지원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장애인만 조금 올려 주는 것은 안 되나요? 그러면 세수감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4개 다 합산은 돼 있는데.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게 예정처에서 한……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합산은 예정처에서 한 것이고.

전문위원님, 각각 항목별로 얼마라고는 안 나와 있나요?

○전문위원 정지은 저희가 지금 받은 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자료로는……

○소위원장 박수영 합산만 나와 있고 항목별로는 없다?

○전문위원 정지은 예, 확인……

○소위원장 박수영 장애인 가정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해 줘도 될 것 같은 데.

아까 차관님이 가게에서 추가비용이 200만 원 정도 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204만 원. 그러니까 딱 200만 원이면 그것을 추가로 더 늘리기에는 통계적 근거가 약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 법안은 정일영 의원님안인데, 위원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앞에도 말했는데 가차없이 잘리고 이게 두 번째네요.

그런데 이게 예정처에서 제대로 한 거예요? 10조 2364억 원 세수가 준다고요? 이게 틀린 것 같아요.

○전문위원 정지은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총액 기준으로 기재를 했는데요. 개별 항목별로 추계가 되어 있는지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니, 총액도……

○전문위원 정지은 총액은 10조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런데 이게 10조, 오기형 위원님이 놀라서 기절하셨는데요. 아니, 이게 무슨 10조나 된대요. 어쨌든 너무 많이 줄면 안 되긴 안 되지요.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 차관님, 제일 어려운 분들을 제가 꼼꼼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장님이 딱 제 생각을 짚으셨는데요. 장애인분들이 제일 어려울 것 같은데 연 200만 원에서 400만 원, 안 되면 한 300만 원, 그러니까 100만 원 늘리는 걸로 해서 100만 원 추가공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이렇게 하시지요.

전문위원님, 예정처에서 항목별로 받고 장애인 100만 원 늘리는 경우에 세수감이 얼마 인지를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돌려주시고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한 번 더 논의하도록, 다시 논의하도록 재논의로 분류하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알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부터입니다.

주요내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수에 따른 공제인 일반공제와 그리고 출산·입양에 따른 공제 등 자녀세액공제제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에 따른 일반공제 내역들은 표로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지금 조금 차이가 있는 안으로는 일반공제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제한 8세의 기준을 폐지하는 윤호중 의원님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기상 의원님안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최근에 정부가 아동수당법상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의 연령을 현행 8세 미만에서 2030년까지 13세 미만으로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제시함에 따라서 자녀세액공제와 아동수당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관련 검토의견입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자녀세액공제액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서는 저출생 상황의 심화로 자녀세액공제 확대의 필요성과 이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연령제한을 폐지하는 윤호중 의원님안과 관련하여서는 104페이지에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과의 중복 지원 문제를 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기상 의원님안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아동수당법 개정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아동수당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직 미발의 상태고 관련 예산은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자녀세액공제는 저희가 2년 연속 추가로 확대를 했습니다. 24년에 늘리고 25년에도 늘려 가지고 현재 첫째 애는 25만 원, 그다음 애는 30만 원 추가, 그다음 애는 40만 원 추가 이런 제도로 막 바꾼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금액을 늘리는 것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최기상 의원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아동수당의 연령을 높여 가면서 월 10만 원씩 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세액공제를 굳이 중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현재도 8세에서 끊어 왔는데, 이게 올라가면 저희도 올라가서 점점점 페이드아웃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최기상 의원님안에는 동의하고 나머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아동수당법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최기상 의원안의 기반이 되는 게 아동수당법인데 그건 어디로 가 있나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가 알기로는 복지위에서……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혹시 알고 계세요? 이 법안……

○전문위원 정지은 저희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개정안은 아직 미발의 상태인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직 발의도 안 됐다고요? 아니면 심의를 안 하고 있는 것인가.

혹시 담당 공무원들 알고 있나요, 아동수당법?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장 최진규 소득세제과장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상향하는 그 안은 지금 법안이 발의돼 있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복지위에 관련 법안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관련 법안들의 수정대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복지부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지위의 논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거나 통과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아동수당법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우리가 최기상 의원님안으로 가 버리면 이게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가 이걸 의결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일단 재논의 보류를 해 놓고 우리가 마칠 때까지 복지위에서 아동수당법이 통과가 되면 그때는 고려해 보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먼저 우리가 선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차관님은 어떠십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번 소위 지날 때까지 복지위 상황을 좀 더 살펴보고 소소위 때 다시 한번 논의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연금계좌 납입액의 세액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과 무관하게 15%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현행은 5500만 원 초과에 대해서는 12%, 그 이하에 대해서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하고 개인의 퇴직 자산 축적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114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납입 연금액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던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납입한도액은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600만 원으로 상향이 되었고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준금액도 종전에 1200만 원에서 2023년 세법 개정을 통해서 1500만 원으로 상향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전문위원 말씀처럼 55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 12%를 15%로 공제율을 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구간에 대해서 혜택이 집중된다는 점이 있고요. 여러 가지 연금 관련해서는 세제 혜택을 계속 확대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이게 세수감은 얼마 정도로 예측하고 계십니까, 추계치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5년간 1조 700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5년간 1조 7000억?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정치 자료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적지 않은 돈이네요. 첫해에도 3000억이 줄어들게 되는군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오기형 위원님이 마무리 지어 주시지요.

○오기형 위원 이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것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소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한도 조정 및 대상보험항목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120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또는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제안이 되었고 그리고 보험의 종류에 따라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를 120만 원으로 상향하고 그리고 책임보험 등 자동차 관련 보험에 대해서는 70만 원을 한도로 보험료별 합계액을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15세 이하 자녀와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에 대해서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안과 기본공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간병보험료에 대해서 연간 50만 원 별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하는 안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2030년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안이 제안이 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23페이지 부분입니다.

보험료 특별세액공제 한도액의 경우에는 100만 원으로 설정 이후에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험 가입 관련 유인을 좀 증대시켜서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는 측면에서 상향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이 상향으로 인한 세수감소 효과 등도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119페이지에 관련 개정안별 예산정책처의 세수감소 금액 추계치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정안 별도 내용과 관련해서는 125페이지의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 70만 원

한도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소요되는 자동차보험료의 한도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노후 대비나 의료비 지출 등과 같은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다른 보장성 보험의 가입 유인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논의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동차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현재도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태아보험 세액공제와 관련하여서는, 127페이지 부분입니다. 태아는 출생 전임에 따라서 기본공제대상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는 측면이 있어서 현행법상 보험료 특별세액 공제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보험료 세액공제 신설과 관련하여서는 지금 고령화 사회에 장기적인 간병 수요가 증대되고 또 높은 간병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줄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여기와 관련해서는, 130페이지 부분입니다. 민간 장기간병보험 같은 경우에는 역선택이나 보장 부족 문제가 좀 심각한 영역으로 세제지원으로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점에서 이런 부분들 감안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보험료의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현재 하위 60%, 1분위·2분위·3분위의 근로자 연평균 지출액이 한 1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한도는 충분한데 추가로 늘린다는 것은 그 윗단에 대한 혜택이 좀 더 몰릴 것 같다는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이것도 예정처 추계에 따르면 한 1조 원 이상의 세수감이 있는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 분은 공제 한도를 다 올렸고 나머지 세 분은 보험별로 따로 설정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어떤 보험을 선택하냐는 거는 개인의 선택인 거지 이 보험 이렇게 저 보험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간막이를 두는 것 자체가 효율적인 의사결정에 저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특히 전문위원님 말씀처럼 자동차보험에서 70만 원 한도로 한 거는 오히려 100만 원 하지 말고 70만 원으로 줄이라는 건데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인 건데 이렇게 강제로 줄 이게 되면 예를 들면 젊은 층의 경우에는 운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보험료가 꽤 높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 보험이 추가로 부인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할 때 이거는 자유로운 선택에 맡기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태아의 경우에도 당연히 좀 어려울 것 같고. 기본적으로 출산·보육에 대한 여러 가지 복지사업이 아동수당처럼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 간병보험료의 경우는 아까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 잘해 주셨지만 치매와 관련된 보험이 실제로 임박해서 많이 가입하기 때문에 역선택이 일어나 고위험군만 남게 돼서 이 부분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 확대하는 점은 좀 어렵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국정과제로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추진되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국정과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히…… 누가 아시나? 세제실장님, 아십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도 국정과제의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여기 적혀 있는 내용밖에 모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131쪽에 있는 이 내용 이상은 모른다 이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장기적인 거지만 본인부담금을 조금씩 내리기 위해서 아마 시범사업을 통해 점점 확대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법안을 내신 최은석 의원님과 안도걸 의원님이 안 계신데, 간병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게 있다 치고 장애인 쪽만 따로 떼서 세수 추계해 놓은 거는 없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제안된 내용 안에 장애인은 없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없어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자동차랑 자녀 쪽을 확대하자는 내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예정처에서 세수 추계할 때 장애인 부분도 얼마 얼마 있을 거 아닙니까? 최은석 의원안처럼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만 따로 떼면…… 뭐 세수 추계 내놓은 건 없나요?

○전문위원 정지은 이번 개정안 내용에 장애인 관련 보험 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추계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항목별 추계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지금 개정안별로 간병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또 다른 보험들, 자동차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추계가 되어 있는지 여부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관련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거 예정처에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한번 받아 보시고.

이거는 일단 법안 제안하신 최은석 의원님과 안도걸 의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한 번 더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사이에 자료를 받아 주세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 알겠습니다.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 난임시술비 충급여액 요건에 대한 적용배제 및 난임대비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확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136페이지입니다.

최기상 의원님 안은 의료비 특별세액공제 요건 중에 의료비 지출액 합계액이 충급여액의 3% 초과하는 요건을 난임시술비에 한하여는 적용을 배제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박형수 의원님 안은 난임시술 외에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 난자, 정자의 보존시술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최근에 난임시술을 받는 환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출산을 제고 측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통해서 난임시술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139페이지 부분입니다.

난임시술비 지원과 관련하여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관련 재정 지원 사업들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먼저 난임시술비와 관련해서는 다른 의료비는 보통 15%를 공제하고 있는데요. 난임시술비는 30%를 공제하고 있고 한도도 다른 데는 좀 있습니다만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아예 한도가 없이 다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거를 하게 되면 다른 중증의료비는 그러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요.

또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70%가 건보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재정으로 30만~110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것은 최기상 의원님이 내신 안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말씀을 들어 보면 정부 측 말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소위에 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안입니다.

개정안의 관련 내용을 주요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을 위해서 아이돌봄서비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에 대해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공제율은 15%이고요.

그리고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에 대한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안이 있고 또 보육비에 대해서 연 500만 원 한도의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육비와 관련해서 인당 200만 원 한도에서 특별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과 그리고 근로소득금액에서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비용 전체를 공제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안이 같이 제안되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돌봄서비스 이용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거나 돌봄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부분은 부모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자녀 돌봄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

147페이지 부분입니다.

현재 교육비 공제한도 역시 2009년부터 동일한 수준으로 지금 물가상승을 감안할 때 실질적인 조세부담률 상승 효과가 있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48페이지 부분입니다.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른 지원 제도하고의 형평성이라든지 친족 등 도움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 그리고 보육비 공제한도 신설에 따른 혜택이 역진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아이 돌봄과 관련해서 연관된 예산 사업이 아동수당 등등 해서 굉장히 많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이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예산 사업에서 가정의 소득 수준에 따라 15~85%까지 현재 예산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세제 지원하는 건 중복적인 지원이라고 저희는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거 외에도 유사한 간병 돌봄이나 민간 돌봄 이런 것에서도 추가로 요구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 4월부터 민간등록기관 돌봄서비스가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부분은 이용요금의 제한 자체가 없어서 아무래도 고소득층 위주로 많은 활용이 될 것 같아서 이 부분까지 확대되는 것도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도 안이 하나 나와 있는데 말씀하시겠습니까?

○정일영 위원 차관님 말씀도 다소 이해가 가는데요. 지금 현행에 보면 제59조의4제3항 공제대상에 ‘초·중·고·대, 평생교육시설, 국외교육기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취학 전 아동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지급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비, 제가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중복된다는 건데 중복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겠어요. 지금 그런 논리면 여기 다른 규정, 현행에 들어가 있는 교육비도 그런 논리로 하면 중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중복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육비’ 이렇게 해서 대통령령에서 중복이 있다면 그걸 좀 제외를 시킨다든지 적절히 조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완전히 중복만…… 안 된다고 그러면……

이게 아이돌봄서비스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신청하고 이용현황이. 이게 뭐냐면 지금 아이를 적게 낳아서 문제지만 어린아이들에 대한 주로 엄마, 아빠도 해당되겠지만 주로 어머니들이 직장 다니고 하면서 이런 서비스가 더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 돈이 들어가니까 결국은 아이를 낳기 어려운 저소득층 같은 경우 특히 이 부담을 좀 완화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공제한도가 2009년도에 만들어진 거예요? 공제한도가 지금 300만 원이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일영 위원 이게 2009년도에 만들어진 건가요?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공제한도 2009년도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닙니다. 그전에도 있었는데 현재 300만 원 한도가 들어간 게 2008년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시행으로……

○정일영 위원 올해가 몇 년도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지금 2025년도인데요.

○정일영 위원 그럼 몇 년 전 거예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15년, 16년 됐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럼 좀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런데 초중등 같은 경우에는 보통 교육비가 공교육이라서 많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대학생은 900만 원까지 나중에 추가로 계속 올라갔는데—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300만 원으로 있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꽤 오래됐는데 물가상승률만 곱해도…… 일부 공교육, 초등학생·중학생들의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공제한도를 지금 16년 동안 변함없이 놔둔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이후에 교복 구입 비용 같은 것도 추가로 더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항목에는.

○정일영 위원 그건 부분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고, 우리 자녀들, 아이들 교육비는 좀 챙겨 줘야 되지 않아요? 아이들 좀 많이 낳아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소위원장 박수영 실장님, 취학 전 아동의 돌봄서비스가 이 규정 이외에 어떤 게 정부가 지금…… 정일영 의원님 안은 취학 전 아동이거든요. 어떤 서비스를 지금 우리 정부가 제공하고 있나요? 취학 전 아동에 한정해서.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취학 전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소득유형별로 예를 들면 중위소득의 75% 이하인 가정에서 취학 전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으면 85%를 정부가 대줍니다. 그런데 중위소득 120%까지 올라가면 60%, 중위소득 150%까지 가면 30%를 대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그러니까 재정이……

○소위원장 박수영 재정사업에서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래쪽에서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요.

○정일영 위원 중위 150%요? 그럼 얼마라고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30% 지원해 줍니다.

○정일영 위원 그러면 150%면 연봉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연 수입이? 소득으로 치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게 아마 가구 기준인 것 같은데…… 가구 기준 통계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개인 같으면 중위소득이 4100만 원인데 지금 가구로는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 돼 가지고요.

○정일영 위원 어쨌든 이 공제한도 2009년도부터 동일하다는 것에 대한 설명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리고 그 중복된다는 것도 정확히 저소득층에 얼마만큼 어떻게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복된다는 건지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기재부에서 자료를 위원님들께 제공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 자료를 받고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요, 박성훈 위원님 의견 있으시네요.

○**박성훈 위원** 실장님 그리고 차관님, 이 개정안에 관해서 문제점 중 하나가 조부모 등 친족을 통한 양육에 의존하는 가구의 경우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이렇게 전문위원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조부모 양육하는 경우에도 재정사업이 있지 않아요? 새로 만든 제도가 있었는데?

○**박성훈 위원** 이번에 새로 그 제도를 신설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논리를 가지고 정일영 의원님 안 이런 거를 갖다가 반대하는 것은 저는 맞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지금 우리가 일과 가정의 양립 또 일하는 여성에 대한 대우, 결과적으로 이어지는 게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논리를 가지고 반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는 세제나 재정이 중복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원을 못 해 주겠다 이런 논리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공제한도 신설을 하다 보면 지금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역진적으로 혜택이 주어지는 이런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기 위해서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 보겠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좋으신 말씀……

○**정일영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잠깐만요, 조부모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 서울시, 제 기억에 서초구인가 거기가 일찍 시작을 한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조부모에 대해서도 지원이 되지요, 구에서 먼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 논리는 박성훈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딱 맞는 논리는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어쨌든 기재부에서 관련 자료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정일영 위원님 포함한 우리 위원님들께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 받고 다시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14번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157페이지, 이동통신서비스 요금 세액공제 등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159페이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안으로 대별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주자와 기본공제 대상자의 필수적인 통신서비스 이용에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세액공제하는 안이 있고 그리고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에 이동통신서비스 사용금액을 추가해서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려는 안입니다.

검토의견 160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 근로소득자 세부담 경감 측면이나 그리고 휴대전화 사용금액은 일상생활에 필수재적인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필수 소비 지출항목으로서 기본공제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세제혜택을 신설할 경우에 조세 지원으로 신설을 하게 될 경우에 면세자인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정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부분과

그리고 다른 필수서비스 요금으로서 전기요금 등과 유사한 일상적인 경비에 대한 공제 요구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세액공제를 신설할 경우에 예상되는 세수효과 부분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전문위원 말씀처럼 이 부분은 세수감은 조 단위로 발생하는 반면 개개인에 대한 통신비를 절감해 주는 효과는 월 한 2만 원 정도의 효과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근로소득 관련된 공제가 굉장히 이미 높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공제나 감면을 만드는 것은 정부로서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면세자 밑으로는 추가 혜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한 대로 필수비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근로소득공제로 해서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 줍니다. 그 공제에 의료비나 의복비나 식비나 통신비 이런 필수적인 지출은 그걸 차감하고 그다음에 추가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논의 구조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본공제에 이미 상당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걸 논의하게 되면 그러면 전기요금이나 난방비 이런 것까지 번질 때 저희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좀 막막한 상황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1인당 2만 원 정도인데 다 합하면 조 단위로 세수결손이 나기 때문에 이걸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핸드폰 안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것은 더 이상 논의하지 아니하고 소위원회에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인적용역제공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제공자의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3%에서 1%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영세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달자 등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과세관청이 신고를 확정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소득세 환급금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세무대리 수수료 지출 방지와 그리고 납세자 편의 도모 측면에서 원천징수세율 인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최종 결정세액 대비 원천징수세율로 인해서 환급금이 과도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은 국세행정력 낭비로 이어지는 측면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171페이지 부분입니다.

다만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여 소득세 환급보다 미납액에 대한 징수를 하게 되는 상황에서 조세저항이 좀 더 클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얘기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율을 현재 3%로 부과를 하고 연말정산 때 이것을 나중에 돌려주거나 추가로 징수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현재까지 3%의 경우에 보면 그걸로도 부족해서 연말에 추가로 더 내는 규모가 2조 3000억, 더 내 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돌려주는 게 1조 3000억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3%를 1%로 내리게 되면 당장은 덜 거두니까 좋은 것 같지만 저희가 추계를 해 보면 내년 추가로 더 낼 사람이 4조 9000억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즉 제 말은 뭐냐 하면 추가 납부가 더 만성화되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세저항 같은 게 보면 차라리 현행처럼 3%로 하는 게 균형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로 직권으로 환급하라는 이야기는 이분들이 대부분 영세해서 기한 단축 대상자가 한 수백만 명이 될 건데 이것을 3개월 이내에 국세청보고 결정하라는 게 굉장히 행정적으로 부담이 될 소지가 커서, 대신에 국세청에서는 최대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해서 안내해 주고 알려 주고 통보하고 이런 쪽으로 더 노력해서 이분들의 권리를 좀 도와주겠다 이런 정책을 갖고 있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방금 차관님 말씀처럼 환급금을 인지하지 못하는 게 가장 큰문제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것을 납세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충분히 시스템적으로 보완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소위원장 박수영 국세청에서 누가 나와 계신가요?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저희가 22년부터 인적용역 소득자 환급금 찾아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종소 신고기간 끝나면 6·7·8월 이렇게 미리 체험 같은 걸 해 가지고 안내를 내보내거든요, 9월 달에. 그런 사업은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해서 굳이 이런 제도 변경, 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실무적으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국세청 국장님, 법안 2개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기재부차관님이 설명하신 거랑 국세청도 같은 입장인 것이지요?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저는 세율 인하 담당 국장은 아니고요. 제가 인적용역 소득자 관련된 감면해 주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그 행정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 환급해 주는 것 보다는 원천징수를 미리 많이 거둬 두는 게 낫다 지금 이런 얘기인데……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세율 부분은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22년부터 환급금 찾아 주기를 5월 종소가 끝나면 6월·7월·8월 준비해 가지고 9월에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3개월 정도 직권 결정을 하자는 안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것도 가능한 하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알겠습니다. 아마 청장님이 낸 안이라 가지고 지금 얘기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차관님 설명을 들으면 그럴 듯하기는 한데요. 이게 현장에 관한 이야기 거든요. 그렇지요? 현장에 관한 이야기는 임광현 전 의원, 지금 청장이 제일 잘 알 텐데 이것 불러서 물어볼 수도 없고……

○소위원장 박수영 아마 지금 국세청장 입장에서는 반대할 것 같습니다.

○정일영 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태호 위원 국세청장은 이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소위원장 박수영 지금도 견지하고 있습니까?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요. 현장을 제일 잘 아는 분인데……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말씀은 국세청에 이렇게 부담이 많이 간다고 하는데, 그것 이상하잖아요.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이상해요.

○정태호 위원 이것 보류를 시켜 놓으시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이 과표확정기간 있잖아요. 현재 시행령에서 1년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안도걸 위원 그런데 이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당길 수가 있지요? 최대한 빨리 확정 신고를 해 주면, 확정을 해 주면 본인들이 빨리 환급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3개월로 당겨 버리면 너무나도 행정력이라든지 시스템 정비 등 이런 게 필요해서 어렵다고 하는 건데 어느 정도까지 당길 수가 있습니까?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지금 저희가 5월 종소가 끝나면 한 2달 정도 자료를 입력하고 오류를 점검합니다. 그다음에 남는 게 한 달 정도면 좀 빠듯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서 3개월은 조금 빠듯하다는 의견을 작년에도 냈었고요. 그런데 저희가 직권으로 환급급 찾아 주기를 해 보니까 3개월 해도, 지금 일단 안내는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다 채워 가지고. 거기에 비춰 보면 그렇게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도걸 위원 그러니까요 국세청의 현재 세정 능력으로 당길 수 있는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3개월 아니면 4개월로 한다든지 해 가지고……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4개월 정도 넉넉하게 해서……

○안도걸 위원 4개월 정도 해 가지고 그것은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한 가지 말씀만, 물론 국세청 국장이 말씀하겠지만 이게 국세청에서 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세액을 확정하는 행위는 아닙니다. 그냥 알려 주는 것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국세청이 빨리 알려 줘 가지고 했는데 결국 그게 잘못되면 납세자가 그걸 추가적으로 더 환급을 하든 추가 납부를 하든 그건 납세자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빨리 당겨지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인지는 조금 더 따져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말씀에 일리는 있는데 국세청장의 의견을, 국세청의 의견을 한번 받아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사이에 국세청은 가서 의견 만들어 오세요.

○국세청개인납세국장 박종희 예, 그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안건 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입니다.

174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연말정산에 따라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할 경우 현행 3개월 분납 규정을 6개월 동안 나누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75페이지입니다.

분납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할 경우 근로자의 추가 납부 부담을 완화하고 가계 유동성 위험을 완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관련해서는 세액의 국고 수납시기가 좀 늦어짐에 따라서 국가 재정흐름이 지연되고 이 자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 감안하셔서 같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는 석 달간 10만 원 이상 추가 납부한 사람이 분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6개월간 하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그래서 현재 종소세는 2개월, 연말정산 사업소득세는 3개월 하고 있는 걸 감안할 때 저희는 3개월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추가로 더 길게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징수의 신속성·효율성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만큼 규모가, 자금이 빨리 안 들어오니까 어떤 예산에서 쓰려면 결국에는 한은의 일시차입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부담이 크지 않다면 그냥 현재로서 3개월 정도로 유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면 장기분납, 분할납부를 하게 되면 수혜는 고소득층에 집중된다고 돼 있는데 세제실장님, 그 부분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무래도 분납을 한다는 것은 납부세액이 많을 때인 것이고요. 지금 통계를 보면 100만 원 초과자들이 전체의 20% 내외고 사실 평균적으로 급여가 8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초과로 내셔야 될 금액이 66만 원입니다. 물론 66만 원도 세 달에 내시는 것보다 여섯 달에 나눠 내시면 부담이 덜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고소득자한테 조금 더 혜택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걸 마무리하려고 그랬더니 최은석 위원이 딱 들어오시는데요.

○최은석 위원 밤 10시까지 하려면 아직 한참 남았는데요.

○오기형 위원 한참 남았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연말정산에 따른 분납, 의원님 안건을 지금 막 논의하고 있는데……

○오기형 위원 밤 11시까지 해야 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계류를 하려고 하는 참에 위원님께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174쪽의……

○최은석 위원 그런데 혹시 계류하자는 의견은 누가 내셨습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입니다.

오신 김에, 딱 오셨으니까 본인이 왜 이런 법안을 내셨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시자마자 되겠습니까?

○박성훈 위원 정부는 장기분납하면 현재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된다 그 이야기를……

○소위원장 박수영 지금 3개월에 분납하고 있는 걸 6개월로 나누자고……

○정일영 위원 제가 한 이삼 분 할게요.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정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정일영 위원 그사이에 좀 정리하시고.

차관님 설명이 이걸 길게 분납, 그러니까 3개월 더 하는 것 아니에요, 현재 3개월인데? 그렇게 했을 때 세수가 차질이 생기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큰 차질은 아니지만 그만큼 일단 적게 들어오는, 시기적으로는 조금 들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정일영 위원 아까 꽤 큰 차질이 생기는 것……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건 아닙니다.

○정일영 위원 이게 차질이 생겨야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최은석 위원 차질은 없지요.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빨리 들어올 게 좀 늦게 들어온다는 표현을 아까 그렇게 하시더라고.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한은의 일시차입까지 얘기하셨는데 좀 과한 것 같은데……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아까 일시차입까지 그 정도는 제가 볼 때…… 액수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인정을 하시니까 그것은 아니고, 3개월 분납이 6개월 분납으로 되니까 다소 문제, 조금씩은 덜 들어오겠지요.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납세자, 국민인 것 같아요. 국민들한테 그만큼 편리하고 좋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최은석 위원님 준비돼서.

○최은석 위원 이게 여기 뒤에 보면 혜택이 고소득자한테 집중된다고 하는 것은, 여기 176페이지 보면 예를 들어서 고소득자는 421만 원이라고 돼 있고 4000만 원 이하 구간은 평균 28만 6000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납부세액인가요? 어쨌든 수혜가, 물론 고소득층에 대해서 금액적인 것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차관님, 소득이 예를 들어서 사오천만 원 정도 되는 분들이 세금 몇백만 원 정도 나왔을 때 세 달에 걸쳐서 나누어서 내던 것을 6개월 정도 나눠서 내는 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혜택이 없다라고 보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고, 어차피 자기가 받는 소득이나 자기 재산에 따라서 체감하는 것들은 저는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굳이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라고 하기보다는 모든 근로소득자들이 다 같이 혜택을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한 달에 한 20만 원 정도라도 분납되게 되면 월소득 300만 원 정도 되는 분들은 10만 원, 20만 원 느끼는 체감이 고소득자들이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느끼는 것에 비해서 훨씬 더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일방적으로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라고 하기보다는 전체 근로소득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근로소득자들이 진짜, 유리지갑이 지금까지 제일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체 조세 구조에서 문제점으로 다들 인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은 고소득층보다는 전체 근로소득자에 대한 혜택을 좀 부여한다는 걸로 해서 다시 한번…… 혹시 계류 의견을 내셨던 위원님들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도 안 내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그러면 이 부분은 이번에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장이 계류하기 직전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게 행정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3개월로 분납하던 걸 6개월로 분납하면 행정비용은 더 늘지 싶은데, 3개월에 마무리하던 걸 6개월까지 계속 관리를 해야 되니까 행정비용은 좀 늘 것 같습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일시차입 이자가 대충 얼마 정도 늘어나게 됩니까? 추정하신 것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본적으로……

○최은석 위원 차입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된다니까. 이게 뭘 차입을 해요, 차입을 하기는? 아니, 이게 들어오는 인컴하고 아웃 밸런싱이 정부에서 조금만 노력하면 다 맞춰질 것 같은데.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마무리 좀 지어 주십시오.

○안도걸 위원 이게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는 그 소요가 얼마인지를 좀 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늦춰졌을 때 조기에 3개월 내에 들어올 수 있는 돈이 6개월로 연장이 되니까 어느 정도가 늦춰지는 건지, 그게 자금의 미스매치를 어느 정도 가져오는 건지. 그래 가지고 마통이나 한은이나 아니면 재정증권 있잖아요. 분명히 그것 있기는 있을 거예요, 지금. 그 증액이 유예되기 때문에 먼저 숫자를 가지고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기재부가 아까 말씀만 하신 것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고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179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을 현행 2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금액이 1996년도 이후에 단 한 차례도 상향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세목 간 형평 차원에서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공제를 조정을 함에 따라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나 그리고 재정적인 영향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세수감은 얼마로 예상되는지부터 해서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가 1년에 한 9000억 정도로……

○소위원장 박수영 세수감이 1년에 6000억?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9000억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1년에 9000억, 그러면 굉장히 많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기본적으로 미리 250만 원을 빼고 세금을 내는데 그걸 1000만 원으로 다 올렸기 때문에 그만큼 기본으로 나간다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이 기본공제라는 것은 필요경비, 복비나 수수료 이런 것 다 차감을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다 증빙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노력이나 품이, 그걸로 250만 원을 추가로 빼 주고 있는 건데 그것을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은 더 큰 모습이 있고요.

이게 또 한 사람의 모든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을 1000만 원 하는 게 아니고 자산의 종류별로 10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주식, 파생, 신탁별로 다 1000만 원이기 때문에 합산하면 최대로 하면 4000만 원까지도, 물론 1년에 한 번씩 다 그런 거래가 있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하고, 또 1세대 1주택 이런 데는 비과세고요. 주식 같은 경우에도 대주주 요건이 아니면 양도세가 아예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전문위원님, 이게 세수감이 9000억 맞습니까?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안 했나요?

○전문위원 정지은 예산정책처 추계 자료는 지금 추정 곤란으로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추정 곤란?

○전문위원 정지은 예, 이것은 아마 정부 측에서 별도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그렇게 자신 있게 감 9000억이라고 얘기를 하시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저희가 내부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래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세수감이 상당히 많은데……

발의하신 최은석 위원님 말씀.

○최은석 위원 지금 96년에 양도소득 기본공제 관련된 금액이 결정된 이후로 아까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경우에 부동산은 그때 수도권……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전체 자산의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이 되는 기본적인 양도 자산의 어떤 규모나 시가나 이런 것들 보면—주식시장도 마찬가지로—저는 종합주가지수로 보면 96년에 얼마쯤 됐는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상승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

적정 규모에 대해서 양도소득 기본공제금액은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실은 10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현실적인 정도 수준으로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일영 위원님.

○정일영 위원 그 9000억은 아무리 봐도 이해가 좀 안 가고요. 세수 감소 이런 추계를 근거 있게 정확히 제시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이상한데, 어쨌든……

그리고 지금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게, 이것은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고자산 계층에 혜택이 집중된다? 고자산 계층이 자산이 얼마 있는 사람을 고자산 계층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지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면서 기본공제금액이 25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로 상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근에 양도 차액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는 자산 규모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정일영 위원 하여튼, 알겠어요. 전문위원님, 알겠고.

이게 저는 고자산 계층, 물론 고자산, 진짜 초부자들은 당연히 여기의 혜택을 받겠지요. 그런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 중산층들이 많이 사는데 그분들을 만나면 저한테 그래요. 저기 있는 게 우리 아파트인데, 38평, 39평 되는 이런 아파트 살고 있는데 그것을 상속할 때 세금을 왜 자꾸 많이 가져가려 그러냐 그런 얘기들 하거든.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 보면 중산층이 많이 내려가겠지만 수도권이나 이렇게 압축해서 보면 중산층이 소득이 좀 올라가요. 그러니까 아파트 조금 괜찮은 것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기본공제를 1000만 원으로 한꺼번에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게 96년도에 정해진 이후에 한 번도 상향 조정이 안 됐다 그 얘기 아닙니까? 차관님, 그렇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일영 위원 이것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이중으로 도와주는 것 있습니까, 아까 돌봄서비스처럼? 그런 것 없잖아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주식 같은 것을 보면 양도소득세를 내는 그룹이 종목당 50억 원 이상 들고 있는 분들만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들한테 추가로 혜택을 드리는 점 이런 것을 감안을 해 보자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요.

○정일영 위원 부동산은요? 집 가진 사람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부동산 1세대 1주택은 현재 비과세입니다. 그게 아닌 분들이 내는 건데 기본적인 경비는 다 제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250만 원을 보이지 않는 품 같은 것을 감안한 건데 그것까지도 늘려야 될지, 지금 저희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일영 위원 1세대 1주택이 다 양도세가 없나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12억까지.

○기획재정부제1차관 박금철 12억까지.

○정일영 위원 그러니까,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일영 위원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을…… 여기 전문위원한테 그렇게 물어본 건데 고자산 계층 그 사람들이 엄청 부자라고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은 안 할 거예요. 그 한도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사 가지고 왜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분들한테 ‘아파트 팔고 다른 데 가서 살면 되지 세금 많이 낸다고 자꾸 우리한테 컴플레인 하느냐, 두 분이 사는데 팔고 저 아래로 내려가면 되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이것 팔면 정부에서 세금 받은 때 갑니다’ 그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못 팔고 버티겠다 그러더니 부동산, 아파트 가격이 자꾸 올라가는데…… 여러 이유 중의 하나지요.

그런데 어쨌든 기본공제 이런 것을 30년 동안 조정을 안 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25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이라든지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차관님, 이게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나머지 조세 항목들에 비해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는 거의 변화가 없었잖아요. 그 이유가 각각 자산별로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따로따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따로따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박성훈 위원 실장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가 96년 이후에 거의 기준의 변화가 없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세제 당국에서는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비과세 가액 자체를 계속 올려오고 있습니다. 12억이 옛날부터 12억이었던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9억이었다가 12억으로 올라간…… 물론 공제를 손을 댈 것이냐 비과세 가액을 손댈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부동산하고 주식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파생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많이 없고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차관님이 계속 말씀드렸지만 주식양도세 같은 것은 종목당 50억을 넘게 가지신 분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택 같은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종부세도 그런 혜택도 있지만 양도세에도 1세대 1주택에 혜택이 있고 또 필요경비 같은 것은 따로 빼 주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과연 공제를 다른 소득공제나 이런 것처럼 물가 상승에 맞춰서 계속 올려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아마 12억 이상 아파트가 있는 곳이 정일영 위원님 지역구밖에 없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기는 하나 1996년에 만들고 지금 30년 넘게 한 번도 손 안 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다가 아까 9000억이라고 했던 세수감 추계도 사실 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다시 한번 이것 조금 건드리고 세수감 정확하게 계산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몇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만들어서 정일영 위원님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한번 더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18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상향해서 규정하고 그 기준을 시가총액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인 경우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184페이지입니다.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대주주의 기준을 법률에 상향해서 규정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 정책의 기조 변경 등과 함께 같이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상향하겠다는 취지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을 처음에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라는 취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시장은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급변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대로 시행령으로 유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시행령에 50억 기준은 언제 만들어진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22년 아니면 23년인데요, 제가 정확한 것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3년 말에 개정을 해 가지고 24년 1월에 정하고……

○소위원장 박수영 그때 대주주 기준을 얼마에서 50억으로 올리신 건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10억에서 50억으로 올렸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답변했고 위원님들.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상장회사 대주주 기준을 보니까 과거에 100억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코스피 지분율은 3%, 이게 쭉 가다가 나중에 13년도에 50억, 16년도에 25억, 18년도에 15억, 20년도에 10억 이렇게 쭉 나와서 했는데 19년도부터 대부분 금투협회에서의 제안이었습니다. 세제를 바꾸자. 왜냐하면 이 논의 자체가 특정 시점에 주식을 어떻게 보유하고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 우연성을 가지고 과세를 하는 게 맞냐라고 비판을 했던 거고.

또 실제 적절한 논쟁인지 잘 모르겠지만, 여전히 저도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연말 기준으로 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주식을 사고판다, 그게 영향을 준다 이런 논쟁도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서 그러지 말고 선진적인 제도로 가자 해서 금투세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즉 어떤 특정 시점에 보유한 게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에 갖고 있던 모든 금융 관련 소득에 대해서 통산해서 보자, 분산 투자하게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손해 본

종목, 이득을 본 종목 함께 통칠 수 있도록 하자. 또 과거에 손해 본 것 이월해서 하자 이런 논쟁을 하면 이 논의 자체가 필요 없는 논쟁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제도 자체가 다시 논쟁되는 게 적절한가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후에 분산 투자, 장기 투자에 맞게 구조를 바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50억, 10억 또는 100억 논쟁은 여기서 좀 멈추고 다른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실제 여러 가지 정책 논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입니다. 시장가격을 놓고 어떤 세금 정책을 추진하는 게 실제 효과가 있느냐? 저희들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세금 갖고 부동산 가격 못 잡는다고 비판했고. 또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 세금 갖고 주식시장 올릴 수 있냐?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제일 유력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보조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 그래서 세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효율성·중립성 이걸 이야기해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적절하냐 이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처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세수 기반이 부족하다, 세수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적절한 것 또는 이후의 논의의 맥락들을 긴 호흡에서, 자산 관련된 세제개편 방안들을 원칙에 기초해서 한번 다시 재구성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안도걸 위원 저도 오기형 위원님하고 입장의 궤를 같이합니다. 근본적인 주식 과세에 관한, 주식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한 그러한 제도 변경은 금투세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표준이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도입할 거냐라는 부분과 같이 연계해서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되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제시한 내용이 저는 상당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과세 대상은 분명히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법률에서 규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이게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에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그 지침을 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법론에 있어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저는 왜 굳이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대주주로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부터 한번 근본적인 질문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종목에 대해서 지분 보유 비율하고 또 시총, 둘 중 하나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판단컨대 주식을 보유한 분들의 담세능력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저는 개별 종목에 대한 보유액보다는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전체 주식에 대한 총액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하는 게 담세력을 훨씬 더 정확히 반영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논란을 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대주주에 대한 기준 대신에 담세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지표, 기준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은 법률에 상향은 해야 되지만 지금 50억·100억 논의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근본적인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최은석 위원님 먼저 거수하셨습니다.

○**최은석 위원** 50억으로 이렇게 상향한 게 언제라고 아까…… 제가 좀 까먹었습니다.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24년 1월부터 적용됐습니다.

○**최은석 위원** 24년 1월에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얼마쯤 했지요? 24년 1월이면 한 2500 정도? 예를 들면 2500. 3000 안 넘었을 거니까, 그렇지요? 결국 우리가 100억이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현재 너무 부자들로 상정하고 이렇게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보다는……

실은 우리 주가지수 5000은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정권에서 다 지향하는 바이기도 하고 5000을 넘어서 7000 시대도 갈 수 있는 건데 지금의 소액주주들 중에도 주식 투자를 잘해서 앞으로 자기도 수십억 이상의 주식 자산가가 되겠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다 할 거거든요. 우리 1400만 개미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0억이라고 하는, 50억이라고 하는 기준이 그냥 부자라고 하는 이런 걸로 너무 이렇게 선을 지을 게 아니고 주식 투자를 하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투자를 잘해서 앞으로 자산을 불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 지금 주가지수 5000을 근거로 하면 아까 딱 배 정도는 올려 주는 게 되게 합리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저는 100억까지 대주주의 범위를 상향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잘 검토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박성훈 위원님 아까 손 드셨습니다.

그다음에 오기형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박성훈 위원** 진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완화는 지난번 여야 영수회담 당시에 이재명 대통령께 저희 국민의힘이 제일 먼저 요청했던 사안이라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이게 50억이 적절하냐 아니면 100억이 적절하냐 그 수치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과세 대상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회피하려고 하는 이런 유인으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연말에 극심해지는 부분을 바로잡고자 하는 목적이 제일 컸던 게 이유였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게 대주주의 숫자나 이런 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유 금액이나. 결국 일부 고소득자에게만 국한돼서 나타난다, 그 혜택이 집중된다 이런 부분들은 저는 조금 받아들이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주식 시장을 지금 이재명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코스피 5000을 목적으로 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현재 50억으로 다시 완화가 되긴 했지만 정부 입장에서든 전향적으로 그 금액을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 다음에 정태호 위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기형 위원** 시장 변동성에 대한 비판은 저는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실제 그런 식의 부과 방식이 과연 적절하냐는 비판이고 그 비판에 대해서 그래서 제도개선을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판 때문에 금투세 등을 도입했던 거고요, 그 당시에 금투협회에서, 그래서 특정 시점에 주식을 보유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어떻게 얻었느냐를 중심으로 풀어야 된다. 그래서 금투세 제도 도입을 하되 기준, 기초공제금을 얼마로 할 거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정책적으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본

거지요.

그다음 두 번째로 실제 지금 이야기되는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9월 달, 10월 달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여전히 주가가 폭등해도 대한민국에서 서학개미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미국은 금투세 있어요, 대한민국은 금투세 없고. 세금 때문에 미국 시장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시장의 성장 가능성 때문에 가는 거고 그 시장에서의 지배구조가 투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지금 최근에 꼭 하는 것 중에 세금이 더 핵심이 아니라 지배구조 개선하고 서로가 같이, 주주를 들러리로 세우지 않는 것, 그 시각이 더 중요한 거고 그 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실제 세금 정책은 뭐가 중요하냐에 대해서 첫 번째는 조세의 중립성이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퇴직연금 비판하고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자는 취지는 퇴직연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택스 이팩트를 준다 하니까 거기에 420조나 물려 있잖아요. 그런데 1~2%밖에 안 되잖아요, 기금화 안 돼서. 오히려 자본의 흐름을 왜곡하고 있다, 제대로 되지 않은 구조 때문에. 실제 세금 때문에 자본시장 투자 방식 자체를 왜곡시키면 안 된다, 이걸 오히려 좀 중립적으로 하라라는 게 조세의 중립성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그렇게 가야 된다.

다만 이게 분산투자, 장기투자에 유리한 구조라면 정책적으로 보조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분산투자에 도움이 되는 게 아까 이월하거나 통합하는 그런 세제가 적절하다는 거고 장기투자에 도움이 된다고 할 때 ISA나 또는 배당수익 분리과세를 일정 정도 첨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자본시장 세제를 오늘 다 이야기하면 한이 없겠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전체적으로 세제 개편 방안을 다시 고민해야 된다. 지금 50억, 10억 또는 100억 논쟁할 때는 아니다. 그리고 논의할 때는 조세의 공정성, 중립성 그리고 효율성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일영 위원 저 1분만 하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양해되셨으면 정일영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정일영 위원 이 논란은 지난번에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오 위원님?

○오기형 위원 예.

○정일영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아마 이형일 차관님이 지난번에 세제개편안 발표할 때 10억으로 했었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정일영 위원 그러다 많이 좀 혼나고 그게 다시 50억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맞습니다.

○정일영 위원 그래서 엄청 그때 논란을 많이 벌이고 차관님도 고생하셨고 그래서 이 논란을 다시 이 밤에 지금 할 필요, 실익은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연말에 출렁이는 것은 맞잖아요. 연말 랠리가 없어지거든.

정태호 위원님.

○**정태호 위원** 저는 그런 논쟁을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 대주주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정책에 대한 오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돈을 벌었으면 세금 내야지요. 그런데 이것을 대주주라고 해 가지고 그 기준을 정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소모적인 논쟁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50억이나 10억이나 가지고도 그랬던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 정도 하시고 이게 정부 측에서는 법률로 올리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보시고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연말 랠리 때문에, 이게 지난번에 10억 낮추니까 연말에 랠리 다 죽어서 우리 자본시장이 가라앉는다는 이런 비판들이 많아서 제가 100억으로 올리는 법안을 냈던 것인데 100억·50억·10억 부분은 좀 더 큰 틀에서 논의하자는 위원님들 의견이 많으시니까, 하더라도 이게 과연 시행령에 규정할 사항인가는 저는 좀 의심스럽거든요. 법률로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검토하고.

그다음에 부대의견을 굳이 붙이지는 않겠지만 오기형 위원님, 정일영 위원님, 정태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틀에서 봐야 될 것 같고 대주주라는 용어 이것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대주주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른 용어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기를, 기재부에서 검토해 보기를 바라고 안이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공공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서 양도하는 경우로서 세대 전원이 거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1세대 1주택자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그리고 세율을 적용할 때의 보유기간 산정과 관련해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개시일부터 기산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부분입니다.

이 개정안의 내용은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한 후에 분양 전환을 하고 취득을 했을 때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세부담을 또 추가로 경감시키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건설임대주택 취득 후에 조속한 양도를 촉진하도록 할 경우에 임대주택 신규 공급 가능성 효과가 기대되는 측면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현재도 관련해서 공공건설임대주택에 대한 분양 전환 시 분양 직후에 양도를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에 대해서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보유기간 특례를 허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것은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해서 나중에 팔 때 1세대 1주택이면서 장기특별공제를 받고자 할 때 실제로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만큼 공제율을 점점 늘려 갑니다. 10년을 하면 80%를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 이 기산점을 분양으로 전환해서 본인 소유로 된 그때부터 하지 않고 원래 임대주택에 살았으니까 예전 주택 살

때부터 기산해 달라 이런 취지로 저희는 이해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보유 취득이나 임대차해서 거주, 그러니까 너무 개념상 다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소급해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장특공제 시스템과 너무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어떠십니까?

이게 그러면 양도세도 똑같은 기준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그렇지요. 취득가액에서 매도가액……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게 되면 양도세는 또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될 텐데, 그렇지요? 양도세도 본인이 처음에 거주했던 때부터 계산해야 맞을 것 아닙니까? 자기 본인 소유로 넘어왔을 때가 아니고, 이 논리라면.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렇지요. 이 논리대로라면 그렇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의원안의 논리라면 맞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요.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이것 이소영 위원님이 낸 거라서 바로 계류는 하지 않고 일단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해 놓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시지요.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소득세 분야입니다.

먼저 주요내용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안은 기업이 자본금을 감소시켜서 실시하는 배당, 소위 감액배당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상단입니다.

자본준비금은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거래를 통해서 주주에게 받는 금액을 적립한 것으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은 투자금을 다시 돌려받는 환급 성격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관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주주의 취득가액을 초과한 감액배당금액은 납입한 자본금 이상을 돌려받아서 이익을 실현하는 성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안은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고 법인세법에서도 같은 취지로 과세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한 조치로 보았습니다.

한편 정부는 같은 취지로 지금 대주주에 한정을 해서 과세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세제개편안으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차규근 의원님 안은 모든 주주에 대해서 과세를 하도록 하는 안이어서 관련 정부안과 함께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정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 정부도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고 이번 세제개편안 발표를 하고 이것을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차규근 의원님 안 중에 가, 나, 다가 있는데요. 나하고 다는 현행 법규로도, 현재에도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가 기존에 바뀌어져서 저희가 나와 다에 대해서는 이미 과세를 하고 있고 가에 대해서는 시행령으로 과세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개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의원님 제안 안이 다 집행이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한 가지 실제로 감액배당 할 때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하나 하면 개인주주의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취득가액만큼을 감액하면 얼마만큼 과세할지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서 50억 이상을 갖고 있는 대주주 양도소득과세가 되는 분들한테는 이 제도를 적용하고 나머지 개인주주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주식 양도가, 거래가 되는 과세되는 분들의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배당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을 겁니다.

그래서 차규근 의원님하고 취지는 같은데 실제적으로 집행가능성 감안까지 해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주십시오.

별다른 의견 없으시면 이 안건은 소위에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개인이 주식을 당해 주권발행법인에게 매각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배당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거래소를 통해서 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하려는 내용입니다.

202페이지입니다.

현행 세법상 법인이 소각 또는 유상감자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각한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자본거래로 보아서 의제배당으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3페이지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거래소를 통한 거래가 아니라면 일률적으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조세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둘째 부분입니다.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이 되기 때문에 분류과세인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응능부담원칙에 부합하는 세제라는 점에서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만 현행 상법에서는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은 자산거래로 보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1년도 개정 전 상법에서는 자기주식 취득시에 지체 없이 소각을 하거나 일정 기간 내에 처분을 하도록 하였으나 현행 상법상으로는 다양한 목적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가능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본거래가 아닌 자산거래로 보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자사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상법에서 시스템을 바꾸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저희가 세법도 다 같이 바뀌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자본 거래로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바뀌야 되는 점 정부도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사주 거래가 워낙 오랜 시간 동안 기업들에게 경영 속에서 녹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이거로 인한 여러 가지 혼란이 없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오기형 의원님 안도 저희는 충분히 취지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런 방향으로 개정할 생각이나 예상치 못한 부분까지 다 짚어 보고 난 다음에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저희는 현재 용역을 발주했고 빠른 시간 내에 이 부분은 검토를 완료해서 정부안이 준비가 되면 그때 같이 병합심사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용역은 언제쯤 완료될 예정인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한 석 달 안에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3개월 안에.

알겠습니다.

발의하신 오기형 위원님, 용역 나오면 같이 논의해도 되겠습니까?

○오기형 위원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때 다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210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같은 취지의 오기형 의원님 발의 법안이고요. 법인세법 분야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에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 결과 나올 때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차규근 의원님 안이고 아까 소득세법에서 논의하셨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감액배당 등 익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개정안입니다.

관련 취지는 동일한 부분인데 법인세법에서는 감액배당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익금을 산입하도록 감액배당 중에서도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장부가액을 한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취득가액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익금산입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다는 측면 좀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현행으로 다 집행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현재 과세 중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현재 과세 중이라서 개정의 필요성이 없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전문위원 보고와 마찬가지로 이 안건은 소위에 계류하는 것으로 하겠

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보고드리겠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최은석 의원님 안은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 이상에서 20% 미만 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50%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안입니다.

그리고 박민규 의원님 안은 80%의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되는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을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22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지금 내국법인이 피출자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 익금불산입률 요건을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내국법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그런 자료들을 감안했을 때 해외 입법례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요.

그리고 223페이지입니다.

최은석 의원님 안은 현행 3단계 구간을 4단계로 완화하는 부분인데 문턱효과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월에 관련 동 제도의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기획재정부에 대해서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해서 동 제도의 피출자법인 출자비율에 따른 구간별 적정 익금불산입률의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의견이 심사보고서에 기재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 부분은 22년에 일반회사 기준으로 익금불산입을 한 번 올렸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해서 26년까지 종전의 익금불산입률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한번 필요성이 있을 때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언제 하셨다고…… 몇 년이라고 하셨어요, 아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이 제도 자체는 22년도에 고쳤고요.

○소위원장 박수영 22년도에.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리고 위원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는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유예 조치를 지난 2월에 또 하셨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면 법안을 내신 박민규 의원님 안 계시고 최은석 위원님 계시는데 위원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은석 위원 지금 우리나라 어쨌든 법인주주의 이중과세 문제 이 부분에 대한 해소 차원은 아마 다들 전에 우리 기재위의 여러 가지 의견에서도 보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공감하고 계신 것 같고 또 특히 아까 전문위원님 얘기 안 하셨지만 외국법인에 비해서 내국법인이 지금 상당히 불리하게 대우받고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의 지분율에 따른 개정 전·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비교한 데 보

면 20% 미만은 그때도 조정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10%에서 20% 사이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는 법인주주에 대해서 아까 문턱효과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완화하는 것들은 저는 되게 필요해 보이고 아까 주요국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유독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감안해서 이 부분 지금 시점에서 자꾸 뒤로 미룰 게 아니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도 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세제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난 번에 20% 미만은 안 건드렸던 모양인데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그래서 단계를 하나 더 만들자는 게 최은석 의원님 안이지 않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현행 법안이 격차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격차가 됐냐 하면 종전에 지주회사하고 일반회사하고 익금불산입률이 달랐는데 지주회사 쪽이 많이 유리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쪽하고 일반회사를 합치면서 지주회사 쪽은 조금 더 낮추고 일반회사는 그것을 조금 더 올리는 쪽으로 가면서 그때 3단계 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과 다르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현재 다릅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도 그게 꼭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같은 경우는 최소 지분율 요건도 있고 100%를 다 해 주는데 국내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소 지분율 요건이 없고 또 지분율에 따라서 차등으로 하고 있듯이 각국마다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꼭 이것을 같이 맞추는 것은 아닙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차관님,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구간은 똑같습니까? 3개의 구간으로 나뉘어서……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3개입니다.

○박성훈 위원 딱 3개입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 같은 경우에도 물론 기준은 다르지만 33%를 기준으로 해서 익금불산입률이 33% 미만이면 50%고 33%를 넘어가면 100%, 그러니까 어느 구간으로 자를 거냐의 문제는 있겠지만 문턱효과, 그러니까 1%만 차이 나도 익금불산입률이 큰 차이가 나는 식으로 각국 상황에 따라서 제도설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훈 위원 그러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34% 스톱시홀드가 발생하는 격차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다 동일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

○**안도걸 위원** 최은석 위원님 말씀이 문턱효과가 너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아까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연혁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100, 80, 30으로 해 가지고 뚝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격차가 심한 것 아닌가요, 이것은? 그러니까 이게 근거가 됩니까, 논거가?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주회사는 과거 옛날에는 사실 법인에 대해서 아예 국내자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인데 이것은 재벌들이 문어발식 소위 옛날식의 표현으로 말하면 문어발식 확장을 막는다고 그래서 불이익을 주자 그래서 이걸 안 하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외환위기 이후에 지주회사 제도를 좀 더 뭔가 우리 새로운 지배구조로 만들어 보자고 하면서 지주회사에 대해서 혜택을 많이 줬었습니다.

그런데 지주회사에 대해서만 익금불산입률에 대해서 혜택을 주다 보니까 일반회사는 훨씬 그것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원적인 구조로 가다가 보니까, 아니 왜 지주회사는 어느 정도 완성이 됐는데 계속 언제까지 혜택을 주느냐라고 해 가지고 지주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좀 낮추고 그리고 일반회사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조금 올리면서 같이 맞추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턱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히스토리는 알겠는데 안도걸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80에서 30으로 갑자기 뚝 떨어진 이 부분은 투자비율 겨우 10% 차이에 익금불산입률은 50%p 차이가 나 버리는……

○**안도걸 위원** 1%지요. 20 이상 30 미만은 80이고 20 미만이니깐 1p%만 나고 하는 거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그렇지요. 그 구간으로 따지면 1% 차이가 나는 거지요, 현행안으로 볼 때.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어차피 구간을 나누다 보면 문턱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전 걸 보니까 보시다시피 일반은 30, 50, 100이고 지주회사는 80, 90, 100인데 두 개를 하나로 만들다 보니까 100, 80 그리고 밑단을 골라서 그런 상황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이걸 볼 때 어떻게 할까 할 때 20% 미만에 하나를 더 그어서 10% 앞뒤로 나누게 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0%인데도 과연 자회사인가 이 부분 고민에 좀 빠질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원래 내국법인에 대한 지배율에 대한 개념이라고 하면 20% 이상 가져야 그래도 본인의 회사라고 해서 수익을 많이 해 주고 20% 미만이면 좀 어느 정도 하여튼 투자의 개념과 같이 연결된 것 아닌가 그런 기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위원장 박수영** 기업 경영을 해 보신 최은석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최은석 위원** 차관님 말씀이 너무 좀…… 글썄, 우리나라 전반적인 기업 지배구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실은 10% 이상 투자한 회사가, 1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부분은 단순 투자라고 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아니, 상장회사 중에 예를 들어서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뜻은 그 회사와 여러 가지 전략적 제휴를 했거나 아니면 회사 설립 시에 주주로 참여했거나 하는 것들로 봐서 일반 투자회사라고 보기는 되게 어렵고, 1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지배구조상 되게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타당할 것 같은데요.

20% 이상은 내 회사 아니더라고 하는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금 180에서 갑자기 30으로 뚝 떨어지는 게 20%와 19.9% 간의 차이를 놓고 보면 이 차이가 너무 큰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가 3개다 해서 우리가 꼭 3개 할 필요는 없는 거고 아까 실장님이 얘기했듯이 과거의 히스토리가 있으면 누가 보더라도 되게 불합리한 구간 같은 것들을 합리적으로 바꾸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생각을 해 봐야지요.

19.9%라고 하는 게 예전에 지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대개 관계 회사 같은 것들로도 충분히 우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19.9%. 실은 19.9%는 0.1%를 피해 가지고 여러 가지 관련법상의 문제점 때문에 그렇게 한 사례가 조금 있었지만 대부분 19.9% 갖고 있는 것들은 그동안 계열사였거나 아니면 적어도 같이 공동 경영을 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했거나 하는 그런 회사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위원장 박수영 안도걸 위원님과 최은석 위원님 지적도 계셨고 하나니까……

○김영환 위원 다시 한번……

○소위원장 박수영 김영환 위원님, 발언 신청하신 건가요?

○김영환 위원 이게 일단 이중과세 조정 제도잖아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김영환 위원 그러면 배당한 소득에 대해서 일단 법인세를, 그러니까 그 이전에 법인세 내고 배당한 소득에 대해서 이중과세 조정인데 이 비율을 한번 돌려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했을 때 이중과세가 어느 정도 조정되는지 샘플 한 100개, 200개 해 가지고 돌려 보셨어요? 그래서 이중과세 조정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혹은 이중과세 효과가 더 있었는지 아니면 덜 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 보셨어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제가 알기로는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김영환 위원 그러면 정확한 수치가 없는 상태에서 이중과세 조정 제도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까 문턱효과도 얘기를 했는데 가장 간단한 것은 비율대로 그냥 익금불산입해 주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출자한 비율만큼 익금불산입을 일정 부분 시뮬레이션 돌려서 거기에 맞춰서 조정해 주는 게, 물론 법인세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해외 자회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10% 이상이면 95% 익금불산입 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3년도에 삼성전자가 29조를 해외 자회사의 배당으로 들여왔는데 얼마 세금 냈는지를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용역이 조금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이중과세 조정 제도 비율에 과연 이중과세 조정 제도에 맞는, 법 취지에 맞는 조정 제도가 일어나고 있는지 실제 샘플들을 연구하고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사실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김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일단 기재부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가 논의로 분류를 하고, 기재부도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음 안전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정지은 다음 안전입니다.

229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한 손금산입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내용입니다.

임원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 임원이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한 경우로서 그 지급액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손금산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과 그리고 실질적인 직무수행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법률에 열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는 근무일수, 시간, 주요 회의 참석 횟수, 의사결정 기여도, 전문성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인건비 명목으로 과다한 비용을 계상해서 부당한 조세회피 시도를 예방하려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정인에게 형식적인 보수를 지급해서 조세부담을 회피하려는 일부 법인과 정상적인 직무수행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출한 일반 기업 간의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현행 법령에서 규정 해석상으로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판례 역시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인건비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판시가 있다는 점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개정안에서 실질적인 직무 수행의 판단 기준으로 열거하고 있는 부분들 중에서 주요 회의 의사결정 기여도라든지 전문성 부분 등은 주관적인 평가 요소가 수반된다는 측면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말씀하십시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도 법안 제안의 취지, 부당하거나 과다한 임원 인건비에 대해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취지에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현재 있는 차규근 의원님 안도 보면 1, 2, 3, 4항을 감안하여 판단하라고만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의무 규정이나 그런 규정이 아니고 권고처럼 저희들한테 보입니다. 이 조문 갖고도 여전히 현재 또 현행 우리 세무 당국도 세무서 나가면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상 집행할 때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이 취지를

답으려면 이 법조문을 어떻게든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바꿀지 저희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인건비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 판례나 여러 가지 저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까?

○최은석 위원 그동안에도 문제가 계속 많았지만 방금 차관님 말씀하신 대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나가서 판단할 때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는 제대로 잘 안 걸러지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라고 돼 있지만 사례를 한번 보면 지금 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는 2개밖에 못 합니다.

그것 아시지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예.

○최은석 위원 사외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는데도 2개 이상 회사의 사외이사를 한다는 것은 사외이사로서의 여러 가지 업무의 중요성 이런 걸 보면 더 이상 하지 말고 2개 회사의 업무에 집중하라는 취지일 것 같거든요.

그런데 보면 일부 대기업의 대주주 임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6, 7, 8개 이렇게 해서 상근임원의 급여를 받아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봐서 전체 앞으로 우리 자본시장의 발달이나 또 각 우리 주요 국내 기업의 여러 가지 기업문화 같은 것들을 감안하면 일반 사외이사도 2개밖에 안 하는데 상근 집행임원을 이렇게 5개, 6개, 7개 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세무조사할 때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는 제가 봐서 그동안 이 부분이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규근 의원님 안이 저는 되게, 이게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달을 위해서도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주주 임원들이 각 계열사에서 어느 정도의 급여를 받아 이런 것들보다 오히려 배당을 제대로 받아서, 본인이 필요한 돈은 배당으로 받으면 되는 거지 배당을 안 하고 그냥 여러 계열사에서 급여로서 충당한다고 하는 것들이 또 한번 배당률을 낮추는데 있어서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당한 급여 그걸로 해서 한번 이번 기회에 잘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차규근 의원님 안이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국정감사 때도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기재부에서 표현이라든지 방식에 대해서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니 일단 연구할 시간을 주고 추가 논의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은석 위원 위원장님, 이것 연구할 시간 많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 지금까지 여러 가지 데이터가 많이 축적돼 있을 거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한두 달 하면 금방 정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외이사 같은 경우에도 2개밖에 못 하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충실 의무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으로 상근임원, 집행임원도 2개밖에 못 한다든지, 실은 3개 하는 게…… 아니, 서로 3개의 회사에 내가 가서 그 회사에서만 전적으로 일하는 사람만큼 그 회사에서 성과를 내거나 이러기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거든요.

○소위원장 박수영 무한정 시간을 주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기재부가 신속히 검토하고 전향적으로, 의원님들 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사사건건 반대만 하고 있으니까 지금 회의 진행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안도결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습니다.

○안도결 위원 손금산입 요건 있잖아요. 타당성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법에 규율해야 할 사항입니까? 아니면 시행령에 지금 위임하는 근거 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행령에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시행령은 현재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돼 있는 거지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지금 다 반영돼 있나요, 시행령에?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에 손금불산입하게끔 요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차규근 의원님 문구는 현재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주총에서 의결해서 해야 된다 그리고 임원 또는 직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위에 있는 다른 지배주주 임원·직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는 시행령에 손을 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볼까, 저희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이게 예산부수법안 같은 시급한 법안은 아니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 초에는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23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수도권인 경우에는 현행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 밖일 경우 현행 법인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 지역에 따라 차등 법인세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수도권 밖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절반으로 인하하는 안과 5%p 인하하는 안 그리고 7%p 인하하는 안이 제안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34페이지입니다.

기업들로 하여금 지방 이전을 유도해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해서 법인세는 235페이지입니다.

국세로서 원칙적으로는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 혜택 등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역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차관님.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기본적으로 저희 법인세는 국세이고요. 그래서 국가의 과세권이 미치는 모든 지역에 동일한 세율을 현재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세율 차등의 경우에는 지역 간, 법인 간의 여러 가지 형평 문제라든지 항구적인 세수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지방과 재원 이관을 통해서, 지방 법인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의 지방소득

세에 대해서는 법인세 10%에 대해서 $\pm 50\%$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즉 어떤 지방정부가 어떤 기업에 대해서 유인을 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지방에 할애된 재원으로 조정을 할 수 있다. 그게 지방에 특화된 세율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의견 좀 들어 보겠습니다.

윤영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이기 때문에, 윤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윤영석 위원 국가균형발전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가치인데 지금 갈수록 수도권 집중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서 상당히 참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정부가 정부 부처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또 혁신도시 만들어서 공공기관도 이전하고 했지만 갈수록 점점 더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부산이 지금 제2의 도시인데 부산에 100대 기업이 하나도 없지요. 하나도 없는 상태인데, 기업들을 결국은 지방으로 이전하게 하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어떤 세제 지원을 통해서 뭔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이 법도 20대, 21대, 22대 계속 발의가 됐는데 기재부가 항상 똑같은 입장만 취하고 있고.

지금 보면 세수감소 일부 있지만 세수감소되는 것을 조정을 한다든지 방금 말씀하신 지방 법인세 제도 이런 것을 탄력적으로 더욱더 지방자치단체들이 뭔가 탄력적으로 가동, 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한다든지 기재부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요 지부동이에요.

그래서 사실 세계적으로도 법인세를 차등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나라가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제 국가들은 대부분 다 연방 법인세는 동일하지만 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주마다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고 일본, 영국도 지방 법인세를 같은 것을 매우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나라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가장 지금 전 세계적으로 수도권 일극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출산율만 하더라도 지금 서울보다는 훨씬 지방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저출산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러한 국가적인 과제를,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없이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좀 더 진지하게 기재부가 여러 가지 폭넓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시고 뭔가 제도개선책을 내놓고 의원들의 그런 발의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자세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제가 우선 드립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감사합니다.

윤영석 위원님께서 부산을 말씀하셨는데 100대 기업 안에 하나가 있다가 없어졌고요. 1000대 기업 안에 28개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이 그러니까 다른 데는 보나 안 보나 불을 보듯 명확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성훈 위원님.

○박성훈 위원 제가 지방에 내려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방이 다양하게 나서는데 결국 국세, 법인세가 국세다 보니까 지방이 뭘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게 법인세의 세율 조정, 결정의 자율권을 일정 부분만이라도 지방에 넘겨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감면을 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세수를 지방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전향적인 논의들이 앞으로 이루어지는 게 지방자치라든지 결국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지방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 세 귀속을 일정 부분 지방에 돌려주는 그런 전향적인 방안들을 이제는 정부가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처럼 하다 보면 저는 아마 뭐 윤영석 의원님, 구자근 의원님, 이달희 의원님이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 국세로 묶여 있는 이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지방으로 가져가는 그런 세수의 귀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개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기회에 기재부가 좀 더 전향적인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저도 윤영석 의원님 안에 대찬성입니다. 세수감이 물론 많지요. 세수감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1년에 지역균형발전으로 쓰는 예산을 한번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게 과연 그러면 의미가 없는 투자냐? 저는 이거 되게 싼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들 입장에서 이런저런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혜택들이 있다. 그런데 이거 사실 이런저런 조건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과연 이 혜택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신뢰하기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조세 혜택을 대규모로 주고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신뢰를 주는 제도를 제대로 한다라고 하면 저는 윤영석 의원님 안처럼 하면 기업들 상당히 많이 지방 이전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제로 가는 기업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이거 굉장히 비싸지만 값싼 투자라고 생각하는 게, 한은 보고서도 늘 하는 얘기가 뭐니까? 이번에 부동산 위기 관련해서도 제일 좋은 해법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저출산 관련해서도 제일 좋은 해법은 지역균형발전이다. 서울에 과밀돼 있는 게 대한민국 사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라는 건데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 세수감은 투자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이거 이상의 사회적 편익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확신하고요.

물론 박성훈 위원님 말씀처럼 길게 놓고 보면 약간 지역에 조금 더, 예를 들면 우리가 부산시장이 됐든 무슨 어디 전남지사가 됐든 외국의 회사들 CEO들 만나서 할 얘기가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여기 땅 좀 싸게 해 주겠다 정도고 우리 세금 깎아주겠다는 얘기 본격적으로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논의를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인세를 가져간다고 해도 거의 윤영석 의원님 안처럼 획기적인 투자를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사실 경기도 부지사 할 때 해외 기업 유치하러 가면 경기도 부지사가 내놓는 안이나 부산 부시장이 내놓는, 전남 부지사가 내놓는 안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투자 기업들은 당연히 경기도를 더 희망하지요. 그런데 전남이나 부산이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시할 수 있다면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현재 상황은 하나도 다르지 않은 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도걸 위원님 거수하셨습니다.

○안도걸 위원 지역 간의 격차는 호남이 제일 지금 문제 아닙니까? 여하튼 위원님들의

그 취지는 다 아시지요? 그런데 법인세가 우리나라 세수의 20% 정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 손을 대면 세수가 급감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쉽게 접근하기는…… 대책을, 대안을 마련하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그냥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 법인세율을 낮춘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수도권의 법인세율을 좀 높여야 된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세수의 중립을 만들면서 그 격차를 만들어 내는 거지요. 지금 중요한 거는 그 격차 아니겠습니까? 상대적으로 세수 측면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것이 정말 표나게 좀 차이가 있다, 인센티브가 된다는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서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저도 지금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 의견에 다 공감하고 위원님들이 다들 지금까지 아무 반대를 안 하셨던 것 같고 일부 위원님들은 기재부의 전향적인 그런 자세, 태도 변화를 요청하셨는데 기재부가 아니고 오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뜻을 다 모아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 보시는 방향으로 한번 해 보시지요.

○소위원장 박수영 여기 수도권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지방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니까 말씀 안 하고 계시는 측면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오기형 위원 조세지출 다 털면 제가 괜찮다고 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런데 안도걸 위원님 안도 사실 고려해 볼 만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만 깎아 주는 안이 아니라 수도권을 올려서 조세 중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한다면 약간의 퍼센티지 조정으로도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좀 더 논의해 보기로 하고 기재부도 좀 더 전향적인 안을 고민을 해서…… 이거 내년에 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초에, 우리 전에도 그랬지만 연말에 한번 모이는 이런 조세소위가 아닙니다. 금년에도 중간에 한번 우리가 또 서너 번 모였던 것처럼 그렇게 회의를 진행할 생각이니까 내년 초에는 기재부도 좀 전향적인 안을 가져 오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소위에서 한 번 더 논의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다음 마지막 안건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지은 239페이지입니다.

외국법인 등 자료제출에 관한 신설 내용입니다.

개정안은 국내사업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전 세계 매출액 30조 원 이상의 외국법인 중에 국내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현행의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자료제출과 마찬가지로 그 현황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40페이지입니다.

글로벌 빅테크기업의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강화하고 조세채권 일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이해됩니다.

241페이지 중반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개정안에서 현황자료의 제출 대상에 추가하고자 하는 전 세계 매출

30조 원 이상의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국가별 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포함이 되어서 개정안에서 예시하고 있는 관련 현황들이 이미 제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정부 측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이거는 다국적기업에 대한 자료제출과 관련된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다면 현재도 국조법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 의무가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오히려 현재로서는 과세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을 집행하기가, 실익이 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그러니까 이인선 의원님 안은 사업장이 있으면 당연히 과세하는 것이고 연락사무소만 있더라도 자료는 제출받아 보자 이런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그런데 연락사무소는 이미 규정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연락사무소만 있어도 자료제출을 받고 있습니까?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리고 지난번 며칠 전에 논의하셔 가지고, 안 내면 과태료까지 하는 규정입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과태료, 그게 연락사무소였던가요?

○기획재정부세제실장 박금철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위원님들.

최은석 위원님.

○최은석 위원 이게 국내에 연락사무소가 없지만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형 기업들? 혹시 파악된 게 좀 있습니까?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제도과장 김영현 국제조세제도과장입니다.

국내 연락사무소나 고정사업장이 없는데 매출이 있을 수 있는 기업은 인터넷 기업, 테크 기업 같은 것들을 의미하고요. 그런 기업들이 정확히 리스트가 파악이 되어 있지는 않은데 상당수 그런 형태의 영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런 논의를 하는 것이 글로벌 최저한세의, OECD에서 논의하고 있는 게 글로벌 최저한세라든가 바로 그런 논의입니다.

○최은석 위원 그래서 방금 딱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는 빅테크 회사들의 어떤 그런 현황이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물어보면 정확히 어떤 회사들인지 또 우리나라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느 정도 규모로 하는지 이런 게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으신 것 같은데.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국제조세정책관입니다.

아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오전 논의에서 얘기했던 필러 1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필러 1에서 사업장이 없이 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셨고 그 거에 대해서는 필러 1 논의 과정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국가별 보고서를 받아 가지고 정보 교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최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정확……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그런데 정확하게는 그게 지금 현재……

○최은석 위원 지금 안 돼 있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당장 실질적인 과세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저는 여기에 관련된 자료 같은 것들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에 고정 사업장이나 연락사무소는 없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에 대한 실상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게 다음에 필러 1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또 다른, 진짜 보면 앞으로 이 조세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 갈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런 히스토리컬 데이터 이런 것들이 다 파악돼 있는 것들은 저는 되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과세할 수 없다, 실효성이 없다는 것보다 우리나라에 사업장이 없지만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회사들은 어떤 회사들이고 어떤 정도의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획재정부제1차관 이형일** 저희도 위원님 취지는 이해합니다만 이 범규를 도입하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리……

○**최은석 위원** 과세 안 하고 이렇게 자료 받는 것들도 법적으로 이슈가 될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위원님,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받아야 될지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면 양 국가 과세관청 또는 국가 간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에는 연락사무소조차도 없는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할지 그 실효성을 담보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약간 국가 간의 협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논의가 필러 1 논의 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석 위원** 그래서 그게 무작정 이렇게 미룬다기보다는 뭔가 그래도 예를 들면 그 중에서 이렇게 연락이 되는 회사들도 있을 거고 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고 연락이 안 되는 회사들도 있긴 할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자료들에 대해서 이렇게 취합하는 것들은 시작해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위원장 박수영** 오기형 위원님.

○**오기형 위원** 저도 최은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 이 발상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려고 노력해야지 지금 아니다 이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감 과정에서 이인선 위원님이 되게 강하게 말씀하셨었는데 저희도 그때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공감을 했는데 필러 1 논의 때문에 될 못 한다가보다 지금 현시점에서 일정 규모 우리 경제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렇다면 국내법에 적용도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정거래법 이슈가 그렇게 했는데 실제 공정거래법에서도 우리나라에 법인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쟁 시장에 참여하고 있느냐, 그 영향이 있느냐에 따라서 공정거래법에 따른 어떤 전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갖고 논쟁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법상 구조에서도 충분히 그 논리가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아이디어를 좀 더 찾아보는 게 낫지 이걸 여기서 그만하자 그러기보다는 좀 더 대안을 모색하고 한 번 더 1월 달에 논의하면 어떻겠습니까?

○**소위원장 박수영** 천하람 위원님.

○**천하람 위원** 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요즘 세계적

으로 보면 물건은 다 중국이 만들고 서비스는 다 미국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한 달에 미국에서 돈 벌어 가는 서비스에 엄청나게 돈 내고 계실 겁니다. 챗GPT부터 넷플릭스에 온갖 것들 하면 적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를 필러 1…… 지금 미국이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걸 우리한테 자료든 아니면 이런 실질적인 협조든 할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실효성을 걱정하시는 건 저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저도 최은석 위원님이나 오기형 위원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필요하면 극단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카드사에서 미국에 내는 구독형 서비스에 가는 데이터를 예를 들면 우리가 분석해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그거에 대한 실태 파악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법적 근거가 없으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지요, 개인정보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정도는, 저희가 만약에 필요성을 느낀다 그러면 그것을 당연히 익명화해서 데이터로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느 서비스에 어느 정도로 돈을 지금 쓰고 있다라는 거는 필요하면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 거지 이걸 ‘미국에 자료 요구했는데 줄 리가 없습니다’ 손 놓고 있고 ‘필러 1이 되면 할게요’,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조금 더 깊은 고민을 하고 저희도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소위원장 박수영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기재부가 그동안의 논리, 그동안의 입장, 스탠스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는데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이 문제도 일단 다시 한번 더 논의할 테니까 기재부에서 내년 초 정도에는 좀 좋은 안을 가지고 와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10권까지 마치고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소위를 열어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정부 공무원들, 국회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보좌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41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김영환 박성훈 박수영 안도걸 오기형 유상범 윤영석 이소영 정일영 정태호
천하람 최기상 최은석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지은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이형일

세제실장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 조만희

소득법인세정책관 박흥기

재산소비세정책관 김병철

국제조세정책관 변광욱

관세정책관 최재영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승범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박해영

개인납세국장 박종희